



'17년 9월 1차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7. 9. 14.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조직담당관 : 김정호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재민 ☎6740 담당 : 설정환 ☎6747

'17년도 9월 1차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회의 개요〉

- ◆ 일 시 : 2017. 9. 14(목) 14:00 ~ 18:00
- ◆ 장 소 : 공용회의실(신청사 8층)
- ◆ 참 석 : 11명 외부위원(8), 내부위원(3)
- ◆ 심의안건 : 14건
- ◆ 심의결과 : 적정 10건, 부적정 4건

2017년도 9월 1차 정기학술용역심의회

개 회 2017년9월14일(목) 14시

장 소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간 사

안녕하십니까? 조직과 시정연구팀장 박재민입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위 원 장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그리고 내부위원으로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정족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13분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인 아홉 명이 현재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000 교수님과 000 교수님은 심의안건 전문성을 위해서 특별위원으로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심의안건은 내년도 2018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신규 14건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안건이 14건입니다.

앞에 놓아드린 사전검토서가 있는데, 이것을 참조하셔서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회 개최개요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심의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심의를 마쳐서 일찍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하는 학술용역은 18년도에 추진예정인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되 혹시 모자라거나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아마 이분들이 다시 내년 학술용역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팀장님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고요.

그 발표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발표자는 퇴장을 하고, 주심위원께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끼리 상호토론을 거친 후에 거수로서 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여부는 과반수 위원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속기록으로 작성된다는 것 유념하

시고요.

이게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술용역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18년도)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1호안건설명자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입니다.

위 원 장

앉으십시오.

앉아서 간단히 3분 정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호 안건설명

제1호안건설명자

학술용역 2018년도 신규과제명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시행입니다.

용역비는 1억5,000이고요.

연구기간은 1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서울연구원과 매년 2030 서울플랜에 대한 모니터링, 도시변화진단을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도에 도시계획조례에 매년 시행하는 것이 의무화돼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모니터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내년도 용역 이렇게 연계를 해서, 2030 서울플랜이 수립된 이후에도 만 3년이 이상이 지났고 도시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이슈, 새로 검토해야 되는 정책이슈라든지 기존에 관련된 시책의 변화 등을 같이 분석해서,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1호 안전심의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안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해서 질의가 없으신가요?

000 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정비는 향후에 언제쯤 하나요?

제1호안전설명자

법적으로 보면 만 5년이 지나야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14년5월에 2030 서울플랜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링의 취지 자체가 과거와 같이 기본계획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다시 분석하고 자료를 모아서 이슈를 발굴하고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들 누적하고 체크하고 점검해서 준비하는 취지가 있는 과업입니다.

000 위원

보통 우리가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두 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하는 거잖아요.

제1호안전설명자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매년 한 번하는 게 상시 모니터링인가요?

제1호안전설명자

보통 예산주기가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과업으로 진행하는,

000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어찌면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프로젝트 연구사업으로가 아니고, 누군가가 혹은 어떤 기관이, 부서가 하나의 업무로서 쭉 하는 거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1호안전설명자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그 부분들은 서울연구원이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의 그런 기능을 해서 이렇게 매년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연구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협의는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다음에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그때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업무조정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제 생각에는 해마다 1억5,000씩 예산이 들어가면 사람 하나 제대로 된 사람 써서 그 사람한테 맡겨도 될 것 같은데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이상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발표자께서는 나가셔서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혹시 저희들이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기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사업이니까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시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에 한 번한다는 단

점이 있고요.

그것보다 이게 상투적으로 2014년부터 계속 해오던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벌써 한 3년 됐으니까, 5년마다 한다면 14년에 했으니까 19년쯤에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이 중간 정도에는 그냥 모니터링한 결과가 아니라 14, 15, 16 그다음에 올해 한 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안에는 사회경제적인 분야, 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이런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지표도 조사하고 동향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혹시 과장님, 이게 도시계획과 쪽인데,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000 위원

글쎄요.

000 위원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간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 원 장

공간만 관심 있지, 사회변화나 그쪽은,

000 위원

그런 것도 지표에 넣어서 같이 조사를, 그게 상시적으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 포함을 시켜주시면, 아마 기본계획을 했으니까 어떤 지표인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제가 내용을 다 몰라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강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000 위원

용역명에 시행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시행하는 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그런 시행 모니터링 한 것을 가지고 모으고 분석하고 하는 게 됐거나 앞으로 돼야 되는데, 시행 그 자체는 액션 자체로 끝나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시행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시가 두 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라는 게 어느 연구자가 나가서 1년 내내 보고서 쓰는 것도 상시라면 상시인데, 용역 명에 상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와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상시나 시행이 많지 않는, 과업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네요.

000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이게 1억5,000인데 제 생각에 연구원 두 명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시행되는 거라면 그야말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아예 사람을 전문가를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위 원 장

아니면 서울연구원이 계속 맡아서, 아예 예산이 매년 할당되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거나,

위 원

글쎄, 그러든가.

위 원

그렇게 하시든가.

위 원 장

굳이 매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00 위원

연구원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부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서울연구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하시면요.

위 원 장

예, 그런 단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00 위원

다음번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요.

000 위원

보완사항에 나온 것처럼, 활용 및 적용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디나 그렇듯이, 무엇을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고쳤거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이런 것이 항상 보고서에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첨부가 될 필요가 있다.

제1호 안건결론

위 원 장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적정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 분 다입니다.

위 원 장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상시 그런 거니까 제목을 바꾸는 문제하고, 혹시 이거를 이런 프로젝트 형태로 하지 말고, 특정기관이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안도, 그런 가능성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000 위원께서 써주시죠.

간 사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두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서울형 사전검토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본인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3분 정도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2호 안건설명

제2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에 설계공모관리팀장 육근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특성과 행정체계에 적합한 제도운영방안 마련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수준 향상과 공공가치제고에 기여하고자, 서울형 사전검토제도 운영방안 마련에 대한 학술용역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형 사전검토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를 2014년도에 설립하였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실행력으로 국가교육건축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공공건축에 대한 기획단계 내 실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의 기획사전검토 및 자문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의 실적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모든 전 지역을 관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보완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에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협의를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왔고요.

국가 차원의 공공지원센터가 광역공공지원센터를 위임하는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운영하면서 미흡했던 점, 보완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조금 다른 총괄건축가시스템이라든지 공공건축가시스템, 그리고 자체공간기획이라는 시

장 방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검토, 사전절차이행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랑 같이 융합을 해서 보다 실행력 있는 운영방안을 만들고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이번 학술연구용역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학술연구용역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 행성에 맞는 사전검토제도를 마련하는 것들이고요.

이에 따른 행정, 운영, 인원, 예산 이런 것들을 계약적으로 만들고, 자치구에 대한 사전검토까지도 커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시범적인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이 학술용역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정립시키는 매뉴얼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호 안전심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제목이 사전검토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에 대한 사전검토라는 말이 제목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사전검토라고 하니까, 사전에 무엇을 검토하겠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검토 적어놓으신 내용들을 보면,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로 되어 있는데, 발표하신 분은 지방행정, 모든 행정에 대한 사전검토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제2호안전설명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법이라고 해서 건축기본법 이외에 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적용대상은 공공건축물에 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라고
법정의무사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의 기획,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등등을 의견서, 자문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려졌었던
업무이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2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서울형 건축 사전검토제도인가요?

제2호안건설명자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목적어가 빠져있으니까요.

제2호안건설명자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000 위원

예.

000 위원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한데,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
에 대한 설치근거는 내년 8월쯤 그거는 그 이후인데,

제2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000 위원

우리가 너무 어떻게 될지 또는 근거가 어떻게 떨어지지 모르는, 협의를
하시면서 분명히 진행을 하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어떻게 근거가 정해질
지 모르는데, 미리 사업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거
나, 또는 그랬을 때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
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꼭 센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건축가라든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공공건축을 위한 많

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에 규정이 아직 없죠.

그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빠르지 않을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검토되는 설치근거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 가지고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2호안건설명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기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아우리 등과 협의를 할 때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근거를 개정 중에 있고, 그게 수시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수시과제는 8월 말, 9월 초에,

000 위원

아우리가 하고 있죠.

제2호안건설명자

예, 그게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내리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광역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고, 올해 학술심의에 올린 것은 2018년도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3월 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할 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이 정해지고 고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있겠지만, 그게 내년 중순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선제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놓아야, 빨라야 2019년도에 실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둘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일이 도시공간개선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설립 목적이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요?

제2호안건설명자

그래서 그냥 사전검토가 아니고 서울형 사전검토라고 타이틀을 만들었고요.

조금 전에 사업을 학술심의를 위해서 보고를 드릴 때, 서울시는 총괄건축가라든지 공공건축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서울형 사전검토가 될지 이런 것들을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사전검토가 아닌 서울형 사전검토라고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여쭙보고 싶은데, 왜 서울형이어야 되죠?

왜 서울형이 필요한가요?

제2호안건설명자

국가 차원의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자문의 형식의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적인 실행력이 받침이 되지 않아서 실행력이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행정력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가 산출이 될 것 같고 해서요, 그리고 특수성에 대해서 서울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000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서울형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가, 공공건축에요.

또 그런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용역이 필요한가,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2호안건설명자

서울형이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를 붙여서 학술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유사 일들의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업무가 자치구를 포함한, 광역에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자치구의 설계기획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단 두 건 밖에 없었고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들을 서울형 사전검토를 하면서, 자치구에 그런 기획들을 사전검토를 해주십사.

그렇게 된다면 물량이라든지 파악을 해야 거기에 따른 인원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공공건축을 할 때 설계 등 여러 가지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건축센터예요.

제2호안건설명자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가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를 해서 자문의견사가 내려가지만 시기의 부적절성이 이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서 사전검토를 시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것은 두 단계입니다.

기본구상을 할 때, 사업구상을 할 때 도시공간개선단의 자체공간기획하는 팀들과 협의하고, 두 번째 발주 전에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조금 기존의 사전검토제도가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을 서울형에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들이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적용이 돼야 될지, 그리고 유사 심의과정이랑 어떠한 식으로 풀려야 정말 사전검토의 의미가 더 부각이 될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공건축이라 하면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고, 예를 들면 작년이나 제작년에 서울시의 공공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물량이 얼마나 되나요?

제2호안건설명자

작년에 학술연구용역을 해서 공공건축의 디자인발전을 위한 이런 용역을 한 번 시행을 했었고요.

자치구 포함해서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나

갔었던 용역이 3,000건 정도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건축기본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이라고 했을 때, 공간환경에 대한 정의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협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물이라고 해서 발주되었던 사업들 개수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대략 3,000건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는 또 분리가 달리될 수 있겠지만, 물량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가 차지하는 게 거의 50%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팀장님께서 나가주시고요.

잠깐 대기해 주십시오, 밖에서요.

혹시 저희들이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교수님.

000 위원

이게 저도 여기 지적한 것처럼, 이분들은 사전검토 그러면 당연히 공공 건축 사업인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서울형 사전검토제도면 어떤 것을 사전 검토 제도하는지 그것을 안적은 게 사실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바꾼다면, 서울형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제도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게 아까는 법에 있다고 했지만, 아직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라고 하는 국가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있는데, 국가 하나의 센터에서 전국을 다 커버하려니 불가능하고, 그러니 '광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를 아우리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올 9월, 10월 정도면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또는 아우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냐면, 광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시 너네가 한번 먼저 해라. 그러면 법제도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서울시가 도와줄 거냐, 아니면 정말로 광역 단위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서울시가 그거에 대응할 거냐의 선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고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아직 근거가 없는데 그 센터를 운영할 방법을 먼저 만든다는 게 사실은 부적정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서울시에서는 많은 총괄건축이라든지 또는 공공건축가라든지, 많은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자문해 주는 많은 기구나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만들어져도 금방 시스템을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억5,000씩 8개월이나 들여서 할 일인가.

그다음에 아까 3,000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굉장히 작은 공공건축물들이 대부분이고, 큰 공공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르고 용역비도 과다하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위 원 장

판단의 문제일 것 같네요.

000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사전검토제도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다 유사용역이 있습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설립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공공건축사업에 대해서 관리지원방안 용역도 작년에 했었고, 여러 가지 선행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아직 주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용역을

해야 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틀려지게 법에 마련된, 그런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전검토제도라는 게 어차피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발주부서가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문하는 역할인데, 그거를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를 확대개편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학술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을 도시공간개선단을 일원화하면서 조직을 내가지고 열 명을 추가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공간기획도 직접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설계공모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약간 거기에서 부서하고 행정적인 업무처리절차에서 의뢰가 늦게 들어온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프로세스는 내부적으로 풀 문제이지, 이거를 굳이 학술용역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비용도 아까 이거에 아홉 명 투입하는데 과도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구의 필요성이나 대상이나 시기로 봤을 때는 학술용역은 부적합합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혹시 기술심사 쪽에서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여기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000 위원

오늘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는요.

위 원 장

000 위원께서도 같은 말씀이신 거죠?

000 위원

예.

제2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 원 장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립니다.

제3호 안건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인왕산, 성내천하류, 백사실계곡)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앞으십시오.

본인소개 잠깐해 주시고요, 한 3분 정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3호 안건설명

제3호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장 이영일입니다.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제명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입니다.

대상지는 인왕산하고 성내천 하류, 백사실계곡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연구방식은 위탁형으로 진행되며, 연구기간은 2018년3월부터 2019년4월까지 13개월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2,000이며, 개소 당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는 8,000만 원을 반영하고 2019년도에 4,000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구기관선정은 일반경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연구목적은 법적 이행절차와 현황 및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6년 주기로 1년간 시행하게끔 법적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근거에 진행하게 되었고요.

연구의 필요성은,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수립 시행 이후에 지역의 생물종 변화와 생태계의 지속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관리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여건 변화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관리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용역입니다.

연구내용은 지역 내의 식물상하고 식물분포, 식물분집 등 식물생태계조사와 조류, 양서류, 곤충류, 포유류 등 보전지역 내에 서식하는 동물생태계조사 및 정밀조사종을 선정하는 게 포함되어 있고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동식물의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유사사례 연구사례는 최근 5년 내에 없습니다.

또 이 연구용역결과는 2019년 4월부터 활용할 계획이고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관리계획의 효과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생물 종 다양성의 여건 변화 및 지역 특성에 맞게 기존관리계획을 수정보완해서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3호 안전심의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조례에 의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제목에는 관찰연구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몇 마리가 있었는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를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관찰하고 분석하고 평가까지 하시는 건가요?

제3호안전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제부터는 정밀변화관찰 및 분석이라든지 뭐가, 그전에 6년 전에 예를 들면 성내천 같은 경우는 2010년에 했던 말이죠. 6년 전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그전하고 다르게 이번에는, 똑같은 항목만 계속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항목을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서 다, 예를 들면 6년 전하고 지금 하고 조사항목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제3호안전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프로젝트를 용역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3호안전설명자A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000 위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연구인데, 세 번만 하나요?
서울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세 곳만 있습니까?

제3호안전설명자A

총 17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6년 주기로 순번에 의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3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000 위원

그런 식으로 17개소를 3개소씩 돌아가면서요?

제3호안전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공개됩니까, 시민들에게도요?

제3호안전설명자A

예, 공개됩니다.

000 위원

연구하고는 직접 연관은 안 되고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가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제3호안건설명자A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특별히 위해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이래서 악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000 위원

그러면 위해 되는 식물이 등장하고 했을 때, 이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잖습니까?

제3호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3호안건설명자A

만약에 위해식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을 수립해서, 매년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000 위원

하나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요?

제3호안건설명자A

사례가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는 서양등골나물이라는 게 서양에서 들어온 식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대지나 황폐한 지역에 침투해서 주변 생물을 못 자라게 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년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일부는 제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일부 하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프로젝트만 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제3호안건설명자A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릴 텐데, 생태경관 17곳을 누가 지정하나요, 어디
서요?

제3호안건설명자A

서울시에서 지정합니다.

000 위원

성내천 하류는, 성내천 자체가 한강 펴핑해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자연내천이 아니고요.

거기에 방이습지라든가, 뒤쪽에 방이습지 보존해야 될 곳, 또 잠실대교
밑에 보면 어도가 있어요.

그런 쪽이 훨씬 더, 거기 요즘 참게인가요, 그것도 굉장히 올라오고 하
는데 등등, 어도에 고기가 잘 못 올라간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해서,
여기를 꼭 해야 되는가.

제3호안건설명자A

말씀하신 사항 중에 방이동습지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도 부분은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내년도 추가지정도 가능
하니까 그런 부분은,

000 위원

성내천은 그게 인위적으로 펴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다가, 별로
그렇게 할 게, 제가 거기를 매일 걸어다니는 곳인데 왜 지정이 됐는지,

제3호안건설명자A

이 부분은 이미 지정돼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제3호안건설명자B

저희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에는 개발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정함으로써 개발이나 그런 것을 막
고, 자연형으로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목적이 가장 크
거든요.

000 위원

좋은데 거기가 의문스러워서, 생태경관지역까지 될 상황인가.

제3호안건설명자B

하천 쪽으로는 한천하고 성내천 하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한강 쪽으로는 밤섬하고 고덕동하고 암사동이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
가 자연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변화
관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3호안건설명자A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은 네 가지 유형 정도가 있
습니다.

네 가지 유형 중에 가장 큰 유형이 뭐냐 하면, 원시적인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지점에 지정하고, 이거는 큰 부분일 겁니다.

우포늪이나 이런 정도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을 유지하
고 학술적인 연구가치가 있는 그런 대상지에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고
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생태계가 있어서 주변에 표본지역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 지정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중랑천이나 안양천에 더 큰 지류들이 있는데, 중랑천 같은 경우는요.

성내천은 상당히 작은 천...

제3호안건설명자A

추가지정은 앞으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업그레이드하라고 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000 위원

17군데를 6년 동안 하면 세 군데씩 거의 매년 하는 거잖아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장소는 다르지만요.

그런데 이거를 일반경쟁입찰로 하면, 그때 다른 기관이 각각 하게 되나

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한 군데서만 들어오지는 않고, 대학연구단체도 있을 거고, 법인도 많이 들어오고 시립대나 경희대 이런 쪽에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차라리 약간 보전지역지구를 늘려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로 매년 체크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요?

제3호안건설명자A

매년 하는 거는 또 있습니다.

일반관리관찰지역으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용역에서 그거를 반영하고, 정밀관찰을 하는 겁니다.

위 원 장

질문 다 하셨으면 발표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고요.

밖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혹 질문사항이 생기면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호안건설명자A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고요.

조례에 의해서 6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잘 정리가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활용돼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위 원 장

그런데 이거는 교수님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돈을 받고 하셔야 되는 것, 생물학과 교수님 당연히 하셔야 될 일 같은데요.

000 위원

조금 더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더 해야 돼요.

서울이 인구 천만 도시에 약소하죠.

제3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 분 다 하셨습니다.

위 원 장

이 안전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전은 순서가 바뀌어갔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네 번째가 아니라, 열네 번째에 있는 여성정책담당 쪽입니다.

자치행정학과,

간 사

네 번째 있는 거를 담당관에서 맨 마지막으로 옮겨서 한다고 그랬고요.

5번 안전, 여기에 보면 연번 5번.

위 원 장

그렇죠.

자원순환과요.

제5호 안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5단계 3차)

위 원 장

앞으십시오.

잠깐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3분 정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5호 안전설명

제5호안전설명자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장 최영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연구 관련 건입니다.

사업추정액은 3억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추진배경을 보면, 서울에 네 개의 자원회수시설이 있습니다. 주변 인근에 회수시설 인근 피해지역 영향권이 있습니다, 300m 이내로요.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거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5단계 걸쳐서, 4단계는 끝난 상태입니다.

내년에 5단계 3차 년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구개요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으로 인한 유해물질이 주변지역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 시설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일관된 대민정책을 통해서,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그다음에 이미지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내용을 한번 보면요, 대상지역은 세 개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양천, 노원, 강남 영향지역인데, 마포는 왜 안 하느냐면 마포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빠져있고 세 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대상자 선정은 자원회수시설 영향지역 내에 5년 이상 거주민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오래 사셔야지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물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대기규제물질인 미세먼지, 그다음에 암·독성 유발물질이 있습니다.

납이라든지 카드뮴, 수은, 니켈, 크롬, 비소 등 이런 물질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어요.

그다음에 환경호르몬물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체시료 혈액을 채취하고 그런 것을 쪽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옥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물질도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악취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대상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있고요, 주변에요.

그다음에 인체영향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영향평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쪽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활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연구 종료 후에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자원회수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그런 협조도 바라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제5안전심의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건강상태가 나빠진 부분이 있나요?

제5호안전설명자

아직은,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너무나 슬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피해는 없는 것으로 장기모니터링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위낙 후단에 배출시설 같은 것들을 강화하고, 시설을 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빼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은 주민들의 건강상태는 그분들이 직접 보고,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병원을 선택하라고 맡겨둡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세대학교 산업연구공학과 쪽을 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하면 우리가 의심을 받으니까요.

000 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면역력이 건강한 일반들은 5년 정도면 시설이 어쨌든 현대화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자신할 수 있는 시설에서의 5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짧지 않은가, 5년하고 10년 정도 두 부류로 나누었으면 어 땀을까 아쉬움이 듭니다.

제5호안전설명자

기본이 5년인데요, 장기적으로 사신 분도 계속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000 위원

별개의 군이 따로 모니터링 되고 있나요, 유형별로요?

제5호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최소 5년 된 사람부터 시작을 하고요.

10년, 20년 된 분도 계속 모니터링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모니터링을 별도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거죠?

제5호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300m 안에만 하는 건가요?

제5호안전설명자

지금은 300m 안쪽인데요.

000 위원

부지경계로요?

제5호안전설명자

예, 부지경계로부터, 그거는 폐축법에 300m 안쪽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늘려가면, 늘려주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000 위원

소각장들 굴뚝이 150m씩 되잖아요.

제5호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배기가스온도가 상당히 수백도가 되기 때문에, 7~800도 이상 될 것 같아요.

제5호안전설명자

배기가스온도는 저희가 그것을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100도 정도 됩니다.

000 위원

폐열 주로 보일러만 하죠? ...

제5호안전설명자

보일러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있고요.

000 위원

그렇더라도 그게 대기 중으로 올라가, 굴뚝에서 대기잠식도 오고 또 상당한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5호안전설명자

확산이 되겠죠.

000 위원

그래서 300m는 상당히 좁은, 굴뚝이 그냥 있고 이게 유효고는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300m에는 문제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사항목들로 보면요.

원래 하려고 하면 더 넓게 모델링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파악하고 해야지, 인위적으로 300m는 보통 굴뚝이 5~60m일 때 그럴 때면 몰라도, 150m 굴뚝에서는 상당히 낮아요.

유효고가 150m 이상 되기도 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게 300m 안에 일부러 떨어뜨리기도 어려워요, 이런 물질들, 미세먼지들이요.

제5호안전설명자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서 고민을 하는,

000 위원

이거는 거의 형식상하는 것 같아요.

제5호안전설명자

법적으로 그 부분들도 아마 환경법, 폐촉법을 정할 때 그것이 사실상 정해져있습니다, 거리, 면적이든지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 더 넓은 지역까지 검토하겠습니다.

000 위원

상부지역에 소각장에 한번 제가 거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도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요.

이거는 주민들 안심하는 용역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용역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된다는 거죠, 300m는요.

제5호안전설명자

두 가지 측면도, 그런 면도 있지만, 소각장을 처음에 96년부터 사실상 운영을 해왔는데, 중간에 강남소각장 지으면서 굉장히 반대도 심하고 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해오고 있습니다.

000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잘하셨고 또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목동부터 서울시가 잘하는 거 잘 이해하는데 그거는 성격상 그렇다는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5호안전설명자

고민하겠습니다.

000 위원

여기 발견된 다이옥신 같은 것도 샘플링을 장시간하면 잡힐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들이 다 암 유발물질, 다이옥신이 발견됐다가 아니라 그런 것 발표하거나 할 때 농도나 위해도를 꼭 같이 발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셨죠? 생리대는 피브이유씨가 있다는 것 자체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소각장 그런 것을 관리하셔야지, 바로 주민 아파트 옆에 있는데, 주민들이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제5호안전설명자

그것 포함해서 함께 연구용역할 때 집어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0 위원

용역들 중에서 연구재료비가 가장,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제5호안전설명자

그게 주민들의 혈액채취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키트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재료비가 많이,

000 위원

기계,

제5호안전설명자

예, 의료계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오염에 교통량도 같이 하는 건가요?

제5호안전설명자

최근에 그쪽 인근주민들이 교통에, 폐기물을 들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
잖습니까?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도 같이 한번 조사해 달라고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000 위원

주민들이 병원은 연세대를 선택을 했을 수가 있는데, 용역기관을 연대
산학협력단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시에서 선택한 것일 텐데요.

제5호안전설명자

기관 말씀입니까?

000 위원

예, 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연세대 산학협력단 이외에는 이 정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
까?

오랫동안 벌써 몇 번째,

제5호안전설명자

주민협의체가 세 개 소각시설의 협의체가 되어 있습니다, 300m 이내의

주민들로 된 협의체가요.

폐촉법상 그분들이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사실 회의를 거쳐서 일임을 합니다.

병원선택이라든지,

000 위원

연구기관을 주민협의체에서 정한다고요?

제5호안건설명자

아니 ‘...용역기관을 협의체에서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해주겠다.’

의심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너희들이 조직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든다면, ‘이런 데이터를 같이 짜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일임을 했습니다, 협의체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의심이 저희가 벗어나고 있는, 공평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벗어나고,

000 위원

주민이 오히려 의심스럽네요, 제가 보기에요.

제5호안건설명자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만약에 어떤 입찰과정이나 그런 것을 하면, 너무나 그런 게 심했어요.

위 원 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

하나만 더, 산업공해연구소는 환경공해연구소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환경공해연구소 이름 바뀐 거냐고요, 산업공해연구소가요.

위탁기관이요.

제5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주민들하고 비교적 잘,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런 연구소라고 봐야죠.

주민들에게 말기지 않으면 더 어려워요.

000 위원

그러니까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잘 지나가기 위해서 주민한테 말기기는 하는데, 그 점도 저는 안심이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도리가 없다는 거죠.

제5호안전설명자

맞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저희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잠깐 기다려주십시오.

제5호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검토 의견 주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거는 대안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그래서 이거는 불허용, 부적격 이런 판단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가 약간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3억4,000짜리를 매번 5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또 주민이 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굳이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m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제 지식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면적을 넓혀서 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면 그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업이네요.

000 위원

샘플링하는 거거든요, 다하는 게 아니고요.

위 원 장

그러면 가능하지 않나요, 이 비용으로 해서요?

000 위원

500m나 1km를 샘플링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전수조사가 아니면,

000 위원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또 뒤에 저의가 있지 않느냐.

000 위원

300, 500 가지고 주민끼리 싸운 것도 있었어요.

000 위원

멀리가면 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희석이 되니까요.

000 위원

300m 이내 주민들이 더 넓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위 원 장

300m 안으로 먼지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죠?
굴뚝이 높으면 당연히 그럴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제5호 안전결론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전원.

위 원 장

이 안전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오존, 다음 안전 심의하겠습니다.

제6호 안전

서울시 오존 생성 메카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

위 원 장

앞으십시오.
앞으셔서 본인소개해 주시고요, 3분 내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6호 안건설명

제6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전략단장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서울시 오존 생성 메카니즘 정밀분석 및 효율적 저감방안 연구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총 연구기간은 20개월로, 2018년1월부터 2019년8월까지에 걸쳐서 하게 되고, 또 이러한 20개월에 걸쳐서는 측정과 분석에 나누어서 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원으로 2018년에는 4억 원, 2019년에는 3억 원으로 사업비는 추정하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학술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큰 배경으로 오존주의보의 발령회수가 점차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오존주의보는 총 33회로, 2016년에 걸쳐서 동일한 회수가 발령이 되었고, 이는 2015년 4회에 비해서 무려 여덟 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대기질종합대책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존에 대한 연구용역은 두 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오존주의보 발령회수와 오존농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미세먼지와 달리 가스성 물질로, 복잡한 발생원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광화학적 반응에 의한 오존농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오존의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그리고 저감과 관리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그런 관련 연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2013년 두 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용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기정책과 대기환경전략단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오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고농도 오존대응 민간취약계층이 오존주의보가 발령했을 시에 어떤 행동요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마련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요령을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저감관리나 이런 피크관리에 있어서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이고 조금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대기환경전략단은 고농도오존을 형성 및 확산 메커니즘을 정밀분석하고 오존핵심 전구물질 즉, 나스와 VOC에 대한 배출 특성과 지역별·오염원별 기여도, 상황별 거동상태 규명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다른 타 지자체와 달리, 그런 외부유입이나 아니면 대규모 배출시설이 아닌, 내부 생성되는 중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장이라든지 인쇄소, 세탁소 등에서는 유기용제와 같은 그런 유기성 휘발화학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배출원에 대한 연구도 미세먼지와 달리 세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런 서울시 권역별 오존농도기여 원인 물질의 배출원 관리 및 대응정책을 개발하고, 오존오염에 대한 시민환경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정책방향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존생성물질의 배출량 관리대책, 오존 피크 저감관리방안 마련, 또한 사전주의보 기준의 설정과 반응을 위한 조례개정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 안건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오존은, 미세먼지가 연계되니까, 관련 법 위반되고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사실 오존이 대도시는 더 문제죠.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조사들은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0년도 말에도 대기환경사업단을 구성해서, 주로 서울을 대상으로 오존의 여러 가지 특성이라든가 배출원 등 조사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5년 간 해서 보고서 여러 개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보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VOC하고 낙스의, 서울 같으면 당시에는 어느 게 제한물질인지, 무엇 때문에 오존이 생성됐는지도 보고서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물질의 어느 하나만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 비율에 따라서 오존농도가 결정된다는 것 대략 아실 텐데, 그런 자료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VOC도 자동저장, 저희 학교에서 7~8년 전에 환경용역으로 한번 한 게 있어요.

서울시가 대상이었어요.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게 대기가 저번에도 있었고, 이번에 초미세먼지하고 제2차 대기환경개선계획 수도권 거기에 의한 것하고, 거기 인벤토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VOC, 낙스를요?

제6호안건설명자

그런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는 비슷하다고 보시겠지만, 일단 미세먼지와 오존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 배출원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제6호안건설명자

일단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낙스와 VOC가 유사하다는 점이 있지만, 낙스와 오존의 농도 간에 상관관계가 낮고요.

낙스를 낮춘다고 해서,

000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존 어차피 배출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를 그냥 활용할 수 없냐고 여쭙는 거예요.

유사연구가 동일한 게 두 개, 세 개 같이 가거든요.

제6호안건설명자

하지만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는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하지만 오존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000 위원

오존도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죠.

제6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오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000 위원

오존은 대기 중의 농도인데 그게 어떻게 어느 지역만 오존이 있죠?

제6호안건설명자

오존 16년도, 17년도에 대해서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1회로 제일 최다 발생했습니다.

000 위원

권역별로 다르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요.

제6호안건설명자

예, 권역별로,

000 위원

제 이야기는 인벤토리를 왜 같이 못 쓰냐고 여쭙는 거예요.

제6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그 인벤토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면 국지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무엇을 더 접근해요?

초미세먼지나 대기환경관리권역도 굉장히 디테일하게도 예산이 7억씩 가 있는데,

제6호안건설명자

그런데 VOC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에서 집중적 인벤토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000 위원

대기관리권역에서도 VOC가 들어갔잖아요, 1차부터는요.

제6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VOC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VOC 측정하는데 있어서 측정기기 자체가, VOC 56종 같은 경우에 세밀하게 특정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도 오존 같은 경우에는 중간화합물질, 광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기로는 측정이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000 위원

인벤토리이니까 도중에 광화학물질까지 측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서울시에서 VOC의 스페셜현황을 다 파악할 거예요?

제6호안전설명자

제 생각에는 일단 국지적 가장, 서남권이라든지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라든지 그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집중적으로는,

000 위원

그 높은 지역만 한다고 볼 수 없고, 오존도 이류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만 높은 게 아니라, 춘천 가는 쪽으로도 높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인벤토리를 유사연구가 거리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같은 연구가 동일한 예산으로 세개가 들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6호안전설명자

오존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 구축뿐만이 아니라 인벤토리를 통해서 메커니즘,

000 위원

메커니즘은 다 나와 있는 거고요.

000 위원

메커니즘은 수십 년에 팀장이 안 하셔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은 어느 게 더 기여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죠.

제6호안전설명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미세먼지하고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000 위원

인벤토리를 공유하라는 거지, 같이 하라는 게,

제6호안건설명자

인벤토리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기질 모델링 같은 경우는 오존의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000 위원

모델링은 따로 해야 되죠.

제 얘기는 인벤토리만 여쭙봤잖아요.

인벤토리는 공유할 수 있지 않느냐.

제6호안건설명자

물론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대기질 모델링이라든지 집중적인 VOC 그런 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더 강화돼서 해야,

000 위원

VOC 연구도 엄청 많이 됐어요, 팀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렇죠.

000 위원

아까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대상이 명칭에 나오는 게 낫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이라든지 VOC 그거에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전반적인 모델링할 때는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정확히 찍어서 제목에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이거야 재료비든 측정비든 그런 걸로 거의 다 소모되는 예산일 것 같으니까요.

제6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본인들이 원하는 도장, 무슨 무슨 업체에 해당되는 것들이 소규모 무슨 업체라든지 그게 들어가서 중복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6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나가 계시고요.

저희들이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드릴 테니까,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00 위원

하나 더 해야 되는 것 아십니까?

같은 과에서 똑같은 것 발표하시는 거예요?

위 원 장

같은 과예요?

간 사

발표자가 팀이 틀려서요.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의미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분은 자기 했는데, 메커니즘이야 똑같겠죠.

그거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거고,

000 위원

그런 메커니즘에서 어느 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위 원 장

그렇죠, 그런 거를 하라는 얘기였는데 저분은 그 말 뜻을,

000 위원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인벤토리 이거는 여기에 서 지적을 안 하더라도, 외부기관이 보더라도 딱 보이는, 인벤토리가 세 개 과제가 거의 같은 인벤토리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조금 더 하면 되고, 스페셜...필요한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면 예산도 어마어마해요.

000 위원

저희가 예산이 전문가는 아닌데, 연구원이 14명이 필요한 것인지, 연구원도 많고 뒤에 있는 초미세먼지하고도,

000 위원

샘플링 개수가 몇 개 정도 하겠다 예산서에 나오겠죠.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도장업체라든지, 많은 그런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이 들어간다고 써놨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 담당은 아니라 개수는 안 세어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분석비나 그런 모니터링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 빼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시라는 말씀인데,

위 원 장

잘린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000 위원

일하시는 분들은 예산 잘리는 것 원치 않으니까요.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14명도 100% 14명은 아마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또 어떤 것들은 이미 캡슐에 상당히 데이터들이 있어요.

국립과학연구원이 어제도 담당자를 만났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잘했어요, 나름대로요.

아직 미흡하지만요.

서울시가 더 잘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게 하는 것, 세 가지 과제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과제가 있는데 거의 유사한 데서 다 인벤토리를 해야 돼요.

위 원 장

이거를 합치면 합칠 것으로 하고 다시 한 번 짜보라고 해도 되겠네요.

000 위원

예산은 검토해 보시고, 사업내용을요.

000 위원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되는 과제가 있으니까 하나로 묶을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건을 붙이죠.

000 위원

여기에서 더 상세히 얘기하시는 어려운데, 측정 모니터링도 왜 두 개의 지점에서 하는가 이것도 저는 궁금, 서울에 27개 측정소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제는 하는데, 사업수행방법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000 위원

예산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20개월로 해서 7억으로 했는데, 물론 축소나 이런 부분이 되면 금액이 낮아지겠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그 다음 해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정하고 가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 20개월이면 발주준비하고 빨리 해도 4월이나 5월에 집행이 되면 절반 정도만, 총 소요되는 예산액에 이 정도만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잡아가는 이런 식으로, 밑에 것도 보면 총 7억인데 장기계속으로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4억만 들어온 이거랑 같이 계획을 맞춰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6호 안건결론

위 원 장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전원.

위 원 장

적정은 한데, 조건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중복되는 과업은 같이 공유하고,

위 원 장

예, 6번 안건하고 7번 안건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도 차제에 캡슐처럼 서울시 배출량 인벤토리를 하나 공개하는 쪽으로, 국가는 공개하고 있거든요.

담당자도 박사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매번 이거를 7억씩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상시 그거를 유지하는 거죠, 인벤토리를요.

000 위원

공유하면 과업범위도 줄어들고요.

000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변화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시 정부에서는요.

000 위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건을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일곱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제7호 안건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본인소개하고 3분 동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7호 안건설명

제7호안건설명자A

대기정책과 대기정책팀장 이병철입니다.

서울시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원래 과업기관이 금년 10월부터 2019년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 수시학술용역 심사를 거쳐서 1차년도 사업비는 기후변화기금에서 3억 원을 확보해서, 이번 정기학술용역심사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대기 중에 있는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을 해서 오염원별 초미세먼지의 특성 및 배출량 조사, 그리고 기상 및 장거리 이동물질에 의한 대기질 영향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오염 기여도 조사 및 해석을 통해서 서울시 저감 정책의 효과분석, 그리고 개선방안 및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7호 안건심의

000 위원

제가 여쭙볼 게, 과제의 제목이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하고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이 메인이죠?

제7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에서 대상물질에 오존이나 VOC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초미세먼지라든지요?

제7호안건설명자A

VOC는 안 들어갑니다.

000 위원

VOC가 제2차 수도권관리계획에는 VOC도 포함되고 오존도 포함되고 초미세먼지도 포함됐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시 2030 계획에서 이거를 안 하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VOC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제7호안건설명자B

원래 당초에는 미세먼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수시학술용역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그쪽에 VOC라든지 오존도 같이 넣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가고, 그때 용역 심사위원님들께서 해줬던 용역을 그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제 말씀은 제목에 2030 대기환경관리 로드맵 있잖아요.

그리고 제2차 수도권계획이 환경부 것이 변화가 되면서, 그 용역도 다른 대기정책과에서 하시죠, 이 과제예요?

제7호안건설명자A

지난번에 심사받았습니다.

000 위원

거기에 VOC든 오존이든...PM2.5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030 대기환경관리계획을 하는데 VOC계획이 안 들어갈 수 있
나요? 오존도 안 들어갈 수 있고요?

제목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제7호안건설명자B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 주셔가지고, 수시용역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
셔서 저희가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00 위원

중복된다는 말씀입니다.

항목들이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요.

타 용역에서도 측정하시고 이 용역에서도 모니터링하신다는 거 아니에
요?

제7호안건설명자B

이 모니터링에서는 미세먼지에 관련돼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존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000 위원

그럼 제목이 많이 잘못됐죠.

대기에 가장 서울은 중요한 게 여름철에는 오존이잖아요, 봄, 가을에
미세먼지이고요.

대기환경 2030에 그것이 빠지는 계획은 뭐 빠지는 거가 될 수밖에 없
는데요.

제7호안건설명자A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과업내용 보완하는 사항이 네 가지 지적을 받아
서, 그중에 하나가 미세먼지하고 오존 대책이 보다 심도 있는 대책수립
이 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000 위원

여기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7호안건설명자A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과업내용서는 갖고 했거든요.

000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들어간 거잖아요, 보완해서요.

000 위원

그런데 이 용역에 초미세먼지 말고 말씀하신 부분이 들어갔냐는 거죠.

000 위원

2030 계획에 오존, VOC, 미세먼지 들어갑니까?

제7호안전설명자B

예, 들어갑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요.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잠깐만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질문 있으면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유사한 과제가 7억짜리가 거의 세 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하나 7억인지 모르겠는데 몇 억인데요.

그래서 대기환경관리에선 당연히 오존도 들어가고 VOC도 들어가야 돼요.

두 개 과제를 합치든 뭐하든, 따로 따로 하는 게 오존하고 미세먼지하고 VOC가 빠지는 서울시 대기관리환경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다른 거는 별로 오염도가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같은 과에서, 조정이 안 된 채로 왔는가...

000 위원

7번이 제일 큰 거고, 6번 또 다른 것 하는 거는 그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분산돼가지고 되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수님 말씀

대로 뭔가는 큰 틀에서 정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000 위원

과제도 굉장히 규모가 커서, 필요성은 필요하고 한데 조금 같은 과 안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계획이 원래 있어요.

이게 한 번 하고 2차가 2015년도에 시작되는데 그게 한번 바뀌었어요, 시작하자마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거 바꾸는 것을 하나 한다고 용역이 저번에 들어왔었잖아요, 제2차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거기도 이거하는 거예요, 대기환경관리.

여기도 2030 계획 또 한다고 하였고, 바로 앞에는 오존이 또 중요하기는 한데, 또 한다고 하니까 과제 세 개가 이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도 이렇게 와갖고 이게 예산이 적정한지 저는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샘플링 개수 이런 것 잘 모르고 하니까요.

위 원 장

이거는 과가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팀끼리 하니까 서로 각자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요.

000 위원

과제가 7억짜리인데 큰 거잖아요.

000 위원

큰 거죠.

000 위원

이거를 분명히 과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이 부분은 000 위원이나 000 위원이나 이쪽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3차까지 심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심의기회를 가

지는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000 위원

다시요?

위 원 장

그렇다면 앞에서 한 것도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됩니까?

000 위원

먼저번에 한 것은 가는 거고요.

이번에 두 개가 올라왔으니까요.

위 원 장

그러니까 방금 한 것 오존하고 이것하고 오존도 다시 해갖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000 위원

그게 상호 같이 해야 된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로서는 그게 잘 모르는 일이고요.

위 원 장

그다음에 이거를 전문가이신 000 교수님이나 몇 분이 모여서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요.

000 위원

자문을 받으셔서 프로젝트의 내용과 규모를 정리해서 다시 올리고요.

000 위원

두 개 합치면 14억이잖아요.

000 위원

할 거는 되게 많을 텐데요.

더 쓰려면 더 쓸 수도 있는데, 여하튼 걱정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항목들을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냐 그 말씀이거든요.

위 원 장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법적으로 궁금한 게 여섯 번째 서울시 오존이 우리가 걱정으로 이미 심의를 했는데, 그거를 다시 부적정으로 되돌릴 수가 있나요?

000 위원

‘프로젝트는 걱정하나, 일곱 번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000 위원

단서조항.

위 원 장

6번은 그렇게 단서를 걸고 7번을 다시 심의하고요?

000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혹시 아니면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밖에 아직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러서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위 원 장

그런데 저분들하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이지, 팀장님은 자기네들 것만 보지, 전체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는 해가지고 온 건데요.

000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대기전공 교수님들을 학회에서 모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 쓰고 무엇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가 있다든지, 이 예산 범위 내에서요.

그런 것들은 전공교수님들이 마련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차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여섯 번째 안건은 단서를 다는 것으로 하고요.

여섯 번째 안건 오존은 초미세먼지와 같이 고민해 보라고 단서를 하고, 지금은 일곱 번째 초미세에 대한 심의는 하되,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제가 뭐라고 유도하기는 그러니까 심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000 위원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은 대기 안 좋으니까, ...내용이 서로 중복돼요.

제7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러면 간사님, 여섯 번째에 그렇게 조건을 달아주십시오, 심의는 됐지만 걱정으로요.

그러면 일곱 번째 심의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 안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이게 이미 심의가 돼서 걱정으로 했는데, 그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전체적으로요.

사실은 여섯 번째 것도 다시 널리파이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뒤에 것은 못 보고 여섯 번째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맞는 것인지 제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000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6번, 7번 다 걱정이라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 없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하라는 의견이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예산 규모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서로 따로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낭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연계하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도 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아까 6번 심의할 때도 걱정이라고 하셨지만,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았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불필요한 것, 위원님들 아직 의결은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용역 다 필요하기는 한데, 내용 부분에서 구성을 어떻게 갈 것인지, 예산규모를 어떻게 갈지에 대한 의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 용역 간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의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리하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미세먼지 모니터링에 대한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000 위원

걱정하고 단서를 다는 거죠?

위 원 장

예, 단서를 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 사

열한 분.

000 위원

일단 전문가 분들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00 위원

여기 보면 6번도 보완사항이 한번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사항에 또 보완사항이 붙어서 나가는 거죠?

위 원 장

예.
그러면 다음 안건까지 하고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설까요?
반 이상 한 다음에 쉬는 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서, 다음 안건 하고 쉬
겠습니다.

제8호 안건

강동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본인소개 빨리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짧게 설명해 주십시
오.

제8호안건설명자

역사문화재과 문화재연구팀장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려는 사업은 강동구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이게 작년 9월 이 위원회에서 송파구 강동지역을 지표조사를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분리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하셔서 송파는 올해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강동지역 추가로 진행하는 건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3,000정도 되고 공간적 범위는 강동구로 한정됩니다.

면적으로는 24km² 정도 되고, 시대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시기 이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지역의 기초조사, 문화유적 현황조사, 문헌사료,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해서 문화유적 원위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표조사에 대한 매장문화재 존재여부를 판단하고 유적의 중요도 분류, 그리고 현황분석을 통한 보존방안을 수립하고, 학술용역결과를 담은 유적 분포도를 제작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유적분포지도하고 서울시 통합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으로 최종용역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제8호 안건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게 서울시에 있다고 서울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원래 지표조사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하기에는 예측가능한 지역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미리 사업시행 전에 예측 가능한 지역을 만들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시작한 건입니다.

000 위원

그래도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8호안건설명자

문화재청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유적지역일 경우에는 지표조사하고, 유적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시굴조사나 발굴조사 허가권만 문화재

청장에게 있습니다.

발굴 같은 경우는 일부분 국비에 의한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000 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도 이거를 시에서 대신 이렇게 해주나요?

제8호안건설명자

경기도에서 저희 사례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이게 선진사례이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검토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예.

위 원 장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이게 되고 나면 민간업체의 지표조사의무가 면제되는 건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 면제됩니다.

000 위원

문화재청 올라가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까지 받겠네요, 지표조사 결과를요?

제8호안건설명자

결과 올라가면, 송파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끝나면 바로 문화재청에 내년 2월 정도 상정돼서 최종결과 서울시로 통보됩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교수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저도 여기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작년에 사전검토결과에서 송파와 강동구 이렇게 나누어

서 했는데, 거기에 주로 이전에 심의위원들께서 경기도에서 한 것하고 연계해서, 여기 사업 안에서는 강동구만 연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을, 유적에 대한 것들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용역인데, 주로 전체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안에서 많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도시계획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헌이나 이런 다양한 역사성, 사회성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전문가도 많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에서 필요하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 이니까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의필요로 하고 사전에 적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제 기억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논의가 됐던 거죠.

나누어서 하기로 한 거였고, 한쪽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하게 여기에서 논의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안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지도에만 나오는 거예요?

GIS 이런 쪽은 안 나오나요?

000 위원

민간에서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터파기를 들어가다가 유적이 나와갖고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자기가 사업시행하려는 그 땅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문헌들을 토대로 이 지역에 뭐가 있었는지, 과거예요.

이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있을 만한 개연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제출합니다.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추가적으로 발굴조사 이런 게 지시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없을 것 같으면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러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무조건 지표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민간사업자들이 할 때마다 일일이 다 하게 되니까, 제일 처음에 사대문 안을 중심으로 했었어요.

사대문 안은 워낙 유적지가 많다 보니까 했다 하면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등고선 식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가장 높은 데 진한 색으로 나타나는 데는 종로나 이런 쪽이 되겠죠.

유적 나올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닌 지역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점점 서울 전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서 작년에는 송파한 거고, 이번에 강동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 거거든요.

000 위원

이게 원래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라면, 서울시가 대신해 주잖아요.

나중에 사업자가 사업하실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시나요?

000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요?

000 위원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범위 자체를 넓혀서 한꺼번에 이 정도를 하게 되면, 보통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2~3,000 정도 범위마다 다르지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별사업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예측도 못 한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해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 권역을 묶어서 한꺼번에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대시민서비스의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죠.

000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공익 차원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꾸로요.

왜 그러냐면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터파기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진척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익 차원에서 이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시가 돼야지, 그러면 사업시행자들이 자기네들이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계산을 하면서 추진이 되고, 이것은 아주 선의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아주 중요한 유적들을 사업시행자들이 덮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유적이 있을 만한 데는 거꾸로 지자체나 이런 데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터피기할 때요.

그래서 그것이 매몰되는 현상을 없애야 돼요.

아주 간단한 것들은 덮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일단 확 파버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강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000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 이하는 파다가 나오면 그냥 더 파버립니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나오고 발굴하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공적인 차원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8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예, 그럼 적정성 여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 분 적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0분 정도 될까요.

(15시 42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제10호 안건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물재생계획과죠?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물재생계획과 하수계획팀장 김준형입니다.

위 원 장

열 번째 안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제10호 안건설명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열 번째 안건이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및 수리분석방법 개선용역입니다.

2010년, 2011년 이후에 하수도를 설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보통 설계강우에 대해서 침투홍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관로의 단면과 경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설계의 방식이었는데요.

2010년, 11년 침수 이후의 설계방식들은 대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우를 뿌리고 그 상태에서 시간변화에 따라서 유출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그리고 이때의 관거 내의 물의 움직임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5년간에 걸쳐서 이런 방식의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해석적으로 쓰고 있는 이 유출모형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된 모형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지역특성에 잘 안 맞는 거죠.

해석모형으로 계산한 결과가 실제 상황과 틀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지형에 맞는 매개변수들을 보정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설계인자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국내에서는 해본 사례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 이후에 침수지역 위주로 해서 대략 100여 개 정도의 수위계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수위계들을 기반으로 해석모형과 실제 모형이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설계기준들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음 것도 해주시죠, 열한 번째 것이죠.

제11호 안건

선진화를 위한 하수도 재구축방안 및 기준마련 용역

제11호 안건설명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두 번째 안건은 서울시 하수도가 양적으로는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모든 하수, 생활오수나 빗물을 이송할 수 있는 1만km에 해당하는 하수관로들이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일일발생오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네 개의 처리장도 이미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2000년도 이전에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미 시설노후가 물론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올 7월까지 대략 한 7개월간에 걸쳐서, 하수도나 경영 쪽 여러 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수정책자문단을 꾸려서, '앞으로 서울시가 하수도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재보다 하천수질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수도에서 더 많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현재보다 하수도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돼야겠다는 겁니다.

원래 하수도는 분뇨라든지 음식물폐기물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하수도는 그 부분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하수도가 현재 단순 생활오수나 빗물만 처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겠다.

그래서 분뇨를 직투입시키거나 이런 부분까지 가야겠다고 하는 게 크게 제시된 정책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제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해야 될 건데요.

그 개별적으로 진행돼야 될 세부과제들이 뭐가 있고, 그거를 어떤 일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지, 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10호, 11호 안전심의

위원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과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먼저 지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첫 번째 안전을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발표자께서는 이런 연구가 전무하였다고 하시는데, 이런 연구는 수문학회든 수자원학회든 상당히 학회 쪽에서 많이는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현장적용에 관련된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 특성에 따라서, 여기에 관로인자라든지 토지피복 정도라든지 유역인자에 따라서, 우리들이 실측해서 그 실측자료를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설계비를, 시공비를 줄이겠다 그런 목적이신 거죠?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물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설계과업지시를 낼 때에 ‘필요한 경계조건들의 값들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써라.’라고 하는 표준적인 범위 같은 것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000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잘 하시겠지만 비가 올 때 가서 기다렸다가 측정을 해야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연구원들이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기간 동안 그날 운이 좋아서 가서 측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연구기관이 18개월이면 비가 올 때 두 번 정도,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그렇죠, 우기를 두 번 정도 하고요.

000 위원

우기를 두 번 정도 겹쳐서,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검보증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연구가요.

그러니까 18개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발표하실 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서울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하는 것도 매뉴얼 비슷하게 표준화를 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강우의 불확실성 모델들, 그 내용들도 쪽 많이 써놓으셨어요.

써놓으셨는데, 모노노베(MONONOBE)든 옌초(YEN-CHOW)든 이런 것들은 다 연구가 이루어졌었던 것이고, 그래서 집중을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보완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선진화를 위한 하수도재구축방안이, 창피하지만 예전에 광화문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외국분이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광화문 꽤 올라가 있는데, 그럼 너네 집은 어떻게 됐냐.’ 이 정도로 되게 국제

적인 망신을 당한 일들도 있었는데, 우리가요.

분명히 선진화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는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읽어보면서 최근의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물에너지 넥세스라든지 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업계획서에 빠졌다고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 되시게 되면 충분히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책지표를 마련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책지표가 정량화돼서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량화나 그러한 내용들이 빠져있지 않나, 연구계획서에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만 가신다고, 선진방문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연구원들이 일본만 다 가야 의미가 없고, 두 팀으로 나누어서 유럽이든 다른 지역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도정책자문단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정책자문단이 주기적으로 안건 별로 한두 번 모여서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TF팀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연구원들로 포함이 돼야지 이게 좋은 게 나오지, 대학원생들이나 아니면 설계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인건비 다 쓰고 그 사람들 가끔 한번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하면, 이거 자문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0호,11호안전설명자

그렇게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책자문단 한 7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그때는 분과를 총 네 개 구성했습니다.

정책분과, 하수관로 분야, 하수물재생센터, 경영과 조직 관련 네 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과별로 한 열 분씩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모임을 갖고, 그거를 대략 한 6개월 정도 지속해서 결과보고서를, 정책보고서를 하나 만든 거죠.

그 정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의 방향 제시했는데,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이론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각론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사업화할 것이고, 개들을 어떻게 스케줄링을 할 거냐.’ 이 부분 로드맵을 작성하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그러면 지난 7개월 동안 하수도정책자문단에서 네 개 분야를 만들어주신 건가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네 개 분야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거죠.

000 위원

새로운 거는 별로 없던데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물론 새로운 거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이런 이슈들은 해외에서는 이미 다 이슈화되어 있던 것들이고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하나도 진행을 못 해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위 원 장

혹시 그분들을 활용해 갖고 이 용역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연구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입찰을 붙여야 될 거니까요.

만드시 그것들이 된다는 보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용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문의 형태건 계속해서 참여를 하셔야죠.

000 위원

이게 두 번째 안건 같은 경우에 일반경쟁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컨소시엄이든 엔지니어링 회사가 주체가 되든 누가 들어오게 된다면, 과연

이게 선진화의 이야기가 나올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도 못 했던 게 그분들이 이런 서울시 사업에 참여를 안 했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속 재탕, 삼탕해야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어요, 그렇다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방식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안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과 같은 그런 프로세스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그렇다고 안 할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시도를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요.

적절한 카운터파트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위 원 장

오히려 팀장님 쪽에서 구체화를 시켜주시고 주도를 하게 되시면, 훨씬 더 일이 쉽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쓰신 내용을 보면 너무 러프해서, 사실 '용역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계용역단가의 제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하게 되면, 거꾸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집단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못 되고, 거꾸로 그 밑에 들어가는 연구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그렇죠, 어쨌건 서울연구원이 아니라면 입찰의 형식이 될 거고요.

만약에 기술용역을 갈지 어쩔지, 기술 파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시안전실에서 '기술 쪽의 연구조직을 별도로 만들겠다, 내년에.' 그런 계획들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주체가 누가 돼야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절한 주체를 정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은 이 사업 계획대로 필요한 얘기인 거고요.

이 사업을 적절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입찰참가자격이나 조건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인 거죠. 물론 일반 엔지니어링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000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다음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아니요, 어차피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맡주하기 위해서는 발주방침이 나와야 될 테고, 발주방침이 나올 때 이거를 입찰참가자격을 엔지니어링회사를 줄 것인지 아니면 협회나 학회를 줄 것인지 연구기관에 줄 것인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000 위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술용역 시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계약 방식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하냐.

적정하다고 그러면 적정으로 나오는 거고, 이 방법들이 적정하지 않아서 부적정하다고 그러면 재심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학술용역이 결정되면 1차적으로 시정연, 자문단 안에도 시정연에서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연구원에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진행하겠다고 하면 서울연구원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연구원 쪽에서 이 과업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거는 입찰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죠.

000 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서 할 때에 그거를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학술용역심의가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에 이게 연구이기 때문에 조례상 그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이 밑에 '제한경쟁 서울연구원'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든지, 뭐를 써주셔야지 그거를 가

지고 심의를 한다는 거죠.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저희가 서울연구원에 주겠다고 하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하수도 쪽에 연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서울연구원이요.

000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수관로 수리특성평가 여기에 조도계수, 마찰손실계수 등등 퇴적량 등을 하기 위해서 모형실험을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거죠?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반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런 데이터들이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는 하수도의 특별한 특성이 있어서 이 실험은 서울시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있는데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기는 할 테고요.

그 데이터에 기반 해서 원래대로라면 상하수도협회에서 하수도시설기준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그 시설기준 안에 ‘조도계수라는 값은 얼마에서 얼마 값을 써라.’라고 제시를 해놓은 게 현재 있죠.

그런데 그 값이 범위가 꽤 크거든요.

000 위원

그런 거 각 설계회사가 그런 것 계획을 하고 하면 되는데,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현재는 그거는 엔지니어들한테 맡긴 거죠.

000 위원

예를 들면 이 모형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팩타들을 일회성 실험으로 밝혀 낼 수가 있는가, 1번.

그럴 정도로 서울시의 하수도관이 특별한가.

하수도관은 특별합니까?

예를 들면 모형실험 하는데, 서울의 하수도관 특성을 모형에 얹혀서 할 수 있나요?

얼만한 크기의 모형을 생각하고 계획을 짜셨나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모형실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실물모형실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실물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실제 하수도 크기를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관을 최초로 설치했을 때 조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은 제품생산자들이 충분히 데이터들은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된 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실제로 관 교체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폐관된 관을 가지고 지상에 모형을 만든 다음에 지상에서 조도를 확인,

000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모형을 생각하세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대충 한 스펀 정도를 실험하려고 합니다, 맨하수도 맨홀 한 스펀 정도를요.

000 위원

길이로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보통 한 스펀에 평균 25m에서 30m 정도 됩니다.

000 위원

25에서 30m 이거를 해놓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서울시 하수도관이 특별한가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최초에는 조도가 일정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관 같은 경우 대부분의 관이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제시했던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지 어찌지를 확인해 보고,

000 위원

그런 거는 하수도관이 어느 지역에서 쓰여서 어떤 하수도의 특성이 지나갔으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를 갖고 그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나요, 어떤 값을 얻으려고 하시는 게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물론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테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봐서 일종의 범위를 정해놔야 되겠죠.

000 위원

저도 교수님 말씀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목만 보면 서울시에 특성화된, 특정된 제목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할 연구제목 같아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환경부에서 할 일이죠.

000 위원

환경부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할 제목인데, 이 연구를 서울시에서 하는 게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서울시의 하수도나 하수관로가 다른 도시하고 다른 부분이 뭔가 있어야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정당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국가 단위에서 할 연구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저의 생각은 다른데요.
저희 관이 부산시의 관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관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콘크리트제품관들을 쓰고 있다면, 국내에 있는 관들은 어느 경우나 일정한 조건 하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원래는 이 기준들은 환경부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수법상으로는 환경부에서 그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설계기준을 환경부에 하수도시설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시하

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설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거에 맞춰져서는 아직,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물론 수임 같은 유출모형을 써라고 하는 것은 시설기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써라.’라고 하는 것, ‘써도 좋다.’라고 허용해 줬는데 ‘쓸 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이요.

000 위원

쓸 때 어떻게 하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그러니까 유출모형이 과거에는 시설기준에 ‘강우유출모형은 합리식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강우유출을 계산할 때는 합리식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수임이나 마우스 같은 부정류해석도 도입할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합리식의 경우는 설계기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명시를 합니다.

유사시간은 어떻게 계산하고 조도계수는 어떻게 적용하고 유속은 어떻게 계산하고 이거를 일일이 다시 시설규정에 명시해 놓은 거죠.

그런데 ‘수임을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라.’라고 하는 기준은 명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허용만 해줬죠.

000 위원

그러면 환경부에 요구하면 안 되나요, 이런 거를 해달라고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물론 환경부에 요구해서 환경부가 그 기준들을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가 설계에 이것들을 광범위하게 쓰다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더 급한 상황인 거죠.

000 위원

하수도설계하는 전문 엔지니어링회사들이 대규모로 여러 개가 있고, 이

미요.

이런 데이터 상당 부분은 엔지니어링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이것을 ‘조도를 어느 범위에 썬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데 따르면요.

환경 분야 하수도 엔지니어링 회사들 큰 것들 상당히 많은 경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이런 연구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서울시가 예를 들면 아까 25m 정도 되는 모형 하나를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생산한다?

굉장히 리스키한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번.

두 번째 11번 과제는, 여기 선진화를 위한 용역 쪽 해서 하시는 용역은 왜 예산이 6억씩 들어가죠?

거기 보면 거의 정책적인 내용이고, 왜 6억이 들어가죠, 11번은요?

어떤 데 소요가 됩니까, 6억이 상당 부분이에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정책적인 사업의 종류가요, 저희 짐작에는 개별사업으로 나올 수 있는 최소한 2~30가지 이상의 개별사업들이 나올 거거든요.

000 위원

개별사업들이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여기 하시는 것은 하수도 통합연구에 관한 것, 단위별과제 개별연구에 관한 것 있기는 한데, 대부분 정책연구들이잖아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정책연구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개발과제로 나와야 될 사업들은,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 사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수십 가지 사업들을,

000 위원

수십 가지 작은 주제겠죠.
수십 가지 사업을 어떻게,

제10호,11호안전설명자

작은 주제들은 아니고요.

가령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수처리를 뭔가 늘려야 된다. 그래서 물재생센터 내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우수처리시설을 하나 만드는 사업만 하더라도,

000 위원

무슨 시설이요?

제10호,11호안전설명자

초기우수처리시설이요.

000 위원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만들어요?

제10호,11호안전설명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천수질개선이 목표인데, 현재 하천에 나가는 오염물 중에 물재생센터 방류수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의 양은 전체 오염부하량의 30%입니다.

나머지 70%는 강우 시에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강우 시에 나가는 70%의 오염부하량을 줄이지 못하면, 하천수질을 더 이상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거죠.

그래서 물재생센터에 우수강우 시에는 처리량을 늘려서 처리하는 시설들을 초기우수처리시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000 위원

그 처리시설들의 설계 값을...

제10호,11호안전설명자

아니요, 그 초기우수처리시설의 볼륨을 얼마로 해야 될지, 거기에서 수질을 얼마까지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사업들이 이 사업만 아니고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000 위원

사업들이라기보다는 주제들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사업이라고 봐지나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그게 개별사업화 돼야죠.

000 위원

추후에 돼야죠, 이 과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이 과제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들을 꼭 리스트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00 위원

그렇죠.

그거를 하는데 리스트업 하는 거지, 그거를 설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초기우수시설을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데 6억이 필요한가 여쭙보는 거예요.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투입되는 인력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이 된 거니까요, 이 용역비들은요.

그런데 투입돼야 될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업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고요.

000 위원

몇 명 투입된다고 예산 잡으신 거예요?

000 위원

40명 정도 됩니다.

000 위원

40명이 이 기간 내내 100% 참여합니까?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물론 100% 참여되시는 않겠죠.

000 위원

그러니까, 그럼 몇 명씩 따져보면 대략 예산이 나오잖아요.

위 원 장

알았습니다.

다른, 제일 오래 우리가 논의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서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혹 저희들이 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호,11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 퇴장.)

첫 번째, 여기순서 대로 하면 열 번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주심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제가 체크했었던 내용들을 아까 질문을 드려서 부가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의 대표성, 6억 정도의 연구를 하는데 모형실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성이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랑 하수도 시뮬레이션의 매뉴얼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여기에요.

성과물을 SWMM을 우리가 표준모델로 서울시에서는 삼는다면 ‘이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갖고 와야지 우리가 설계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조직제도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올 때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어디 비오고 어디는 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사실 측정하러 다니는데 세 번 하면 한 번 정도 측정할까 말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잡혀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모형실험에 관련된 것은 추후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요?

000 위원

10번하고 11번이 완전히 다른 건가요?

000 위원

예, 이거는 현장에서 아까 대기나 이런 것처럼 10번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실측지를 근거로 해서 모델링할 때 사용되는 계수나 상수를 서울 지역에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까 팀장님이 사실 전공성이 조금 떨어지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도계수다 그러면 어떠한 게 조도계수가 '0.3이다, 0.7이다.'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 '0.3에서 0.5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써라.'라고 기준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사가 심한 데는 더 빨리 물이 흐를 수도 있고 덜 한 데는 저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모니터링해가지고 서울시에 맞는 거를 찾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 하나 갖다가 조도계수를 재봤자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000 위원

자체에 신뢰도나 대표성 면에서 안 하는 게 더 좋은 실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느 연구기관이나, 이거는 대학에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서 장기간 연구해서 이런 논문 쓰고 데이터 생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서울시의 행정에서 하는 아무리 학술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모형을 구축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위 원 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000 위원

10번 말씀하시는데요.

000 위원

10번 모형이 돈이 반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000 위원

저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까 이렇게 미리 와서 000 위원실에서 써놓으신 것을 보니까, 장기용역이신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 말고도 중랑천지역의 수문조사도 하고 양재천지역의 수문조사도 하고, 그런 모니터링사업들이 필요하거든요, 대기랑 마찬가지로요.

000 위원

모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000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일단 모형을 해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맞춰보자 그런 얘기가 들어가서 모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모형을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하나 설치한다고 그러면, 장기연구면 일단 계속 그 기간에 이거를 해야 되고, 국가기관도 아니고요.

000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국가기관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면 큰 대학교에서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데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일반경쟁입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00 위원

계약방식은 일반경쟁방식이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000 위원

꼭 필요하고요?

000 위원

예.

이거는 그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하수관거도 막히고, 사실 이게 물을 어떻게, 싱크홀 문제가 한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아까 얘기했었던

모델링에서 모의가 가능해요.

‘구멍이 뚫렸는데 지하수가 거기로 들어오면 토양도 어떻게 쓸려 들어 오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아직 해 본적이 없어요, 사실 그거를요.

000 위원

그런 거는 보통 컴퓨터 모델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모형을 25m짜리를 하나 3억 들여서 만들어갖고,

위 원 장

혹시 그거는 저분이 설명을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

000 위원

여기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000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거라고 축소해서 어떤 배수구역의 전반적인 흐름특성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읽었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관거 대 관거 그것만 하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이거를 누가 제안해서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반적으로 하면 축소모형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배수구역 유역 전체에서 그거를 하고, 조사한 것을 거기에서 같이 검토정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일반적인 모형실험이거든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 여하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과업지시서에 나온 것을 보면 축소모형을 제작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뜯은 것 갖다가 하는데 3억씩 들 이유는 없거든요, 당연히요.

000 위원

그렇다면 모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씀하고,

000 위원

실효성이 의심스럽기보다는,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의심스러운 내용인데, 축소모형을 해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어차피 대기든 토양이든 수질이든 모든 게 다 실측을 해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샘플할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크게 잡아놓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을 실측한 것들을 가서 집어넣고 맞춰보는 거죠.

위 원 장

모형으로 하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되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000 위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요, 상수든 계수든이
요.

000 위원

그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하수...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거기에 활용할 인
자들을 측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처럼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상식으로는요.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서울시가 갖고 있던 수도연구소 이러면 가서 실험하면 더 좋겠
지만, 그 과제를 새로 만들어서 이런 데이터를 생산한다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하다 생각합니다.

000 위원

모형 부분만 재검토해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요.

000 위원

모형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00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모가 축소돼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000 위원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요.

000 위원

검토를 해봐가지고 더 많이 들 수도, 왜냐하면 그게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실리적으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000 위원

여기에 사용된다는, 서울시의 설계 시에 사용되는 모델은 미국 EPA에
서 세계적으로 오픈된 오픈소스 모델링이에요.

그리고 그거 수백 명이 참여해서 만든 모델이라,

000 위원

여기에서 모형실험을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형 말이에요.
컴퓨터모형은 EPA 그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 원 장

그거를 지적을, 일단은 만일에 통과된다면 그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걱정성 여부 판단하겠습니다.

000 위원

예산 부분도 아까랑 똑같이 그다음에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규모가 결정이 된다면 절반 정도만 하고 장기계속사업으로,

000 위원

개월 수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은요.

000 위원께서 장기과제는 몇 개월 할 것인가 토달해서, 내년에 몇 개월
이나 그 비율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10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걱정성 여부를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 분 다 걱정이십니다.

위 원 장

간사님이 단서는 꼭 써주십시오.

간 사

예.

000 위원

두 가지 다요, 한꺼번에요?

위 원 장

열 번째 한 겁니다.

11번째 하겠습니다.

11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11번째도 사실 용역사업계획서는 그래도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 7개월 동안 전문가들과 하수도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하수도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존에 50년, 100년 된 하수도를 개혁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포럼을 했는데,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선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분야에 아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섯 개 정도씩 한 20개의 과제개발과, 새롭게 해야 될 과제개발과 그거에 어떻게 도입하면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정도까지 만드는 게 재구축방안이고요. 이 재구축을 하려면, 우리가 행정달성지표와 같은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빨라서 어떤 성과지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서 잘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성과지표개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는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문가들과 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아무래도 실제 해외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러한 해외출장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런데 필요한 건가요? 저는 잘 몰라서요.

000 위원

저는 11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기존의 하수의 물리적인 서비스 말고 조금 더 외국에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정책을 만든다는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임에도 불구하고 6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상당히 과도한 내용이 아닌가.

위 원 장

구체화되는 용역은 아니죠?
될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000 위원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000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이분들이 내용들을 앞

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 쓴 거거든요.
사실 구체적으로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더 해서, 이만큼 일을 하면 이
거 별로 아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조그마한 소과제별로 한 아이템씩
3,000만 원 정도씩 20개를 개발하고 싶다는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
에 6억을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게 하수도 요금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하수도가 심각하거든요,
싱크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모르니까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20개 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싶은데, 그러면 한 개당 얼마씩 줘야 되냐.
본인들은 3,000만 원 정도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 원 장

000 위원님이신가요, 000 위원님이신가요?

000 위원

00 위원입니다.

위 원 장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000 위원입니다.

저희가 요즘 보면 공무원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주고 외부에 위탁을 주고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서,
예산부서에서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정도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
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틀을 정했고, 이미 수차례 실국에 전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할 때도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으면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보다는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그게 제
가 내부공무원한테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하
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솔직히 듭니다.

000 위원

20개를 선택을 본인들이 못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000 위원

000 교수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 방침이 그렇고, 저희가 과거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포럼운영 같은 것을 통해서 포럼운영하면 회의도 하고 자료도 수립해야 되고 책도 만들고 하잖아요.

포럼운영 같은 것을, 주제별 아까 나온 2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하면서 그런 포럼운영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나 자료는 수집하고, 사실 정리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분들이 하셔야죠.

교수들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조도자료 파악하고 이런 것은 다른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용역을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끌고 가면서 포럼운영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요.

그런데 완전히 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20개 하면,

000 위원

애매모호하게 써져있습니다.

하수도 정책자문단의 운영비도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000 위원

그런 것하고 해서, 너무 소주제가 20개씩 된다고 그러면 방향성이라든가, 서울시에 급한 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도에 다 급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하고도 상충될 수가 있고, 이공계통은 돈이 많이 드는데 분석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어떨 때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책도 물론 아까 농담 삼아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는 잘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게 하나이고, 하나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된다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브레인스토밍하는 정도의 일들 그건 어떤가.

000 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 원 장

포럼을 운영하는 예산이요?

000 위원

포럼이나 자문이나 여비나 이런 부분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6억이에요.

000 위원

예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직접 용역을 수행하게 해가지고 성공 혁신사례거든요.

6~70억씩 절약을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조건 아웃소싱하는 습성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11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렇죠.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한 명 거수.)

이 안건 걱정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에 열두 번째 것 하죠.

열두 번째 것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한양도성 9번 하겠습니다.

제12호 안건

서울시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 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앉으시고요.

빠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2호 안건설명

제12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과 운영팀장 정훈모입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내용은 물재생센터 처리용량 초과 유입수 영향 및 최적관리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재생센터는 시설용량이 있고, 필연적으로 관로에서 비가 올 때는 하수처리장 용량보다 상당한 과량이 하수처리장으로 도달이 돼서 하수처리장 유입이 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하수처리장에 초과유입되는 우수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설개선이, 하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와 그다음에 관련 법규가 모호하다는 사유에서 우기 시에 강우가 초과 유입됐을 때 운전지침이,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지침을 마련을 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강우 시에는 대책이 없다는 것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요.

내년이면 전반적인 시설개량이 거의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 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는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통상적으로 지침을 할 때는 관련 규정과 그다음에 비용효율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지침을 주로 만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우수, 강우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용량 초과수에 대한 지침은 통상적인 그런 지침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드시 주변생태계에 영향까지, 수역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이 되어서 이 지침이 마련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내년도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지침 마련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12호 안전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4개월로 되어 있는데 연구비는 어떻게 쪼개지는 거죠?

제12호안전설명자

일단은 1억2,000, 8,000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내년에 쓰실 계획이예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리수 초과유입수라는 것도 강우 시에 봤을 때 오는 건데, 그것도 많은 비가 올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12호안건설명자

하수처리장에 따라 다릅니다.

유역에 따라서, 서남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1mm 내지 2mm만 와도 도달유량이 하수처리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난지수역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비가 와야지만 하수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장마다 여건은 다 다릅니다.

000 위원

사실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합리식 하수관거인데, 합리식 하수관거가 불량해가지고 몇m 가면 구멍 나 있고 몇m 되면 뒤편 있고, 여하튼 불명수가 많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제12호안건설명자

불명수에 대한 거는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오해는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평시농도, 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농도가 제가 2010년부터 근무했는데, 7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초기에는 평균 120PPM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140에서 17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류식 되어 있는 대로 보면, 설계할 때도 200 전후로

하잖아요.

아직도 20% 모르는 물이 들어와서 회석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체 서울시가 넓다 보니까, 하수도 요금 받아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하튼 초과 유입수영향 때문에 그냥 방류를 해서, 어떨 때는 물고기가 둥둥 떠오르고, 그런 것들을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인정 하거든요.

인정하는데, 여기에 써져있는 내용들을 제가 논의필요하다고, 자료협조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2억 원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도 조사를 하고 분석도 시키고 그러는 것인지요.

제12호안건설명자

선행연구들이 있습니다.

관련연구들도 있고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생태용역도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용역 외에 사실 기술파트 부분은 상당 부분을 센터 자체적으로 분석이라든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센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되, 부족한 것이 역시 생태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특히 강우 시에 어떤 국부적인 유역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흡합니다, 현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산을 해야 됩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방류수역에 방류 시에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하시는 것이지, 생태조사량은 조금 틀립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일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학술용역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유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적인, 포괄적인 생태조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되, 그 부분적인 생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추가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정말로 단순무식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초과유입에 대한 영향이나 최적관리방안의 초과용량을 짓는 것 말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제12호안건설명자

일평균 최대용량입니다.

매일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수는 전량처리하게 됩니다.

전량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리식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하수량의 세 배까지를 저희들이 관로로 하수처리장까지 도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초기에 고농도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수와 하수가 섞인 물까지를 하수처리장까지 도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증설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있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있습니다.

그 물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중량에 50만,

000 위원

그거는 증설하시는 거고, ...증설해서, 여태까지는 불법방류를 했어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수처리고도도 못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매스컴에서 보시면 하수도 요금도 그래서 급격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게 삼투까지 들어와서도 영향이 많거든요.

이게 초기우수 때 흘러가는 농도가 하수처리장에서 140으로 들어오는 데 200씩 나갑니다.

그냥 보냈다가는, 그래서 가끔 매스컴에 비가 왔는데 왜 중량천에서 물고기가 떠오르냐, 유량도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하수처리장영향이라고 그러지만, 하수처리장영향보다는 하수관거에서 분류식 안 돼가지고 이게 들어온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하수관거를 분리관거로 만약에 만든다고 그러면, 어마

어마한 상상도 못 하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말할 단계가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단계들이기 때문에, 여하튼 모니터링이라도 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연구를 못 했어요, 하수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처리장증설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 이런 것들 들어오지 못하고 싱크홀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관 댐질,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밖에 못 하기 때문에 못 했던 거죠.
아까 한강 생태조사랑은 전혀 별개 관계이고요.
그거는 본류의 샘플링을 몇 개 했었다.
법적으로 생태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는 ‘각 지천에서 방류수역에 있어서의 영향이 어떻게 되느냐, 비가 왔었을 때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 거고,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네 개씩 이게 조사를 샘플포인트를 몇 개를 가지고 해서 객관성 있게 나오겠냐. 오히려 하나를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서 농도가 이만큼 나오면 어느 정도 영향이 나온다는지, 그게 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보는데, 합리식이니까 비 올 때는 유량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제12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기존에 하수처리들은 정상적인 것 플러스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설계가 됐을 텐데, 그럼 넘어오면 하수하고 우수가 섞인 것이 그 최초 들어오면, 최초 집수정이라든가 거기로 들어왔다가, ...최종 이런 방류수 등등 거쳐서 나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됩니까?

원래 초과 200톤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뭐 300톤, 400톤이 들어오면 집수정은 당연히 처리 못 할 테고, 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12호안건설명자

아까 관련 규정의 모호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강우 시에는 어차피 빗물까지 다 합친 물이 방류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용량까지는 2차 처리까지 다 해가지고 최종수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용량까지입니다.

000 위원

시설 넘는 거를 바이패스,

000 위원

바이패스입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바이패스가 됩니다.

000 위원

그럼 바이패스 할 때 영향을 알아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제12호안건설명자

바이패스 수를 저희들이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를,

000 위원

바이패스는 간단한 처리만 하나요?

000 위원

예, 1차 처리만, 침전만 하는,

000 위원

물리적인 처리만 하고 거기 되는 거네요.

000 위원

그런데 침전도 여태까지는 못 했었다는 말씀이고요.

000 위원

많이 오버될 것 같은데요, 비가 집중적으로 올 때는요.

제12호안건설명자

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초기 두세 시간 정도는 평시유입수보다도 높게 나갈 수가 있어요.

000 위원

농도도 그렇지만 유량도요?

제12호안건설명자

양도 꽤 됩니다.

000 위원

양도 어마어마하죠.

000 위원

수생태계 영향을 보려면 아까 000 교수님 말씀 하셨지만, 수생태계 영향은 COD나 이런 농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생태계에 있는 물질, 생물들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럼 그런 거를 하려면 과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료들이 있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일단은 한강 하류 쪽은 고양시에서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000 위원

영향이라는 게 ‘기존 게 얼마였는데, 이게 월류수가 계속 추가돼서 점점 나빠졌다.’ 이런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제12호안건설명자

분석은 가능합니다.

수질상으로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어떻게 생태하고 시기하고를 연결시키느냐.’ 기술자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용역으로 하면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분명히 학계가 참여된 학술용역으로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께서 잠깐 나가 계시고요.

저희가 혹시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 대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제가 보완사항에 관련된 이런 것들 대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만, 우리가 보완하라고 그럴 것은, 샘플링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니까 하한선을 정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꾸로 이거는 앞에 두 번째 과거보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과제인데, 과가 틀리다 보니까,

000 위원

2억밖에 안 되네요.

000 위원

예, 과가 틀리다보니까, 그쪽과는 약간 약한가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 과제가 지속적으로 다른 대기 토양 이런 것처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작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해가지고도 이 돈 가지고 성과가 나올까 말까 저는 확신이 안 서는데, 저보고 하라고 그러면 분명히 못 한다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개라는 거를 다 넣는다는 것도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000 위원께서 전달해 주실 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 과제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야 된다면, 보환연이나 서울물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000 위원

그래서 아까 협조 받는다는 게, 거기에서 기본적인 수질모니터링은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으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조관계를 명확히 해줘야지, 학술용역 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데이터만 다 받아가지고 했으면 2억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비오는 날 가서는 측정을 보통 안 하고요.

그냥 맑은 날 가서, 주기적으로 월별로 측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들은 협조를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협조의 범위와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런 겁니다.

위 원 장

주심교수님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000 위원께서는 빨간색으로 주셨고요.

000 위원

이 부분도 하수도과에서 상수도 쪽의 물연구원에 매년 12억 정도 연구비를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쪽 부분을 연구하라고 연구비가 가는 것인데,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학술용역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의견 쓴 것처럼, 이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 되는지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정책의 방향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면 직접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CSOS 저류조 만드는 거 그거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 쪽 생각입니다.

위 원 장

물연구원이 학술기관으로 보나요? 아니면 전문,

000 위원

연구기관이긴 합니다.

000 위원

조사기관이죠.

엄격히 얘기하면 상수도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었어요.

그러다가 상수도연구원이었다가 물연구원으로 바뀌어서, 하수도팀이 한 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팀장님이나 연구사들 몇 명 없을 것이고, 팀장님은 하수과든 처리장이든 계셨던 공무원분이 아마 가계실 것 같고, 거기에서

이런 생애는 못 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까지 방류를 해도 생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또 양으로는, 질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마스크에 뜨거든요.

그러면 전화가 어디로 오느냐?

이 과로 가는 거죠, 바로요.

그럼 야단도 맞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담당공무원분들이요.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고 해야 되는 것은 예전서부터 있었는데, 아마 하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이런 것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성은 분명히 만들어내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매년 12억씩을 물연구소에 준다고 하셨죠?

000 위원

예, 거기도 서울시 내 기관이긴 한데요.

000 위원

그런데 명목 없이 그냥 ‘무조건 하라.’라고 주는 거예요?

항목을 하나하나,

위 원 장

예산이 12억이란 말씀이시죠?

000 위원

예산 자체는 포괄적으로 나갑니다, 통으로 해서요.

000 위원

출연금 같은 건가요?

000 위원

출연금은 아닙니다.

000 위원

거기에 연구비도 들어갑니까?

000 위원

연구명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000 위원

인건비 아니고요?

000 위원

인건비도 포함은 되어 있어요.

000 위원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몇 십 명 되거든요.

위 원 장

할 수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000 위원

먹는 물 수질 분석기관은 검증을 받아서, 대부분의 인력구조가 상수도 수질검사소였어요.

그래서 미생물서부터 화학물까지 검사하는 기관이고, 약간의 연구를 부식성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분들이 학위를 따고 거기에 연구원으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조사원으로 왔다가 야간으로 석박사를 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박사 받은 분은 제가 알기로는 세 분 정도 있습니다, 한 6~70명 조직에서요.

그래서 그거는 000 위원께서 주신 예산은 어떻게 쓰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연구하실 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원 장

000 위원님도 비슷한, 000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신 거죠, 논의필요하신 것 보니까요?

000 위원

물연구원이라는 데서 어차피 하수까지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 보면 ‘역량이 안 되는 데 있으니까 너네가 하라.’는 부분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했을 때 과연 대안이 뭐냐.’라는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대안은 처리용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처리용량 늘리는 거는 늘리더라도, 그러면 유입되는 초과유입수나 이런 수량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가지고 있어야지 처리용량에 대한 규모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하고, 제가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8호 안건결론

위 원 장

논의할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네요.
이 안 건 걱정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여덟 분 걱정이십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시 아홉 번째 안건으로 가야죠.
아홉 번째 한양도성 하겠습니다.

제9호 안건

한양도성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

위 원 장

앞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제9호 안건설명

제9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한양도성도감 학예연구사 신영문입니다.
심의에 올린 학술용역은 한양도성 등재 신청서 작성 학술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추진하다가,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등재불가판정을 받아서 1차 철회를 한 사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8일 재추진을 위해서 등재 신청서를 철회를 했고, 4월11일 시장님 보고를 거친 이후에, 기존에 한양도성만으로 등재 신청했던 내용

을 도성과 도성의 구성요소, 그리고 도성의 외곽의 방어체제를 같이 합해서 새롭게 등재 신청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철회의 원인은 세계유산으로서 꼭 갖춰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약간 부족했다는, 일부 인정을 받았고요.

한양도성과 같은 세계 수도성곽만을 비교유산연구해서 보니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굴하기 어려웠습니다.

안전성 문제가 있었는데 18.6km 중에서 13km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30% 정도가 멸실이 돼서, 한양도성만으로는 등재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뿐만 아니라 도성 내부에 있는 궁궐, 종묘, 사직, 그리고 도성의 외곽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탄총대성이나 북한산성을 모두 합해서 새롭게 등재 신청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등재 신청서하고 차별은, 기존에 2013년도에 제출했던 학술용역이 한양도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번 2018년도에 심의요청하는 사업은 도성과 도성의 구성요소, 방어체제를 입체적으로 등재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사도시로서의 탁월한 가치와 그리고 한양도성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어체제를 결합해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첫 번째 학술용역결과를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추진하게 되고요.

또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각종 보호정비사업, 유적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학술용역결과를 토대로, 신청된 유산들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 같은 것들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용역이 발주가 돼서 2019년도에 마감이면, 19년도 하반기에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해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자격을 획득하게 되고요.

20년에 영문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2021년도 1월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이 되게 됩니다.

약 1년간의 심사결과를 거쳐서, 등재는 2022년도 7월 세계유산총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시정 6기 공약사업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9호 안전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설명하신 분이 소속이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제9호안전설명자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학예연구사입니다.

000 위원

학예연구관이시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프로젝트를 줘야 되나요?

제9호안전설명자

사실은 도성 내부에 대한 학술적인 역량은 저희 과에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재 신청서라는 게 도성 내에 문화재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계획이라든가 관광사업,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매장 문화재, 공원 기타 관련된 유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 역량만으로는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등재 신청서도 그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추진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학제의 연구자들을 투입시켜서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이전에 선행연구에 최근에 15년도, 16년도 백제역사유적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하고 있는, 저번에 탈락된 이유,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 부분을 더 보완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특별한 차이점 같은 것 이야기해 주세요.

제9호안건설명자

현재 한양도성이 등재 신청, 그러니까 2016년도 1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조선시대의 도시관리의 지속적인 전통, 이것은 한양도성에 남아있는 각자성석과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기록유산에 남아있다 이런 가치로 등재 신청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한양도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성기술, 산성과 평지성을 결합한 평면 형태에, 기존에 다른 나라 성곽들이 습식성곽을 축성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성곽은 건식 성축 방식의 성벽을 축성하는 독특한 타이폴로지가 있다는 점으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일부 인정되기는 했으나, 다른 나라 유산에서는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성만 가지고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그동안 학계에서 공론화되어 있었던, 각계가 다 인정하는 도성지의 특수성, 또 도성방어체계의 특수성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000 위원

중요한 게 탁월한 가치인데, 탁월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으세요?

제9호안건설명자

‘탁월한’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 그리고 유일, 또 하나는 차별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도성지는 다른 동아시아 도성서지들과 달리, 기존의 풍수지리시스템에다가 주례고금기에 있는 도성조형이념을 같이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굉장히 차별된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도성의 방어체계도 찬성과 평성을 결합한 입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지난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세계유산 해외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도출가능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끝나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등재유산을 선정해서 어떤 요소를 등재 신청서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선정해서, 등재 신청서 작성용역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전에 비해서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조금 더 많이 증가가 됐나요?

제9호안건설명자

가치를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정량이든 정성이든요.

제9호안건설명자

정성적 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세계유산전문가들,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 방문했던 세계유산전문가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가치를 등재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두 명의 해외전문가, 역사도시분과의 해외전문가와 그리고 이코포트라고 해서 군사유산 분야의 해외전문가들이 한 차례씩 방문했는데, 각각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000 위원

그럼 지난번에 잘못하신 거네요?

제9호안건설명자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000 위원

성곽이나 도성이냐 문제는,

제9호안건설명자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나라의 도시성곽은 전체 역사도시의 일부분으로서 성곽을 등재추진을 해왔습니다.

역사도시와 성곽 같이 묶어서 등재추진을 해왔었는데,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다시피 도성 내부가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역사도시와 성곽을 결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곽 자체의 기능성, 역사도시의 바운더리로서의 기능성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곽만으로 등재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 원 장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제9호안건설명자

사실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체계에 있어서 객관적인 책임성이 증가되는 것이고, 이미 지금의 보호관리체계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도 호평을 받고 있는 보호관리체계입니다.

보호관리를 하겠다는 객관적인 보증인 셈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국격이라든가 서울시의,

위 원 장

위상이 달라진다, 세계인들한테요?

제9호안건설명자

문화도시 서울로서의 위상.

000 위원

그럴까요?

사실은 저는 이 프로젝트하고 논외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도성이 탁월하고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유네스코에 물어봐서 ‘도성이 이게 있습니까?’

‘너네는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것 섞어가지고 ‘이거는 있나요?’ 물어보고, 그거는 옛날에나 하는 일이지, 아직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복원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000 위원

그런 거는 국가적인 위상도 중요하고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외의 관광객들도 신뢰 해 가지고 방문,

000 위원

예를 들면 어느 역사도시를 가면, 그곳에 유네스코문화유산이 몇 개 있느냐 이거 세어보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000 위원

많이 그렇게 합니다.

000 위원

많이 그렇게 해요.

000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개수가 많으면 가고 개수가 적으면 안 가고,

000 위원

그런 부분이 세계적인 신뢰,

000 위원

저는 이거는 세계적인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제9호안건설명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역사도심재생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한양도성 내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문화재보호에 대한 정책들을 새로 꾸미고 있는데, 그 핵심 바운더리가 되는 것은 한양도서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시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의 구도심, 역사도심 보호계획의 기본이 됩니다.

000 위원

제가 아까 잠깐 다른 거 하느라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큰데, 2014년에 거의 똑같은 과제를 했는데, 이번에 더 추가하는 것은 그때 안 됐던 것을 보완하는 내용인 거죠, 탁월성이라든가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이미 2012년도, 13년도에 한양도성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더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한 내용들을 더 보완하는 게 먼저 않을까요, 안 됐다면요.

제9호안건설명자

새로운 구성요소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개별구성요소에 대한 역사와 변천과정이라든가 기본연구를,

000 위원

도성의 문화재는 똑같이 있는데, 엮는 거를 잘못해서 한다는 것보다 앞으로 더 역사도시로서 할 것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예산을 더 드리

면 어떻게 하는 생각은 나네요.

000 위원

국가기관이나 공공사업 평가해 보면 엮는 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000 위원

기존에 학술용역에 이게 관련된 비슷한 용역도 있었고, 부서에서도 4월 이후에 연구라든가 전문가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신청서 등록을 위한 절차나 그런 보완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이게 과연 별도의 용역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네요.

단지 등재를 위해서,

제9호안건설명자

등재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고요.

사실은 학예연구관과 학예연구사로 구성된 팀이 있지만,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국제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들한테 계획수립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연구경력이 쌓였지만, 저희가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보완적인 관계로, 파트너십으로서 운영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그래서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9호안건설명자

되리라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기존에 도성만 가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궁궐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조선시대궁궐들은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엮어서 또 이거를 한다는 부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제9호안건설명자

제도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등재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서원 같은 경우에는 하회양동,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옥산서원과 병산사원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또 한국의 서원이라는 새로운 구성요소를 만들어서 등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더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유산이 두 개의 유산 가치로 등재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문화재청 질의도 마친 상황입니다.

000 위원

또 하나는 기존에 도성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체계라는 의미로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미 궁궐에 대한, 도성에 대한 방어체계라는 부분은 사전에 내용에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탕춘대성이랑 북한산성을 같이 묶어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넘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 방어체계, 외부 방어체계, 그리고 남한산성까지 쥘이는데 남한산성은 이미 등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도성으로서 등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한 나라에서 도성으로서 두 개가 같이 또 등재가 추진되는 거예요.

그 부분 별로 쉽지 않을 건데요.

제9호안건설명자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전란 시에 임시수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한양도성은 조선의 유일한 수도로서 거기에 걸맞은 방어체제를 구축했다는 방법론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등재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탕춘대성과 북한산성의 일부도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경우 별도의 방어체계, 각 구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서 같이 묶어서 등재 신청을 할 것인지, 북한산성과 탄춘대성, 한양도서만 신청할 것인지는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 하기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혹시 저희가 추가질문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끼리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9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시고,

위 원 장

많이 하셔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000 위원

세계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 역사도시, 문화도시 이런 부분에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부분을 가지고 국제적인 홍보나 이런 정책, 문화재보호정책을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능한 한 등재가 되면 아주 좋은, 국가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저번에는 너무 보편적 가치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외부의 전문가들도 와서 하고 해서 또 한 번 더 시도해서 이런 기회가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철회를 하면서 이쪽에서 준비했던 게 이코모스에서 행사를 했던 건데, 이코모스 제도 중에 자문실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철회했던 이유가 철회한 거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당초에 이쪽 부서에서 용역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자문실사를 통해서 컨설팅해서 다시 등재한다.’ 당초 계획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용역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이코모스 자문실사를 통해서 등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카 근대유산도 16년도에 철회했다가 다시 자문을 통해서 등재가 된 사례도 있고 그런 몇 가지 사례, 한국의 서원도 철회했다가 다시 등재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4월 이후로 계속 전문가자문회의를 돌리면서 서류를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4억이나 들여서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자문실사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건가요?

000 위원

예,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자문실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게 훨씬, 철회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잠정목록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일정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자문실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000 위원

그러면 자문실사를 통해서,

000 위원

충분히 컨설팅을,

000 위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않을까요?

000 위원

다시 작성은 해야 되는 건데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철회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자문을 받으면서, OUV라고 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에 대한 심사단의 자문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용역을 할 만한 과제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예산 7억, 8억 하다 4,000만 원 하니까 너무 적어보여서,

위 원 장

4억인데요.

000 위원

중요한 일이고 해서 예산을,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기에는 국제적인 일이니까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시의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4억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하시는 것은, 이거를 아예 부적정하는 것보다는요.

000 위원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몰랐는데, 이거를 모르고 오케이하려고 그랬었는데, 자문실사를 받아보고 어떻게 쓰라는 게 프레임이 나오면 그때 보고서를 써도 될 텐데, 자문실사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는 보고서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000 위원

기간상 문제는 없나요?

000 위원

그거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이거는 철회이기 때문이에요.

000 위원

시장님의 임기 때문에 그러나요?

000 위원

어차피 시장님 임기 때 못 합니다.

2022년인가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6~7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는 거라서요.

000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받아보고 하는 게 낫겠네요.

000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절차상 그거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학술용역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000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제9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대강 공감이 된 것 같아서요.
이 안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0명 거수.)

이 안건은 부적절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인가요.

5시20분 지나가있습니다.

빨리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13호 안건

(가칭)서울국제교류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위 원 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앉으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3호안건설명자

국제교류과에 국제정책팀장 강영규입니다.

이번에 국제교류담당관에서 신청한 서울시 국제교류재단 설립과 타당성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국제교류현황입니다.

서울시는 23개 자매도시 그리고 37개 우호도시 등 총 60개의 자매우호 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3분의 1이 최근 5년간 늘어난 수치이고요.

시장님은 1년에 평균 약 4회 정도 해외 순방하고 계시고, 서울시가 가입한 국제기구 18개 기구가 있고요.

그리고 네 개의 국제기구 씨티넷(CITYNET), 이클레이(ICLEI), 위고

(WeGO), 지세프(GSEF) 네 개 기구는 서울시장이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우수정책은 28개국에 39개 도시, 51개 정책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가외교도 중요하지만 도시외교도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환경, 교통 주거 등 도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도시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교류협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도시 시장이나 국장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통령, 총리, 그리고 국회의원, 주지사 이런 분들이 서울시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외교 수요 증가에 따라서 서울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외교를 담당할 부시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건의한 상태이고요.

도시외교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주요 기능은 서울시 자매우호도시 교류사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해외도시에서 서울의 날도 행사하고 서울에서는 해외도시의 날을 행사하고 있고요.

매년 해외 자매우호도시들이 참가하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단 해외순방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국제회의 내년도에 두 가지 국제회의를 할 예정인데요.

동북아 시장포럼과 서울어반솔루션 베이어스포럼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약간 서울시가 부족한 부분이 ODA사업인데요.

국제개발협력사업인데, 이런 사업과 그리고 민간과 같이 국제개발협력하는 사업들, 해외동포지원사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우수정책마케팅 및 해외도시하고 공유하고 수출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미 정책수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을 이관해서 국제교류재단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제13호 안건심의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여기에서도 제가 질문 드리겠는데, 타당성검토라는 것은 너무 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약한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요.

이미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가정 하에 설립운영 밑에 차라리 같이 해놨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제13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설립운영기본계획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연구과제가 필요하지, 타당성인터뷰하고 이런 것보다요.

그런 방향이 맞을 것 같아요.

제13호안건설명자

예, 집중해서 향후 어떻게 잘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에,

위 원 장

행안부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13호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지금은 국제교류에 관여하시는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시죠? 몇 분이 나 계시나요?

제13호안건설명자

국제과에 25명이 있고 해외도시협력과가 있는데 거기에 15명 있습니다.
39명이 있습니다.

위 원 장

그 40명과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40명을 서포트하기 위해
서 만드신다는 거죠?

제13호안건설명자

예.

기존에 해외수출사업단이라고 아홉 명이 SH공사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 조직을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조직으로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
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혹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쭙보도
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어찌 됐든 분권도 강화되고 해서 국제교류 수요 증대는 필연적인데요.
그래서 조직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조직을 확대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사실상 산하기
관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돼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
고요.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의 인건비로만 용역이 구성되어 있어서,
‘자문을 받는다는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들 있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재단이 하나 생기는 거에 대해서 행안부는 굉장히 싫어할 텐데요.

000 위원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 원 장

제가 궁금한 게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000 위원

이 용역 자체가 재단설립할 때 행안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게 타당성검토 이 자료가 들어가서,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에서 오케이가 안 되면 재단설립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 부분이 용역을 수행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기존에 행안부에서는 이 자료 외에도 정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승인이 되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승인이 안 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신청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000 위원

예, 이 부분 타당성용역 자체는 재단을 만들려면 무조건 어느 기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필수적 서류입니다.

위 원 장

국제교류담당관계서 직접 하시면 안 되는 일인가요?

000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회가 필요하냐 이거죠.

위 원 장

타당성 만드는 건데 굳이 용역으로,

000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면, 재단 만들면 굉장히 폭넓은 교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보다요.

담당부서는 아마 경제 쪽에나 이쪽에 치중할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문화 쪽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위 원 장

정부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요.

000 위원

하여간 넓은 교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13호 안건결론

위 원 장

판단하기로 하죠.

13번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아홉 분.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열네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14호 안건

합리적인 자치구 재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 학술용역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앞으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14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주무관 김예진이라고 합니다.

위 원 장

빠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4호 안건설명

제14호안건설명자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 과 심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의 명칭은 합리적인 자치구 자원배분을 위한 조정교부금 기준설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공통적인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자치구와 재정격차를 완화하도록 88년도 이후로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저희 운영조례에 제8조2항에 의해서 이런 기준재정수요의 산정방식을 3년마다 새롭게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3년마다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3년마다 자치구가 새롭게 발생한 행정수요, 최근 들어서 사회복지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와 15년도에도 조정교부금 기준설정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언뜻 유사용역처럼 보일 수 있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의무사항이고, 그리고 3년마다 자치구의 새로운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입니다.

연구과제는 이런 기준재정수요액을 새롭게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 이외에도,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까지 만족시키고 난 이후에 남게 되는 잔여액을 가산교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또 자치구가 이런 교부금을 배부 받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로서 어떠한 것을 줄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7,000만 원이고 책임연구원, 연구원보조원이 약 7개월 동안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비용이며,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이상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호 안건심의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000 위원

질문할 게 없는데,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법에요.

그래서 하는 학술용역인데, 내용에 대해서야 어드바이스나 토론이 필요하지만, 하는 거 여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제14호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러네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000 위원

서울시가 교부세 이런 거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압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 중에서 해서 서울시가 행자부 푸시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나요?

제14호안건설명자

교부금과 교부세는 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시에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재정을 보전해 준다는 측면에서 내용을 동일합니다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부세가 직접 연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기준재정수요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행자부가 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운영해온 제도이기 때문에, 또 더 보다 다양한 측정 항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제한경쟁인데 제가 볼 때 행자부는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됐는데 여기에도 그런 것들을, 서울연구원에도 전문가가 없잖아요, 사실상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십사, 내용과 상관없이요.

제14호안건설명자

용역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저희가 계속 경쟁입찰해 왔는데 경쟁입찰할 때 서울연구원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시의 연구행정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정이 자주 되었는데,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고 제안서 발표 등

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치구에 새로운 측면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가산교부방식 변경이라든가, 계속해서 기존의 연구를 수행해서 연구방향을 이미 잡아놓은 기관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측면에서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의 입찰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7개월씩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제14호안건설명자

일단은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 설정한 안에 대해서 용역초기와 중기 이후에 두 차례 이상 자치구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의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것이고 반영,

위 원 장

잠깐만요.

자치구가 이게 토론해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자기 의견만 맞다고 얘기할 텐데요.

제14호안건설명자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부방식이라든가 입장이 상당히 상극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밖에서, 혹시 저희가 여쭙볼 수 있으니까 기다려주십시오.

(발표자 퇴장.)

주심교수님.

000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서, 내용상에 제안은 있을지언정 특별하게 의견은 없습니다.

위 원 장

저는 7,000만 원이나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게 통상,

위 원

...깎으시죠.(웃음)

위 원 장

이거 보통 행정학과로 가면 3,000만 원 정도인데 7,000만 원이나 되는지, 7개월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형식적인 요건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예산담당관D

아무래도 자치구 이렇게 지수를 하나 바꿈에 따라서, 자치구 간의 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자치구가 어떤 의견이 나올 때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성격상 설득하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산담당관D

예, 설득은 쉽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 교부세, 교부금 배분기준이나 법이 있잖아요.
서울시는 그 법하고 따로 가나요?

예산담당관D

지방교부세는 중앙에서 지방에 주는 거고, 조정교부금은 광역에서 기초로 주는 겁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따로 법률,

예산담당관D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서울시에서 구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지원 규모라든지 규칙에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가 재량으로 할 수 있군요.

예산담당관D

예.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하고요.

제14호 안건결론

위원장

대강 공감들은 하시는 것 같아서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사

아홉 분 걱정입니다.

위원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남은 게 네 번째 안건인가요.
마지막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호 안건

(재)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위원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앉으시죠.

제4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에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입니다.

위원장

앉으셔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4호 안건설명

제4호안건설명자

저희 안건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설립 타당성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간은 2018년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5,995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구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건이고요.

연구의 필요성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현재 23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 여성능력개발원입니다.

그런데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의회나 외부 인력개발기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재단으로 설립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여성능력개발원 설립 타당성과 사업적정성을 검토해서, 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계획수립과 최적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재단법인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설립에 따른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및 필요시에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협의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4호 안건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게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인데요.

여성가족재단에서 07년부터 여성능력개발이라는 이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제4호안건설명자

예, 민간위탁기관으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재단설립 없이 그냥 위탁,

제4호안건설명자

여성능력개발원이 민간위탁기관인데, 그것을 위탁 운영 하는 곳이 여성가족재단이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은 법인격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럴 때 많은 제약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단독으로 재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올해 1차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거의 59.73으로 낙제점이란 말이에요.

제4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직접 설립해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실 거 아니에요?

제4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위탁 운영하는 데서는 어떤 문제이고, 자체적으로 설립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4호안건설명자

위탁운영을 하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성일자리어무도 일부 있지만, 그 이외에 보육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요.

나머지 23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성과평가결과도 59.73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 이것을 여성가족재단에 조직으로

편을 입하거나, 아니면 독립을 시켜서 재단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000 위원

그것들의 성과가 안 좋은 게 컨트롤센터,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4호안건설명자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재단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여능원을 관리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성일자리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단 관계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000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굳이 뭐하러 타당성 검토를 하죠?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제4호안건설명자

저는 그렇습시다마는, 이게 공론화되고 조직으로 되려면 그래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그거는 팀장님이 못 만드시나요?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데, 굳이 외부학자가 이거할 필요가 있나요?

제4호안건설명자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일반 공무원인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재단 설립까지 타당성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D

14년도 3월 달에 민간위탁종합개선계획을 시장 방침 받으면서 여성능력개발원 위탁사무로 적절하지 않고, 여성가족재단에 본사무로 넣어서 하라고 조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본사무로 전환하지 이유가 있나요?

제4호안건설명자

그때는 여능원이 조직개편이 있었어요.

기존의 여능원과 또 동부여성발전센터라고 하는 센터하고 양분했거든요.

그러면서 주된 골자가 그거였고, 그때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게 재단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재단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 성과평가결과도 안 좋게 나오고, 그래서 다시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한번 착수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단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000 위원

재단에서 이 위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능원 운영을요?

제4호안건설명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위탁을 했다는 건 뭘 말이죠, 지금 답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제4호안건설명자

여능원이 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민간위탁 형태로 계속 있었는데 그게 재단에서 위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번 정도 위탁을 했었는데, 종합성과평가 결과도 최근에 한 것이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체제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기관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TF를 운영했는데요, 상반기예요.

거기에서도 그런 결론들이 나왔습니다.

000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있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주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서울시 소속인지 아닌지도 헷갈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냐.

제4호안건설명자

그래서 여성인력개발기관들에 계신 기관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분들도 재단에 있는 것보다는 독립기관을 하는 것이 기관을 지원하고 총괄조정하는 데는 전문적이고 훨씬 낫다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에 편입되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셨어요.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밖에서 혹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겠다는 게 아무리 봐도 정당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을 만들어서 기존에 하던 컨트롤타워 플러스 독특한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 조직의 설립이 정당화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옥상옥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위 원 장

과장님, 이 안건이 처음이 아니죠?

언젠가 봤던 안건 같은데요.

처음이에요?

000 위원

처음인데요.

예산담당관D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 TF 구성원들 보면, 여성능력개발원하고 그다음에 발전센터 센터장들이 주로 모여서 이루어지고요.

000 위원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오겠네요.

예산담당관D

거기에 여성가족실장님이라든지 관련 과장님이 참석해서 운영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은 여성가족재단하고 능력개발원하고 두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걸만 내세운 거지, 실제로는 여성재단에서 수탁을 받은 거거든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그거를 여성재단의 하부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감독기관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14년도에 했을 때는 여성능력개발원을 아예 재단에 하나의 팀조직으로 넣어가지고, 조직 안에 넣어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고유사무로 넣으라고 얘기했었는데요.

000 위원

저도 그런 방안이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어정쩡해서요.

예산담당관D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이 연구기능하고 능력개발원 조직에 넣어서 교육기능하고 같이 믹싱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예산담당관D

그런 부분들이 단지 ‘가자. 재단으로 가자.’ 이런 것만 연구하는 부분,

000 위원

‘요구가 있으니 하자.’ 이런 건가요?

제4호 안건결론

위원장

원하는 분들이 당사자들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자기네 기관 만들자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심의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없습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부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개인별 심의의결서하고 총괄심의의결서에 꼭
서명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년 9월 2차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7. 9. 1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000 위원 : 김정호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재민 ☎6740 담당 : 설정환 ☎6747

'17년도 9월 2차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회의 개요〉

- ◆ 일 시 : 2017. 9. 19(화) 14:00 ~ 18:00
- ◆ 장 소 : 공용회의실(신청사 8층)
- ◆ 참 석 : 11명 외부위원(7), 내부위원(4)
- ◆ 심의안건 : 18건
- ◆ 심의결과 : 적정 13건, 부적정 5건

2017년도 9월 2차 정기학술용역심의회

개 회 2017년 9월 19일(화)14시

장 소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간 사

안녕하십니까.

000 위원 시정연구팀장 박재민입니다.

오늘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신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위 원 장

반갑습니다.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서울시의회 000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00연구센터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그리고 내부위원인데요.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일동 박수)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일동 박수)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인 사)

(일동 박수)

간 사

정족수 확인인데요, 오늘 시의회 000 의원님하고 00대학교 000 교수님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체 열세 분의 위원 중에, 과반수인 아홉 분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회 심의 안건은, 내년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신규 16건과 금년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재심의 안건 2건, 총 18건입니다.

금회 정기 학술용역 심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심위원님하고 내부위원의 안건별 사전검토서를 앞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회 개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심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안녕하십니까.

저 000입니다.

오늘 처음 뵈는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들이 들어오셔서 발표를 하신 후에 퇴장을 하게 된, 발표해

서 들어오시면 저희들끼리 그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주심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했었는데, 주심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미리 공부하고 오셔서, 가부 간의 의견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발표자들이 상처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만 하시고, 퇴장한 후에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의논을 한 후에, 가부 간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 의결이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당신 안건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꼭 좀 개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명심하실 거는, 속기록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기록은 공개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죠.

첫 번째 안건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자 입장)

제1호 안건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제1호 안건 설명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발표자께서는 본인 소개와 가급적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안건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짧게 해주십시오.

제1호 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입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빛공해방지법이 2012년 2월 1일 자로 제정이 되었고, 그 이듬해 2월 2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빛공해방지법이라 함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1, 2, 3, 4종에 대한 빛 방사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조명환경관리구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015년7월30일 자로 지정 고시가 되었고, 8월10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빛정책과가 8월 3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빛공해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빛공해를 관리해야 될 그런 부서라고 판단해서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였고, 지금 8월 10일 자로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2년이 흘렀습니다.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확보해 가지고 1, 2년 준비를 했다가 2020년8월10일 자로 이 모든 5개종에 대해서 법적 적용이 된다면, 상당한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00 위원

예, 저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 원 장

특별히 없습니까?

000 위원

예.

위 원 장

000 위원께서도 특별히 없으십니까?

000 위원

내용 보면요,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뭐 그런데 지금 홍보 방안, 단속행정의 효율성 증대방안 이런 것도 용역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들이세요?

제1호 안건설명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개 조명에 대해서는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런 공간 조명, 공공조명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조명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어느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텔을 기준으로 잡으면, 내 모텔에 아무리 화려하게 조명을 설치하더라도 허가든 준공이든, 다른 위생과 이런 데에 허가를 낼 때도 전혀 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그런 조명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게 법 제도권 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단순히 저희들이 알리는 부분보다도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

그럼 2030 도시빛기본계획은 언제 끝납니까?

제1호 안건설명자

내년 6월에 끝납니다.

000 위원

그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제1호 안건설명자

도시빛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 야간경관계획 그 이외에 계획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빛기본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크게 5개 정책이 있습니다, 도시빛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름다운 서울 야간경관을 만들자, 관광 활성화 차원이죠.

그런 야간경관 정책이 있고요.

또 지금 이게 관련이 있는 빛공해방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 가지고, 요즘 도시 자체를 예술로 승화시키자는 미디어 파사드 정책이 있고, 광고물 정책이 있고, 또 전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정책을 제대로 안전하게 방법론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미디어 스마트 조명시스템 도입이 그 5개의 정책이 있습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근간을 만드는 게 도시빛기본계획이고요.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이 안 되면 실효성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31조에 보면, 용도지역이 수십 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요.

조명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이 지정된 거나 마찬가지로 획기적인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용역을 1차하고 2차로 나누신 이유가 뭔가요?

제1호 안건설명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12월이 회계연도 폐쇄시간이고 해 가지고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저희들이 12월쯤 보고 있는데, 12월에 또 의회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너무 싫어하시고 해 가지고, 금액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제대로 시행하자 해 가지고, 저희들도 도시 빛기본계획도 6월에 착수를 하니까,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적당하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12개월 잡으면, 7개월, 8개월 잡으면 일찍 출발하면 가능한데 이걸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12개월을 준다면 2년에 걸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1호 안전설명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설명자 퇴장)

제1호 안전 심의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제가 내용들을 조금 봤을 때 이게 적정성에 대한, 그러니까 실효성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 실효성하고 그다음에 행정 제고,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이 제고, 그러니까 행정을 실시했을 때 부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적합하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 대상자들에게 이것에 대한 홍보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하고, 이 실효성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다른 영역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겠다고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1차, 2차 과업지시를 나누어 뒀는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내용 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서가 나갈 때 1차 작업은 어디까지 하고, 뭐 2차 작업은 이 내용으로 한나라든가 하는 식으로 분명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의 70%가 인건비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이거를 실행을 하려면 직접 가 가지고 현장에서 쪽 돌아다니면서 한나라든가 이런 조사비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게 회의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데, 회의비는 0으로 돼 있고요, 조사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게 다 나간다고 하더라도 예산 부분들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논의 필요라고 하는 걸로 적어 왔습니다.

000 위원

질문을,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인건비의 %를 지침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000 위원

글쎄요, 저도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용역과제는 전혀 없고요, R&D만.

000 위원

그러니까 다른 형태에서도 용역 발주할 때 인건비에 대해서,

000 위원

예, 항상 %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00 위원

50%까지 R&D는 되는데, 원래 과제용역은,

위 원 장

어떻게 되죠?

인건비 비중을 어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무관

딱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000 위원

아, 규정은 없습니까?

000 위원

재단 같은 경우만 50%를 잡아두고 이런 데는 없어요.

과제용역 없어서 다른 과제들 보면 70%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코멘트 넣었는데, 그래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2, 3의 자원순환이나 물순환이나 이 부분들에서는,
예산이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조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로 적당하게 다 구분이 되어 있
는 걸로 보였는데, 제가 담당한 1번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들에서는 인
건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000 위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000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
에 걸맞은 예산이 쓰여져 있지 않으니깐,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000 위원

맞습니다.

위 원 장

그런 쪽은 000 위원께서 짚어주시면 어떻겠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 무슨 규정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제약조건을 써 주
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000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은 사실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냐 하면 조사비도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써요.
왜냐하면 단순 조사원을 쓰는 것보다 질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
을 조사원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000 위원

예.

000 위원

그래서 인건비 과다의 문제이기보다 이것이 연구에 있어서, 연구 전문
인력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만큼 중요한 것이냐라는 개념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우선은 이 내용 봐서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말씀 들으면서, 이게 2년 연속 진행되는 프로젝트 인 걸로,

000 위원

12개월.

000 위원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000 위원

아니죠, 12개월을 6개월, 6개월로 나뉘 가지고 한다는 거죠.

위 원 장

꼭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 정도로 하겠다고,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 셧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000 위원

용역비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을 하긴 했지만 보통 10개 월, 그리고 12개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예요, 원칙적으로 한 해에 다 사업을 못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처음에 계약할 당시부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이라 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나다 보면 좀 많아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사고이월 이런 형식으로 많이 넘겼었는데, 당연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가급적 12개월 이 넘는 것들, 물론 한 10개월 정도 되도 1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발주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하여튼 한 해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용역 심의 자체는 전 체 기간으로 하되, 예산 자체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이 정도 기간 이 드는 건데 언제, 얼마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얼마 정도 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그랬지만, 계속 이렇게 장기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일단 다음 연도에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금액을 갖고 끊고, 그 다음 거는 그다음에 넘어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거는 어

는 정도 핸들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실 인건비입니다.

연구원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은 한 70~80% 정도까지,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80%가 조금 못 미치게 이 정도 인건비 비중이 들어가고요.

약간 실험이나 조사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용역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 관련된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조사비라고 했지만, 사실 조사원 인건비로 들어가면 사실 그것도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냥 조사비라고 처리하면 인건비가 아닌 다른 재료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약간 낮아지는 이런 경우 있었는데, 학술용역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한 80% 가까이 육박하는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지금 보통 보면 학술용역을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올이 되는 분들이 갖고 올 때는 좀 더 구체화되니까 큰 문제는 사실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차원에서, 액수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게 타당하냐 안 하느냐는 사실은 이분들이 해야 될 문제겠죠. 그렇죠?

000 위원

어차피 용역을 줄 때 계약자하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위 원 장

예, 줄 때 고민할 문제니까 너무 구체화 안 됐냐고 다그치시면 저 양반들이 좀 곤란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한 5명 정도 팀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용역의 난이도나 이거에 따라서 인원이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조명 이런 거 할 때 연구할 때 5명이나 필요한 건지, 혹시 그런 거는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

는 건지?

위 원 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글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정영역이 있으면 그 지정영역에다가 예를 들면 조명의 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 규정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지역의 용도에 맞춰 가지고, 그런 조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는 현장 가 가지고 좀 더 조사를 해보겠다 싶으면, 여기에 연구보조원 두 명 정도가 들어가 있고 보조원이 또 한 명 더, 3명 정도는 그렇게 과도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필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과다 선정이라고는, 그러니까 명수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저의 경우에 보면 수의계약의 %가 70%를 우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헛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조사하는 비용하고 인건비는 순수하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조사비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조사가 필요한 용역인데, 조사라든가 현장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인건비가 일단 72%인가 78%가 잡혀있고 나머지는 회의 비 약간 이런 게 있으면, 얼핏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쪽 제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관련 분야를 했었는데, 자료 조사 말고 뭘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 과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비하고 순수하게 인건비는 조사원이 아니더라도 연구원들의 급여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 원 장

주심교수님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의를 하도록 하죠.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000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혹시 이 과업 범위에 홍보 아까,

000 위원

예.

000 위원

홍보 부분들 그거는 빼고 범위를 조정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 이것까지 학술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000 위원

이거는 내용 조정 부분들을,

위 원 장

그러면 그렇게, 이게 만일에 심의가 되면 그렇게 쓰는 걸로, 주심위원
님이 그걸 좀 써 주십시오.

000 위원

예.

위 원 장

여기 보면 보완의견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써 주시고 그렇게 되면 예산
도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네요.

000 위원

그렇죠.

제1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열두 분 다.

위 원 장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립니다.

제2호 안건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용역사업

제2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슈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2호 안건설명자A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심의 요청 자료는,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인데요.
내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됩니다.
국가의 기본계획이 내년 3, 4월 달에 내려오면, 그 1년 이내에 각 시도
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2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12개월로 잡으셨으면, 나누는 거는 좀 구체화시킬 생각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내년 예산하고 내후년 예산을 나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2호 안건설명자A

우선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다 편성시켜서 계약을 해서 나머지는 사고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별로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000 위원

잠깐만요.

위 원 장

아,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예.

연구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연구보조원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
구보조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구원을 줄이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본 건 학술서를 보면, 연구원을 4명 잡고 연구보조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을 한 두 명 두고 연구보조
원 두 명 정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74페이지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지금 이 연구는, 저희가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000 위원

아니 서울연구원에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묻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이
연구를 할 때 보통 책임연구원 한 명 들어가면 필수고 그다음에 연구
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연구원만 넣었다는 거죠.

제2호 안건설명자A

우선은 여기는 연구보조원,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밑에, 여기는 연구원, 연구보조원이 있지만, 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보조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책임연구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이 4명 꼭 있어야 되느냐, 연구원은 2명이 해도 되고 3명이 하든, 연구보조원도 한두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2호 안건설명자A

실질적으로 이 연구원이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상주연구원도 있고 비상주연구원도 사실 있습니다.

000 위원

그렇게 되면 단가 산출했을 때 노무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순수하게 연구원으로 다 4명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2호 안건설명자A

예. 그런데 사실 하여간 연구하다 보면 엇비슷한 그런,

위 원 장

이해는 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혹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과장님.

000 위원

여기 용역비 내역에 보면 위탁연구비가 잡혀 있는데요.

74쪽에 맨 밑에 보시면, 이게 뭐예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연구의 일부는 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000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000 위원

뭐를 위탁을 하시는 건지?

000 위원

위탁연구비가 26.7%나 되는데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이게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저희들의 연구과제 내용을 보면 연구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연구원에서 다시 일부 일정 부분을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랄지, 아니면 수거체계 구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외적인 연구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000 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그 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단순히 조사나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주는데,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을 위탁을 준다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이 연구용역이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발생이랄지 조사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위탁 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또 하나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1,2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요.

이분들이 꼭 이곳을 직접 방문하셔서 가지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까요?

제2호 안건설명자A

물론 문헌조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현장도 실질적으로 배출실태 같은 것도 보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최초로 생긴 거거든요, 현재 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문헌상에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한 분이 가서 가지고 본다는 게,

제2호 안전설명자A

두 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밖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혹시 저희들이 의논하다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2호 안전 심의

위 원 장

주심교수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내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 부분들에서 여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 있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지금 위탁연구를 뭘 정확하게 준다고 하는 건지는, 내용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 원 장

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위해서 위탁용역한다고 쓰여 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라고 용역 주는 거 아닌가요?

000 위원

예, 계획 내용에 그게 발생 예측은 서울연구원에서 주 업무를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위탁의 대상이 아니겠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자원 폐기물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들,

위 원 장

기술적인 문제는 위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000 위원

예,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원 장

예측 모형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000 위원

예측 모형 부분들은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주축인데.

000 위원

그래서 이게 일부러 수의계약을 한 건데.

000 위원

예.

위 원 장

그렇죠.

그것도 아무튼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네요.

000 위원

어떤 걸 위탁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예, 위탁연구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규정을 해야 된다.

위 원 장

왜 위탁해야 되는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000 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위탁용역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라는 조건으로 부여가 되는 건가요?

위 원 장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000 위원

예산까지도 적정 비중으로 해 달라,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000 위원

조건을 부여했다가 어차피 위탁용역비니까 위탁용역은 안 되는 거잖습

니까, 만약에 이게 폐기물 발생량 예측하는 거라고 그러면 아예 그거는 주된 길로는 아예 용역 자체가 안 되니까, 저거는 그냥 조건을 별도 부여해서 줬을 때, 거기서 폐기물 예측으로 용역 해버리면 차후에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000 위원

그 내용은 명확하게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

000 위원

기술적인 부분에 한해서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아까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걸로 조건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외여비를 꼭 이게 해외에 나가서 1,200만원을 들여서,

000 위원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국외여비를 이렇게 한다는 게.

000 위원

해외 사례조사가 내용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데 사실 뭐,

000 위원

다 볼 수 있잖아요, 웬만한 자료는.

000 위원

웬만한 자료는 다 나오죠.

000 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용역을 할 때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짜임새 있게 안 하고 그냥 법률에 근거해서 꼭 해야 되니까, 그냥 집어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한 1억 정도는 삭감을 해도.

000 위원

이것도 할 필요성이 있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한다면 어떤 부분의 인터뷰가 필요한지 이런 게 구체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여비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근거 제시를 하

고 저기를 하도록.

000 위원

그거는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000 위원

저도 여기서 의결할 때 단순히 조건하고 그대로 금액이 가 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용역비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디테일하게 컨트롤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000 위원께서 못하는 부분이 용역비로 쥐 버리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로 해서 하나하나 나가는 걸로 배정할 때는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용역비로 나가기 때문에 체크를 못하거든요, 000 위원께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예 예산 부분을,

000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하죠.

위 원 장

그거를 삭감을 시키는 걸로 하는 방향으로.

000 위원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런 소명도 못하고 금액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갖다가 소명도 못하고 이게 용역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없으면, 용역 수행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고, 일부는 위탁용역비도 삭감하고 가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절반으로 삭감하는 걸로?

위 원 장

위탁용역비가 8,000만원인가요?

000 위원

예, 지금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원 장

8,000에다가 해외 연수하는 거는 내버려 두나요?

000 위원

지금 1,20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깎고 4,000 깎고 5,000 깎을까요?

위 원 장

가게 되면 혼자 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꼭 두 분이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꼭 가야 된다면.

000 위원

책임연구원 1인으로 해서.

000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세 사람이 다 가시려면, 이 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그거를 한번, 국외여비가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위 원 장

한번 여쭙볼까요?
오시라고 그래 보죠.

000 위원

인터뷰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지.

000 위원

꼭 필요한지.

(설명자 입장)

위 원 장

팀장님,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시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합니까?
아니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2호 안건설명자A

저희들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 원 장

그러니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00 위원

생각 말고 왜 필요한지, 근거.

위 원 장

근거가 좀 있을까요?

000 위원

어떤 자료를 수집하려고 가시는 건가요?

자료 수집인가요, 아니면 ‘실제 현장의 그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원순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 인터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제2호 안건설명자A

우선은 자원순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자원순환시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품연료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진 외국에서 최신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10년, 앞으로 장래 10년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시설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서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에 대해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궁금했던 게 인터뷰 같은 것을 하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무엇을 인터뷰하겠다고 결정되어 있습니까?

제2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연구 내용에 보시면, 이게 자원순환 기본법에서 보면 순환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시민들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000 위원

시민이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000 위원

시민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거는 가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회의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이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가서 볼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은 가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아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내에서 인터뷰랄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외국에 가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설 부분을 보고, 정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서울시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000 위원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어디로 가세요? 구체적으로.

제2호 안건설명자A

아직 뭐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시다.

다만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슈피텔리 소각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이 지금 노후됐습시다, 사실은.

우리 소각시설이 한 20년 돼서 그런 시설들이, 오스트리아 시설들이 새로 리모델링해서 거의 30년, 40년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소각시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비닐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재활용 기술 이런 것들도, 사실상 장래를 보면 서울시가 도입할 필요성은 있는 걸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 위원

잠깐만요.

위탁연구비를 8,000만원 잡아놨잖아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런데 전체 연구비가 줄었는데, 그중에 3억 중에서 8,000만원을 별도로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을 준다는 얘기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할 때에 전문 분야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내 부적으로.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 듣고 가서 봤는데, 폐기물에 대한 장래에 대한 발생량 예측은, 어차피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모델링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000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 어느 업체가 선정이 돼서 들어오면, 계약 이후에 그 계약금에 대해서 다시 8,000만원 떼어 가지고 하도급을 줄 수 있냐 이거죠.

그게 과연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제2호 안건설명자A

통상적으로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인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

000 위원

처음부터 예를 들면 부분이 달라서 8,000만원에 대한 연구비를 A라는 사람한테 하고, 나머지 2억2,000은 우리가 전체적인 범위에 해당되는 분한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계약을 A한테 하고 나중에 계약한 이후에 B한테 하도급 준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제2호 안건설명자A

지금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저희 플랜도 마찬가지로
겠지만, 전체적인 용역을 서울연구원에 박사진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외적인, 내부에서 외적인 그
런 용역을 통해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하는 그
런 시스템으로.

000 위원

컨소시엄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컨소시엄 아닙니다.

000 위원

컨소시엄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연구원에서 다시 위
탁하는,

제2호 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그 인력을 다 갖추고 있기는 어렵죠.

그래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 위촉연구원을 초빙해 갖고 그렇게 해서 지
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위탁을 준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여기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다.' 그
러면 모르겠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초빙연구원이나 위촉연구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
든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아마 연구원들을 사실 고용하게 되면, 비용적인 그런 측면들도 사실 있
습니다.

위 원 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구성원에 그렇게 들어오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다시 위탁이라
든지 형식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000 위원

예, 위탁이라고 하는 형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연구비 문제도 아까 뭐 이월을 당연시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제쯤 발주할 예정이세요, 이거?

제2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일단 환경부에서 국가 기본계획이 한 3, 4월 정도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발주 준비해서, 뭐 한 6월 달에나 이렇게 발주할까 합니다.

000 위원

하반기에나 발주가 가능하겠네요.

제2호 안건설명자A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으로 봤을 때 절반도 수행을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00 위원

예산 부분은, 일단 먼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하고 위탁연구비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지 부분을.

위 원 장

위탁은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저 양반들이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해외에 나가서 시찰하는 문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000 위원

저는 그러니까 해외여비도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급하진 않다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에 의한 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마련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위탁용역과 이 해외여비를 제외하고 한 2억 정도만 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그렇죠.

계획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설비고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상에서 들어갈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국내외 사례도 여기서 보여지듯이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버넌스 뭐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찰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판단도 저는 드는데요.

000 위원

어차피 환경부에서 기본법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과정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에 제대로 이걸 제정해 놓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1차년도로 1억 정도만 배정을 하고, 어차피 이거 지금 아까 얘기한 부분은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 못할 것 같고요.

발주 준비하고 이러면 하반기 발주 들어가면 사실 9월, 10월에나 착수가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 금액은 2억으로 가되, 내년에 1억을 배정하고 그중에서 특히 배제

할 게 해외여비하고 위탁용역비는 감하는 걸로 해서요.

000 위원

삭제.

위 원 장

삭제한다.

000 위원

착수계약으로 가더라도 1억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만, 9월 달이면 6개월, 어차피 이월될 것 같은데요.

000 위원

현실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거고, 아까 얘기로는 4월, 5월에 정부 계획이 나오면 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면, 한 5, 6개월 정도는 빨리 진행이 되면 가능하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공개입찰이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요.

000 위원

착수계획을 하더라도 과연 위탁연구비를 포함해서 착수계획을 할 건지, 아니면 삭감을 하고 착수계획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위 원 장

그건 빼고, 당연히 빼고 하는 걸로 하죠.

위 원

해외여비하고 위탁용역비는 빼는 걸로요.

위 원 장

예, 그렇게 명시를 하시죠.

000 위원

그런데 위탁용역비를 다 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없을 수 있으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 와야 되거든요.

위 원 장

그런데 그건 위탁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연구원으로 애시당초,

000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용역비는 빼되 금액을 약간,

위 원 장

그렇죠.

000 위원

위탁용역비를 다 빼는 게 아니라,

위 원 장

그렇죠. 거기에 공동연구원, 예.

000 위원

그중에 일부는 연구비로,

위 원 장

인건비 같은 걸로, 예.

위 원

...넣던 이렇게 조금 늦춰어 잡는 걸로,

위 원 장

예, 여유를 줘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000 위원께서 써 주시겠습니까?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제2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예,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간 사

열 분.

위 원 장

수정한 안건에 대해서 걱정으로 결정됐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립니다.

제3호 안건

서울특별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제3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앉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이 많아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3호 안건설명자A

물순환정책과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사업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하천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해 놓고, 이 목표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위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한강수계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20년까지 1단계 시행 중이고요.

21년 30년까지 2단계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때는 2012년도에 기본계획을, 그리고 2013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얻었고요.

그리고 2단계는 내년에, 지금 이 심의 사업인 내년에 기본계획을, 그리고 19년도, 20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5,000인데요, 전액 국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한경쟁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셨는데, 어떤 제한을 하시는 겁니까?

제3호 안건설명자A

총량제는 단위유역별로 발생하는 오염물질량을 결정한다든지, 또 할당 부하량을 설정한다든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돼서, 제한경쟁은

제한경쟁인데 한강수계를 포함해서 4대강 수계 전체, 이 총량제에 참여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업체는 다 됩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잠깐 밖에 계시면, 저희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다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제1호 안건 심의

주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건 기본계획에 따라서 계획 수립하는 거고, 2단계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별 특이사항들은 없는데, 일단 제가 보고서 내용 부분들에, 일단 이게 2단계 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단계 기본계획에서 조금 더 구체성들을 가지려면, 그래도 1단계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좀 들어가서, 그 평가에 의거해서 2단계 부분들은 기본계획상으로 정부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조금 더 덧붙여서 실제로 실행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보고서가 조금 더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도약을 하려면, 1단계 평가가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완사항만, 그것만 했습니다.

위 원 장

내용에 대한 보완이네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예산 그런 문제는 별 문제 없습니까?

000 위원

유인물비가 조금 과다 산정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좀 봤었는데, 뭐였

더라, 하여튼 유인물비가 엄청 높던데요.

000 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니까 16개월이지만 굳이 이거 장기계획으로 갈 것 없
잖아요.

이월이 예정되더라도 한 번에 잡아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
사업비면?

000 위원

국비사업비면 지금 이월을, 우리가 지금 불용을 못 시키거든요.
그럼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죠.

000 위원

이월시켜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국비이기 때문에.
이건 끊지 말고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저 이 금액 보고 깜짝 놀라 가지고요.
보고서를 70부를 하는데 1,100만원이 든다고, 무슨 금으로 도금을 하는
지.

000 위원

여기 보니까 보고서가 있고 뭐 요약보고가 있고, 또 1, 2차 보고, 중간
보고가 있고 이러더라고요.

000 위원

아마 국비사업들은 굉장히 이 보고서가 많아요.
본 보고서, 설계보고서 보통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요구
하면 실제로 많이 들어요.

위 원 장

5억5,000이라는 총액을 봤을 때 그 정도 돈은 큰돈은 아니네요.

000 위원

예, 맞아요.

000 위원

예, 유인물에 정확히 나와 있어서 저는 필요에 의한 것 같아요.

위 원 장

그러면 000 위원께서는 특별히 더 이상 말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없는 것 같아서.

제3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아홉 분.

위 원 장

예,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한참 건너뛰어서요, 일곱 번째 안건 역사문화재과의 용산기지 하겠습니다.

4, 5, 6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호 안건

용산기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연구

제7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앞으십시오.

팀장님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7호 안건설명자A

용산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기초학술연구 되겠습니다.

용산기지는 저희가 간단히 얘기해서, 19~20세기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사의 프리즘적 공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경과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한양도성 외에 역사도시 서울에 걸맞게 세계유산 등재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많이 발굴하라는 내부 정책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년도, 13년도에 여러 건들을 검토해 왔고, 그중에서 저희가 1순위로 한성백제, 2순위 용산기지, 3순위 성균관과 문묘를 등재에 추진

하도록 14년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용산공원은 이 중에서 2순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먼저 여러 자문들을 거쳐서 2015년도에 세계 유산적 가치 조명을 위해서 학술대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자료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내 연구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자료가 있어도 거의 축적이나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일본이나 미국에 지금 자료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는 일본 방위성에 가서, 방위연구소 소장의 자료를 일부 수집을 해 왔고요.

올해는 방위성에 가서 나머지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미국문서보관청에 가서 미국에서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선별해 왔습니다.

그중에 일부 지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용산기지 관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일부 한 8점 정도가 최초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용산기지는, 전체 한 244만㎡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조사하기로는 한 1,245동 정도, 근대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04년에 기지 건설을 시작하면서 청일전쟁의 주둔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 침략과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화로 삼은 식민지 정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20세기 중반에 냉전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과 미국, UN이 상호 작용한 결과 형성된 유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은, 기본적으로 유산 등재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지금 제목은 기초학술연구라고 했지만, 사실상 가능하다면 내년에 학술적인 부분은 일단락을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산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초점을 맞춰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발굴,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등재 전략과 홍보 전략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과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비는 인건비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미국에 있는 자료들을 지금 많이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미국에 있는 한 20일 정도 체류하는 비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얼마 전에 위안부 관련 동영상도 그쪽에서 발견이 되었듯이, 저희도 그런 가치가 있는 물건들의 수집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주로 하는 게 자료 정리하는 거지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일단 미국에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게 가장 크고요.

위 원 장

자료를 가져오는게 제일 중요한거죠?

제7호 안건설명자A

그거와 그것의 해석과 OUV 발굴에 있습니다.

위 원 장

혹시 그러면, 사람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계획을 만든 다음에, 여러 전문가들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과업범위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작성까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여기까지는 담진 않았고요.

그거는 이거를 일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다음 과업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000 위원

어디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관은 있나요?

수행할 수 있는,

제7호 안건설명자A

지금 현재까지 자료 수집은, 연세대에 국학연구원이신 000 교수님께서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하셨습니다.

미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000 위원

이 자료 수집하면서 거기에서 유네스코 등재의 기본적인 진정성, 탁월성, 보편성 이런 가치들 다 뽑아내는 것도 같이 하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과업에 들어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용산기지 유네스코 등록하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제7호 안건설명자A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가장 빨리 될 수도 있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용산 같은 경우 특별히 주변 현안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유적들이 사실 거의 고스란히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미군이 빨리 이전만 한다면 그 안에 내부조사를 하고 바로 추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000 위원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한양도성에서 하려다 안 됐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7호 안건설명자A

전문가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어느 정도?

제7호 안건설명자A

답변하기 좀.

000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내년에 학술적인 부분을 일단락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일본 방위성
이나 미국 자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수집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
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일본 자료는 사실상 지금 80~90% 정도 수집이 되어 있고요.

000 위원

미국 자료는?

제7호 안건설명자A

미국도 내년에 한 번 더 갔다 오면, 거의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미국 나라에 있는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 미국에서 자료를 수집
하는 연구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지금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사실은 이 바로 뒤에 것도 유네스코 백제역사유적이 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여기는 47%인데, 거기는 65%예요.

총액도 1억5,000 비슷한데, 인건비에 차이가 좀 나는 게 아마 여비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리고 워크숍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담지는 못했는데요.

000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문회의비가 여기는 128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걸 하기에는, 오히려 뒷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백제역사유적 쪽에는 한 580 정도가 자문회의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만약 워크숍이나, 아니면 자문이나 이런 걸 받을 예정이시라면,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저희가 이거 제출할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국내에 계신 학자 분들이 계속 서로 얘기하시면서, 가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조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으로 라운드 테이블 같은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여기 안에 담을 생각입니다.

000 위원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 미군지기의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또 뭐 연구하시는 분이 여기 이 팀 안에 있나요?

제7호 안건설명자A

예, 여기 다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000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보도됐던 미군기지 평택으로 가면서 55점인가 승인

해 줬잖아요.

그거 포함이 되나요?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7호 안전설명자A

일단 그거는 사실 거의 일본이나 미군에 의해서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
이라서요, 저희는 지금 근대 건축물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미군이 가져갔던 것은, 기념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팀장님 밖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혹 질문드릴
수가 있으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제7호 안전 심의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미군기지가
 옮겨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학술적으로 정리를 해두어야 하는 사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인건비가 다른 연구, 왜냐하면 앞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미국에 가는, 나라에 가는 여비 때문에 조금 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정리할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문회의비나 워크숍이 들어간다면, 그런 비용이 조금 들어가면 무난한
 학술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이 형태가 지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거죠.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역사,

000 위원

그렇죠. 없었죠.

위 원

그렇죠. 우리가 들어 갈수가 없죠.

000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 원 장

이거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자문회의비가 너무 적어서 브레인스토밍 해갖고 방향성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000 위원

글쎄요, 저도 왜냐하면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면 어떤 가능한 것들을 많이 빼놔야 되는데요.

000 위원

가능한 겁니까?

000 위원

연구 범위에 따라서 이게 예산을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아까 본인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만약 부족하다고 하면, 다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가든, 범위를 넓혀서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일단 학술적인 부분은 일단락 짓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7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그거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열두 분.

위 원 장

오랜만에 만장일치로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8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8호 안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8호 안건 설명

위원장

앞으십시오.

제8호 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한성백제팀장 박용순입니다.

위원장

팀장님, 빠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A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서울 백제역사유적 활용 기본계획 수
립 연구 관련입니다.

연구방식은 위탁형이고요.

18년도 사업비 추정은 1억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연구기관 선정방법으로는, 제한경쟁입찰에 붙이려고 하고요.

연구목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2015년 7월에 공주·부여·익산에 백제역사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
니다.

이건 후기 백제역사 200년의 역사인데요, 전기 500년의 역사는 한성백
제유적입니다.

풍납토성, 몽촌토성, 석촌동고분군, 방이동고분군 네 개로 저희들은 확
장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요는, 백제역사유적 및 인접지 활용 실태조사, 문제점 개선방안
등으로 해서, 활용계획을 주로 연구할 계획이고요.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과제입니다.

2016년에는 OUV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금년에는 보존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활용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사 연구사례를 보니까, 최근 5년에는 동일한 연구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000 위원님, 질문 없으신가요?

000 위원

작년에 이거 관련된 용역이 하나 예산 잡힌 게 있었죠?

금년도 예산으로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8호 안건설명자A

현재 저희 계약심사 의뢰하고 사전공고 열람하고 이견이 없어서요, 지금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에 유찰되었습니다.

1개 기관에서 응찰해서요.

그래서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26일 18시까지 입찰 투찰 마지막입니다.

000 위원

이건 과업기간이 1년이죠?

제8호 안건설명자A

금액의 10개월입니다.

000 위원

10개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과업기간이 1년이 아니고 10개월이라고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그건 회계연도 사업이고요, 통상적으로 용역을 맡주하면 10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됩니다.

위 원 장

혹시 유찰됐다고 다른 용역 말씀하셨는데, 작년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찰됐다고 해서 재공고하셨다 그랬죠?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통상적으로 1차 유찰되고 2차에 유찰되거나 또 단독 응찰을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렇다면 아마도 하실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다는 소리 같네요, 맞습니까?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1차에 1개 기관에서 투찰을 했습니다.

위 원 장

그렇다면 이 용역도 혹시 제한경쟁으로 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꼭 있나요?

혹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8호 안건설명자A

회계 제도상으로는 없고요.

위 원 장

아, 그렇습니까?

제8호 안건설명자A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으로, 그다음에 유사용역을 한 경험이 있는가를 제한경쟁 할 적에 올렸습니다.

회계기법으로 지금 3억8,000으로 계약심사가 끝났는데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

지금 그럼 이게 9월에 재입찰을 하신다고 해도, 10월 말이나 돼야 계약을 하시고 11월, 12월, 올해는 두 달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통상적으로 이 계약 금액의 용역기간은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면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1월부터 곧바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00 위원

아니요, 그걸 여쭙본 게 아니라 1차랑 2차랑, 그러니까 1차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차 용역을 진행하셔야 되는 건지, 전혀 상관없는 건지.

제8호 안건설명자A

아닙니다.

저희들이 16년도에 의뢰한 계약 금액이 1억1,800이었는데요.

이거는 OUV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유네스코에 요구한 그걸 연구용역을 맡겼고요.

그다음 사업으로 보존관리, 그다음에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방향인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이런 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한양도성도감이라든가, 아마 방금 용산도 나왔을 건데, 용산도 OUV를 언급을 하셨을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나오는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규정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에 이런 내용을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유네스코 언제 신청하는 건가요?

이 용역결과 나오면 19년도에 하는 건가요?

제8호 안건설명자A

문화재청에는 2018년까지 신청을 완료를 하면요, 그 문화재청에서 이런 걸 검토해서, 2020년 이후에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 저희들은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어떻게 같지는 모르지만요.

000 위원

문화재청에서 기본적으로 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하는 거는, 리스트가 있지 않아요?

뭐뭐 간다고 아마 전국을 다 통틀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8호 안건설명자A

한성백제유적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설정이 되었고요.

2015년 7월에 후기 200년에 공주·부여·익산이 되다 보니까, 600년이 풍락토성하고 몽촌토성인데 이것도 넣자, 이것은 확장 개념이고요.

신규로 넣은 게 아니고 확장 개념이고요.

000 위원

그리고 지금 발주 중인 용역,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 사실 보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련된 내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제8호 안건설명자A

다시 말씀드리면, OUV가 1단계고요.

OUV는 신청서를 만들기 위한, 탁월한 보편적 유산의 가치가 있느냐의 연구용역이고요.

두 번째는, 보존관리활용 모두가 있어야 문화재청에서 심사해서 유네스코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이번이 이 유산의 활용계획, 그렇죠?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보존관리는 올해,

000 위원

올해 재입찰을 하는 중이고?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내년도에는 활용계획에 올리겠다.'

000 위원

그런데 1차년도가 어차피 빨리 해보야, 10월 달에나 착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넘어가면 내년 상반기, 빨라야지 7, 8월에 끝나잖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한 8월경에요.

000 위원

그런데 지금 2차가, 그게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2차가 된다고 하면, 이게 또 뒤가 딜레이가 돼서 늘어지게 될 텐데, 이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1차 결과물을 가지고 2차 용역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차 용역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빨라보야 내년에 9월, 10월 이때쯤에 이게 발주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8호 안건설명자A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6월경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B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저희가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를 위해서는, 필수서류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저희가 작년에 진행했던, 올해 5월에 마감이 된 OUV에 관한 서류고요.

하나가 보존관리활용 그리고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되게 되면, 관광객이 많이 몰릴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유산을 더 보호할 수 있는냐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보존관리활용이 하나의 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존관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활용하고 나중에 향후 대책을

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된 용역이 아니라, 실은 원래 같이 진행되는 용역이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18년도 말까지 이 기초 서류들을 모두 다 완료하는 데에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약간 기간이 늦어진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용역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A

또 덧붙여 설명드리면 보존관리활용을 다 수탁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너무 많은 용역을 하다 보면, 또 용역이 부실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일관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시립대에서도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을 한 게 있네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지금 1차년도 한 OUV를 거기서 산학협력단에서,

000 위원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응찰 받아 수행했습니다.

000 위원

이건 만료가 된 거예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금년 5월 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 원 장

만족하셨나요, 그 용역에 대해서?

제8호 안건설명자A

저희 업무는 아닌데요.

한양도성도감이 철회를 하는 것처럼, OUV의 확실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데,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4개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저희들은 만족한다고 봅니다.

이 연구과정을 통해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의 장도 만들고요. 저희들이 공론화할 기회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받고, 연구용역 결과도 받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0 위원

그럼 현재 있는 건 보존관리는 올해 착수하고, 활용은 내년에 착수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9월 달에 심의 받을 때는, 보존관리활용을 같이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나요?

학술용역 심의 받을 때 따로 받았나요?

활용은 빼고,

제8호 안건설명자A

활용도 올렸는데요, 그 과정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아마 너무 많은 연구용역 과제니까, 단기간에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나 봅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같이 하겠다는 얘 기초?

제8호 안건설명자A

아니죠, 별도죠.

활용은 내년으로 하겠다고 뺐 거죠.

000 위원

작년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지금 3억8,000에 계약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원 장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들끼리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밖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설명자 퇴장)

제8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거는 이미 2014년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설정하는 거는 이미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존관리 부분은 지금 재입찰 중이고, 그다음에 활용, 향후 대책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에 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이 두 가지, 뒤에 두 가지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뒤에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두 군데에서 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앞에 걸 기초로 해서 그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좀 더 다른 아이디어랑 합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긴 한 것 같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저는 1차년도가 물론, 궁금한 게 10월 달에도 만약에 하나밖에 입찰을 안 하면 세 번 또 공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000 위원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연구 완결을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년도가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년도 가면서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지, 내년에 끝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신다고 보이고, 그래서 1차년도 예산이 3억8,000 정도가 되면, 여기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은 사실 기존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좀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처음에 좀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아마 나름대로 유네스코 등재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걸 갖고 있는 계획 프로세스가 적용이 된 것 같기는 해요.

000 위원

저는 작년에 용역을 받으실 때 보존관리활용계획으로 받았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셨을 때는, 그게 이 활용을 빼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주신 건지, 아니면 활용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신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000 위원

이게 방침서에 보면, 당초 학술용역 심의 4억을 금액을, 예산을 계약을, 처음에 계약을 하되 금액은 4억으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용역명도 그렇고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활용이라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활용까지 해서 4억을 준 거예요.

위 원 장

그런데 왜 빠졌죠?

000 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못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당초 계획 그렇고 보면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000 위원

당초 4억으로 했는데 예산이 3억8,000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000 위원

4억인데 계약할 때는 깎거든요.

000 위원

계약 심사에 따라서 한 것 같고요.

활용 때문에 2,000만원을 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000 위원

그러면 한번 여쭙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올해 나갈 것에 활용이 있는데, 여기에 올해 낸 이 활용하고는 뭘 차이가 있는지만 규명이 되면은요.

(설명자 입장)

위 원 장

팀장님 앉아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작년,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다는 프로젝트와 지금 하시겠다는 프로젝트와의 유사성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유찰된 프로젝트를 허용할 때는, 그 안에 활용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말씀은 그게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A

현재 저희들이 입찰공고 낸 것은 OUV 수행했고요.

보존관리활용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받아야 잠정목록 등재가 됩니다.

위 원 장

그걸 여쭙어보는 게 아니라요.

제8호 안건설명자A

그래서 원래는 보존관리에 대해서 공고가 들어갔고요.

위 원 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유찰된 프로젝트에는 활용까지 포함되기로 돼 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번에 공고 나시고 유찰될 때는 왜 활용이 빠지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A

작년 심의에 보존 관리 활용을 올렸고요.

위 원 장

예.

제8호 안건설명자A

그다음에 관광수요 대비 보호대책 수립 연구도 올렸고요.

위 원 장

예.

제8호 안건설명자A

그런데 이게 아마 관광수요 대비 보호대책 수립 연구는, 부적절로 심의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위 원 장

예.

제8호 안건설명자A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할 때 보존관리와 활용으로 분리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17년도에는 보존관리만 올리고, 18년도는 활용계획으로 올린 걸로 이번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000 위원

2016년 8월 달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용역비를, 여기에 보면 보존관리활용까지 포함을 해서, '4억이라는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방침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활용이라는 계획의 내용이 없고, 보존관리만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당시 방침서 내용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당초에 4억을 가지고 활용까지 한 걸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게 아닌 지금에 와서는 활용이 빠졌고 '별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복이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작년에 심의에서 부적정으로 된 게 관광수요 대비 보호대책 수립 연구 1억이 이번에 보존관리한 방향에서 들어갔고요.

보존관리 방향에 보시면, 관광계획이 얼마나 올 것인가, 부여·공주·익산 분야의 유사성하고 검토로 침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활용을 띄는 결과가 되고요.

000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부적격이 됐던 부분들을, 그것을 활용계획으로 해서 올해 제출하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000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000 위원

그렇게 이해가 돼요.

뭐냐 하면 작년에 부적격으로 했던 1억짜리 용역 있잖아요.

그게 나름 관광객이 오고가는 걸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거
않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저희들 작년 서류가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서울 백제역사유적 관광수요 대비 보호대책 수립 연구라고, 6개
월 연구용역기간으로 1억을 올렸는데, 이게 부적정이 나서 이 사업은
올해 보존관리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러면 활용을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넣자.

000 위원

보존관리는 얼마인가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올해 4억 예산이 편성됐고요.

3억8,000에 계약심사가 끝났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게, 보존관리에 3억8,000이 들어갔으면 사
실은 그 보존관리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도
같이 나오면 그게 좋을 텐데, 이걸 굳이 왜 따로 떼어 가지고 1억5,000
있잖아요, 이미 활용계획이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금액상 10개월 연구용역 과제인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수탁하는 기관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충분
한 연구용역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단계별로 시작하는 거라서 떼어냈습니다.

000 위원

3억8,000이면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개 기관에서,

000 위원

1개 기관이지만 연구용역비가 많으면 연구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8호 안건설명자A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보존관리계획이 나와야 이거를 갖고 검토를 해서 활용으로 넣는다.

보존관리활용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연구용역에 조금 미스매치가 되지 않느냐.

000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들었고요.

팀장님이 이거 언제부터 만드셨어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올 1월 6일부터입니다.

000 위원

작년의 히스토리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1억짜리가 이게 부적정이 되면서, 그 내용을 여기서 포함하라고 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당초에 이 4억짜리도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었던 건데, 이거를 갖다 놓고 보존관리만 발주하고 활용은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걸 그냥 활용범위를 빼고 임의로 용역범주 축소해서 발주를 하셨다는 얘기인데요.

000 위원

지금 그 부분도 말이 안 맞아요.

제8호 안건설명자A

아니, 작년 저희 서류를 보니까 2016년10월12일 날 심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지금 이걸 아마 지난번에 서류가 어떻게 들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활용이 빠지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00 위원

그때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요.

위 원 장

내가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내가 헛갈려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000 위원

그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기간이 같았나요?

위 원 장

그때 아무튼 짝은 건 기억이 나거든요.

000 위원

얼마에서 얼마를 짝으셨어요?

위 원 장

그러니까 하나를 완전히 부적정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렇게 덮어지고 이게 빠지고 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주무관

일단 작년 건 중에 두 건이 들어왔었는데요, 한 건이 서울 백제역사유적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이 들어왔었고, 두 번째가 관광수요 대비 보

호대책 수립 연구로 해서 이걸 1억짜리고, 위에 건 4억으로 해서 총 5억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밑에 것, 관광수요 대비 보호대책 연구가 부적정이 나면서 위에 기본계획에 관광수요는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포함해서 진행해라 그렇게 됐었고,

위 원 장

그런데 관광수요를 여기에 덮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활용에 덮을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용을 여기서 하라는 소리였는데 왜 활용이 다시 빠졌는지.

주무관

부서 자체적 판단은 용역비가 총 5억이었는데 4억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수행이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위 원 장

그럼 저쪽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네요.

000 위원

아니, 용역을 수주한 기관에서요?

000 위원

발주기관에서요.

주무관

심의의견 반영결과 제출서라고, 조직과에서 추후에 반영결과를 받는 서류상에는 이런 자료가 있긴 있어요.

위 원 장

했는데,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솔직히.

000 위원

반영에 보존관리만 하고 활용 부분은 안 넣는다고 지금 온 건가요?

주무관

예, 그런 내용으로 반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위 원 장

그러니까 제출서를 냈으니까, 이분들은 면피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는 처음 듣는 소리니까 지금 자꾸 여쭙보는 거고요.

주무관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런 면은 있네요.

000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초에 2016년 8월 달에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하다 보니까 활용이라고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기는.

그래서 보존관리만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학술용역 변경계획이라든가 확정을 받아놓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은 이대로 가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변경계획 방침을 하나 받아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는 여기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000 위원

그러니까 총 5억이었어요.

5억이었으니까 작년에 1억 없어진 걸 활용으로 해서 1억5,000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위 원 장

그래서 더 늘어난 거예요.

000 위원

그런데 지난번 심의를 할 때 그게 활용으로 넣었다고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그걸로 다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습니까?

위 원 장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제출을 우리한테 했는데, 거기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낸 걸로 페이퍼로 끝난 거 아니냐 우리는 생각한 거고, 저기는 분명히 거기서 이 범위를 뺐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 보존관리에 대한, 이게 지금 재입찰하는 중 아닌가요?

000 위원

예, 그렇죠.

000 위원

유찰됐고 한 번 더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위 원 장

아직 안 늦은 것 아닌가요?

000 위원

저는 혹시 재입찰 중이라면,

000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적정이나 부적정이나만 판단하면 될 문제 같아요.

그걸 이쪽에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000 위원

작년에 할 때 이게 결정할 때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관광까지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4억은 하라고 그런 건데, 지금 그게 4억으로 안 하고 지금 4억은 그대로 하고 또 이걸 빼면 용역비를 과도하게 산정된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1억5,000이 그냥 기본적으로,

000 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보존관리와 활용계획을 한다고 해도 활용계획은 사실 여기서 계획서 정도면 하면, 그다음은 관광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000 위원

문화재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000 위원

이게 조금 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유적에 대한 관광이나 활용방안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포맷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문화재 쪽은 용역비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런 용역을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특히 유네스코 등재 관련된 이런 부분은, 특히 전문기관들 아주 극소수
이기 때문에, 그쪽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활용까지 포함해서는 제 생
각에는 그 금액으로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관리 부분만 하다 보니까,

000 위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저 팀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
는 게 판명이 되는 건데, 사실상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한
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줬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활용계획까지 다 넣으라고 해서 넘겼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게 정확하게 안 되는지를 본인이 인지를 하
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
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거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했어야 되는 거지만요.

위 원 장

그런데 그게 아무튼 문제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
데요.

000 교수님, 이게 아쉬운 게 문화재청이 아쉬운 겁니까?

우리 서울시가 아쉬운 겁니까?

만일에 활용계획을 우리가 늦게 내서 등재를 못했다면 어디가 아쉬운
거죠?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000 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아쉬운 걸로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문화재청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상 리스트가
있거든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종 리스트가 있고 이거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가냐만 문화재청은 판단하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서울시 것
백제 이거 빠졌다고 그러면 ‘어, 그럼 이거 올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은 아쉬울 게 별로 없을 겁니다.

000 위원

만약에 지난번에 했던 보존관리 용역이 3억8,000, 이게 활용계획이 빠졌다면 활용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졌다면, 이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위 원 장

그런데 저는 지금 늦었냐 이거죠.

그게 지금 늦은 상황이나는 거죠.

000 위원

늦으면 늦은 거고, 빠르면 빠른 거 아니겠어요?

000 위원

아니 그런데 보존관리활용을 가지고 총 4억으로 했는데, 그걸 빼고 지금 현재 용역발주를 하지만, 일단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4억을 가지고 활용까지 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발주를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여기서 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 활용을 또 걱정으로 승인해 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 원 장

그럼 저희가 그렇게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유찰된 것을 다시 정리해서 하라고 할 수가 있나요?

000 위원

현재 진행 정도로 봐서는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재공고까지 다 나간 상황에서 과업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 상황으로서는 그 안에 더 포함해라 그러면 이 과업이 아주 작은 규모 같으면 협상을 통해서 추가 과업으로 약간 줄 수는 있는데, 1억, 1억 5,000으로 들어오는 이 내용을 갖다가 거기다 포함하라고 그러면 사실상 어렵죠.

000 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번 용역 개요를 보면, 연구내용에 4억에 시민참여 및 유적활용방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000 위원

예, 다 들어가 있어요.

000 위원

자기네가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개별로 나뉘어져서 자기네 활용이 안 들어갔으니까, 따로 하겠다는 건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용역이 아직 끝난 상태도 아니고 하면, '사실 활용계획은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안 하고 그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000 위원

내년에 경제성이 좀 저기 한다면 추경에라도 하면 되니까.

000 위원

이번에는 일단 결정을 하고요.

000 위원

저는 너무나 유네스코를 서울시가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0 위원

그리고 이게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건지, 서울 백제유산이라고 하는 것도 참.

그걸 가지고 유네스코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해야 되나?

제8호 안건 결론

위원장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각자 판단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죠.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세 분.

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드립니다.

이번 안건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9호 안건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제9호 안건 설명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앉아서 간단한 개요 부탁드립니다.

제9호 안건설명자A

시설계획과 시설정책팀장입니다.

이번 건 도로 공간 입체적 활용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입니다.

연구 목적하고 연구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 금년 7월에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입법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내에 의원 입법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10월까지라도 시행령 하위 지침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목표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국토학회에서 같이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때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도로의 지상부, 지하부 그리고 주변 지역을 민간도 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주요 골자로 합니다.

그때 도시계획변경도 의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개발이익의 50% 정도는 재생기금으로 회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데면 보도도 됐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서 상부나 주변부, 인터체인지 이런 데를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든지, 이런 특별법적 법률을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법 체계에서도 입체적 결정이라든지 공간적 범위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는 건 아

는데요.

이번 건은 주변 지역도 포함할 수 있고,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게 하는 새로운 개발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복합개발을 질서 있게 유도할 것인지, 이런 서울시만의 운영기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행령이라든지 지침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응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를 떼면 낙원상가 같은 게 도로 상부에 있는 구조물인데, 그게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을 하더라도 난개발은 막고, 이게 어찌 면 바람골일 수도 있고 오픈스페이스도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반면에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로 인한 단절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뭔가 조금 새로운, 좋은 개발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입체 복합화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 또는 가능 지역, 이런 지역들을 유용화하고 입지적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런 유형별로 입체 복합화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입체 개발이 가능한 용도의 범위, 무한히 이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제어하면서도 좀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법이 제정되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혹시 000 위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지금 연구기간이 12개월인데, 이거 이월을 전제로 해서 들어오나요?
보통 당해 연도에 다 못하면 장기계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년도, 2차
년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의회에서도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요?

이월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

제9호 안건설명자A

맞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장기계획사업으로 2년차로 잡고 있는데, 이게 2개월 정
도인데 이걸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의 사고이월을 할 수도 있
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2개월이 아니죠.

발주 준비하고 계약절차 거치고 그러면 사실상 암만 빨라야 3, 4월에나
계약이 돼 갖고 절반밖에 못할 건데, 12개월로 치면.

제9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3월 정도에는 착수할 수 있도록, 이거는 사실 서울연구원하고
엔지니어링 업체가 협업하는 형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하고 하게 된다 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
문에 저는 3월 정도면, 그리고 사실은 사전에 현재 서울연구원하고 공
동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입법 예고안 같은 게, 공청회안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전문가들 하고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한지는 이미 고민을 하고 있습
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시더라도 한 3, 4개월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월이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
네요.

위 원 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9호 안건설명자A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지금 연구원을 보면, 그냥 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의 업무가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장조사를 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연구보조원 네 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제9호 안건설명자A

실제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을 한판으로 놓고서, 그러니까 모든 도로를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로 중에서도 그 도로를 조사해서 유형화를 할 것이고, 그 유형화에 따라서 어떤 개발이 되도록 할 것인지, 그걸 합치면 결국은 정확한 현장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000 위원

그러려면 현장조사하시는 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9호 안건설명자A

더 많아도 될 수 있지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적정 수준에서 그리고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에요.

000 위원

연구보조는 좀 줄이시고, 보조원으로 현장조사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제9호 안건설명자A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이게 장소는 여기 들어와 있는 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제9호 안건설명자A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은 공공이 거의 이용합니다.

도로면 지상이나 지하로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도로 외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이 상부공간이건 주변의 토지를 수용하든지 이런 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근거에서 한다는 건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용역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으로 6군데가 그거는 했었던 것들에 대한 결 올린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한 건가요?

그럼 지금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나요?

제9호 안건설명자A

예, 대상 도로는 서울시 전체 도로를 대상으로 스크린을 하고, 그래서 운영기준을 만드는 게 우선적 목표입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제9호 안건설명자A

그중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타깃이 되는, 시범지역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밖에 나가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9호 안건설명자A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하는 상황이라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에만 적용될 것들이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나 이런 이슈들을 뭔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예,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제9호 안건 심의

주심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저는 이거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국가가 나서 가지고 지금 이 개발에 대한, 제제를 하든 뭐하든 민간에 개발을 터트려 버리는 건데, 사실 서울밖에는 이렇게 크게, 서울에 아마 굉장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거는 현장에 대한 조사이기보다는, 굉장히 갖고 있는 DB들이 잘 구축되면 주변의 토지이용사항이라든가 도로망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이 분석 속에서 가이드라인 정도, 이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그 이후에 거기에 따라 서울시가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비용이, ‘기간이 좀 짧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해요.

이게 하고 난 다음에 후속이라는 것은, 소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연속과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000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어차피 국토부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 만들고 내년도에 시행령하고 지침을 만들겠다는 현재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래서 도로 공간에다가, 도로 공간에 지금 민간이 거기다 투자할 수 있게, 민간투자가 가능하게 도로를 붙여 가지고 만들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학술연구용역 하는 취지는 이걸 가지고 현재 뭘 개발하자는 대상지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아예 법도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데,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법제처 만들 때 저희가 어떤 기준만 만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시설을 어떻게 구상하는 것까지는, 그건 어차피 기술용역이나 다른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아까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데 저도 이게 순차적으로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7명까지 필요할까, 물론 처음에 기본 구상할 때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이게 어차피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필요할 때 용역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게 7명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 원 장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셨고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000 위원

이건 걱정성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같은데요.
이 자체 용역심의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서울연에서 하는 거면, 서울연구원에서 자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건 상관없나요?
심의할 때 서울연구원의 연구원이 자체 용역심의에 참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위 원 장

여기에요?

000 위원

예, 여기 지금 서울연구원...

위 원 장

‘이렇게 서울연구원이 하겠다.’ 하는 게 괜찮냐고요?

000 위원

심의하시는 분이 수의계약을 하시는 분이, 자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는 게,

000 위원

위원으로 서울연구원이 들어가 있네요.

인 경 진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000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인건비, 인력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가름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공간적 범위를 갖고 가이드라인을 하려면, 가이드라

인을 구축하기 위한 DB들이 굉장히 잘 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많다 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저
는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서울연구원이 정말 여기 서울시가 굉장히 선제적 대
응을 잘할 수 있는, 1차적 연구를 얼마나 드롭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
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아마 그리고 하면 서울연구원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요.

000 위원

우연치 않게 서울연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뭐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워낙 저는, 학술용역 두 번째 오는데 비율이 많이 높으시고 또 우연치
않게 인건비도 많이 계상이 되신 분도 있어요.

역사적인 건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위 원 장

그런데 보통은 서울연에 계신 분의 전문성 때문에 참여한다고 생각하
시면, 좋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9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못을 좀 박으셨으면 좋
겠고요.

그런 내용이 제한적인 요소에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아홉 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예,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정회 15시50분)

(속개 16시00분)

위 원 장

시작하겠습니다.

보행정책과, 열 번째 하겠습니다.

제10호 안건

제2차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10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2차 서울시 보행안전 및, 들어오라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10호 안건설명자A

보행정책과 보행정책팀장 김현중입니다.

위 원 장

예, 앉으십시오.

간단히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10호 안건설명자A

제2차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은, 2012년 2월 달에 공포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게 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요.

동 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고시해서 시민들한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동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이걸 5개년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고,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전역입니다.

과업내용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된 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아울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에 저희가 계획상 용역기간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제 2차면 1차는 지금 다,

제10호 안전설명자A

예, 2013년 12월에 저희가 1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 원 장

1차는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제10호 안전설명자A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 원 장

1차 연구와 지금 간에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10호 안전설명자A

지금 과거에 비해서 보행에 대한, 교통으로서 보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아졌고 또한 정책의 아젠다로서 많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 보행을 걷는 도시 서울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시정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1차 용역이 끝났는데 2차는 혹시 몇 년도,

제10호 안전설명자B

13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고 있고요.

000 위원

그런데 이 보행안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그 보면, 서울시 내에 대도로 말고, 대도시들 말고 동 단위, 작은 골목들이지만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그런 것들도 좀 하시나요?

제10호 안전설명자A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행단절구간이나 보행 지장물에 대한 조사도, 이것도 같이 범위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10호 안전설명자B

5년간의 큰 그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권의 보행안전 개선 사업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을버스길이 있긴 하지만, 보행로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제10호 안전설명자A

이건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서울시에 도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연차별, 중장기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간선도로, 이면도로, 작은 소로 같이 특성별로 달리 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건 기본계획이시죠?

그러면 디테일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겠네요.

제10호 안전설명자B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실행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는 걷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이라고, 저희가 따로 수립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0호 안건설명자A

보행관련 상위개념 계획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게 5년마다 한 번씩해서 하는 건데, 내년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하겠다고, 총 사업비가 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정방법은 일반 공개입찰로 했다.

그런데 일반경쟁으로 했을 경우에 업체가 선정이 될 텐데, 원가계산서 보면 이윤이 제로로 나왔어요.

비영리단체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이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면 거기도 비영리단체니까 제외가 맞는데, 입찰로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10호 안건설명자A

예, 이것은 저희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저는 기본계획 수립은 비영리단체가 하는 부분도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여기는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술기관들이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의 범위를, 왜냐하면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달리 갈 거라고 보입니다.

제10호 안건설명자A

예, 지적하신 부분 그렇게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000 위원

작년, 금년에 보면요, 금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관련된 용역이 있고, 작년에도 보면 보행교통 개선계획 그리고 보행친화도시 시즌2 이렇게 지금 보행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용역들이 연구원이 나 시립대, 연구기관에 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각종 용역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다 파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10호 안건설명자A

이게 굉장히 과업범위가 보행이라는 게 서울시 전역에 있다 보니 굉장히 범위도 클 뿐만이 아니라, 또 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는 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관련된 유사한 용역들이 있는데, 이것도 핑계 아닌 핑계가 모범이나 정부 부처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고, 예를 들어서 물류 쪽은 국토교통부에서 법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약간 모범에 따라서 중심이 되는 용역과제들이 다른 건 있습니다.

이런 물류 같은 경우는 인프라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린 부분들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통체계 운영이라든가 홍보, 시민의 안내 이런 것까지 다 포괄된 종합적인 계획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000 위원

어쨌든 종합계획이라고 하지만, 보행 관련된 각종 용역들이라면 선행 연구를 통해서, 문헌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범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부터 아예 없는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거랑 기존의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이 되고 그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10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그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부처 간 법 5개년 계획이 다릅니다, 연차가. 계획 연도.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하나로 맞춰서 통합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000 위원

보행교통 개선계획 16년에 수립하신 것, 이거랑 내용이 완전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5개년 계획이었어요?

제10호 안전설명자B

그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법에 의한 시설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고, 16년에 진행됐던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완전히 시설분야에만 추진되는 겁니다.

000 위원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요.

시설분야에만 집중한다는 게, 보행교통에서 시설분야에만 집중한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관계자

그러니까 보행문화 보행 이런 거죠. 보행로.

제10호 안전설명자B

그러니까 보도를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끊어진 데에 횡단보도를 놓는다든가, 이런 인프라 구성에 대한 것들만 다루는 계획이었습니다.

000 위원

그밖에 연구과제가 뭐가 있는지, 이번 연구에서요.

그게 핵심 아닌가요?

제10호 안전설명자B

아니요, 지금 하게 될 보행안전의 편의증진에 관한 이 편의증진 기본계획은, 그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전반적인 걸 다 다룹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저희 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민 홍보라든가, 보행문화 확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도 보행교통과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관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좀 더 포괄적인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000 위원

보행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굳이 학술용역을 빌어서 계획수립을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10호 안전설명자A

그렇죠.

그게 저희가 그거에 어떤 제안을 받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정의 용역연구기관에서 저희한테 이러이런 것도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걸 제안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들께서는 나가계셔도 됩니다.
잠깐만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설명자 퇴장)

제10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위원님의 검토의견 들겠습니다.

000 위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본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보행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국토교통부랑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랑 자꾸 법을 만들어내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을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인데요.

이거는 보행기본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이 안에서는 속도 제한이라든가 거리 지정이나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된 형태의 계획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하기보다 사실은 중앙부처가 우수한 법률은 남발하면서 의무적으로 5개년 계획 수립해야 하는 이 문제들이 하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어쨌든 지금 97년도에 처음으로 세계 최초의 보행 조례를 수립을 했었고, 거기에 의해 보행이 된 체계적인 정책도 우리나라 최초로 일어났던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쪽 이어왔던 사례이고 그래서 5개년 기본계획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충분히 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갖고 있는 조사 데이터들을 좀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딱 새로운 조사가 나올 게 아니라, 기존에 조사 데이터들을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해서 넣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있으면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조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줍니다.

위 원 장

위원님, 이 연구가 당연히 제일 잘하는 데가 보행정책과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남한테 맡겨서 하는 게 맞아요?

000 위원

보행정책과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보행을 잘하는 연구기관은 서울연구원입니다.

위 원 장

서울연구원이 이런 연구를 하는 게,

000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저희 도시연대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울시 보행 조례를 만든 단체거든요.

저희가 94년부터 보행권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서울연구원 외에는 보행을 연구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 가장 보행을 잘하고 있는 데는 대학도 아니에요.

서울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비영리단체가 걸맞지 않라고 보여지는 거는, 그 다음이 서울연구원 아니면 잘 하는 데가 비영리시민단체, 보행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현재 서울연구원 시스템이 가장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걸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잡다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여기 기본계획을 쭉 훑어보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죠.

이걸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00 위원

기본계획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유사하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세한 다른 보고서 및 그런 조사된 내용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다

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연차별로 기본계획이 나가는 거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존 자료 활용에 상당한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이긴 한데 뭐냐 하면 서울이 보행의 정책이 매년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저는 박원순 시장의 걷는 도시 서울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정책은 굉장히 뭐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해마다 물량들이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사가 기존에 있는 조사들은 이미 기 사업을 실행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 정도일 것이고, 종로나 이 보행정책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면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에 서울시가 보행정책 방향을 가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뭐 적고 많고의 개념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활용할 수 있다.’라면, 저는 ‘조절은 가능하다.’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그냥 데이터 정도의 정리 개념은 좀 아닐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000 위원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보행 관련해서 큰 틀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아까 어떤 담당관이 얘기한 것 같은데, 각 지역의 도시환경이나 도로 환경은, 각 지자체에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000 위원

자치구.

000 위원

예, 자치구에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지금 1차 용역을

한번 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게 또 들어갈 때, 지금 같은 지금 올라온 이 내용만으로 한번 더 2차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고민은 좀 되거든요.

000 위원

아마 이걸 하기 전에 서울시 보행 조례에 의해서 시작했던 97년도에 나타난 기본계획에서는, 보행의 위험요소를 없애는 형태의 정책으로 5개년을 갔었어요.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아마 이런 형태들만 갔었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보행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보행네트워크 체계를 제가 여기 1차년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치구들이 알고 있는, 자치구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실행에 대한 개념으로, 서울시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자치구들 대상으로 몇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행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구들도 자치구별로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서울시가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보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런 논의들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같은 방식의 횡단보도 시설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건 좀 아니라고는 보여지는데, 올해는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저는 오히려 내용상에 있어서 변화에서 보행을 선제적으로 보행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원 장

000 위원께서, 아까 예산 쪽은 대강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여기에 나온 걸로 이해될 것 같고, 000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000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선행연구를 이용하면, 활용하면 어느 정도 용역비에 대해서 조정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 원 장

예산에 대한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예산은 걱정하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선행연구 얘기들을 참 많이 말씀하셔서,

000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술용역은 인건비가 한 80%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51% 잡혀있어요.
그다음에 경비가 한 47% 잡혀있고, 다른 데는 경비가 한 20~30%밖에 안 잡혀있는데 경비 분야에서 약간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인건비가 적게 잡히고요.

000 위원

지금 조사비가 한 7,600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2억 중예요.

000 위원

조사비가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 원 장

그러면 000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이쪽에 예산만이 문제라면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조사비에 대해서 너무 과다 책정됐다.’

000 위원

조사비는 저는 과다하지 않아, 이건 아마 만족도 조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 서울에서 몇 가지 샘플을 잡는다 하더라도 조사비는 조금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000 위원

연구방향은 제시할 수 없나요?

위 원 장

제시를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제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시를 잘못하면 모든 틀이 바뀌니까 좀 조심스럽죠.

000 위원

그 부분은 자문회의나 착수보고나 이럴 때 굉장히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약을 해줄 필요가 있죠.

‘어떤 형태로 가줘야 된다.’ 이런 게요.

위 원 장

혹시 위원님, 제시 쪽에 하실 말씀 있으세요?

000 위원

지금 이 걷는 도시 서울에 모든 포커스가 서울시장의 공약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네 안에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정말 걷는 도시 서울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실은 횡단보다 앞에 서 있어도 장애인 내려가는 턱도 보면 되게 웃겨요, 장애인이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지.

홈만 파서 떡 하니 그걸 걷는 도시라고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보도들에 대한 게 지금 전혀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방향 제시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위 원 장

그러니까 이면도로나 장애우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건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든 고려할 수 있게끔 하면 그건 될 것 같네요.

그것도 그러면 감사님이 정리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거 고려하셔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000 위원

금액은 지금 2억으로 통일된 건가요?

그걸 여쭙본 거예요.

위 원 장

크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분도 계셔서 그
거는 따로 안건으로 쓰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주심위원께서 일단 관련된 사항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위 원 장

그럼 따라야죠.

자, 그러면 이 안건 다 고려하셔서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여섯 분.

위 원 장

여섯 분이시죠?

전체가 몇 분이시죠?

간 사

열 분이십니다.

위 원 장

열 분 중에 여섯 분이 찬성하셨으니까,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이 자연생태과 안건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르지만, 이 세 안건을 한꺼번에 먼저 발표하라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11호 안건

서울둘레길 가치분석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연구

제12호 안건

산림복지 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제13호 안건

서울시 지역산림, 산지관리지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제11, 12, 13호 안건 설명

제11호, 12호 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자연생태과 산림이용팀장 한정훈입니다.

위 원 장

이왕이면 다 인사들 하시죠.

다 같은 팀 아시시죠?

제11호, 12호 안건설명자A

다 같은 팀입니다.

위 원 장

세 분이 다 같은, 세 가지 용역에 대해서 다 발표하실 건가요?

제11호, 12호 안건설명자A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 제가 팀장이고요.

실무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이십니다.

위 원 장

두 가지를요?

서울둘레길하고 산림복지 두 개 말씀하시나요?

제11호, 12호 안건설명자A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예, 그럼 두 개 말씀해 주십시오.

제11호, 12호 안건설명자A

우선 서울둘레길 가치분석 및 이용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수위탁형 사업으로 내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정도로 시비로서 일반경쟁입찰 통해서 하는데요.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둘레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시행근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숲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조성된 숲길

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업무에 대한 부분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개통 후 그간 전반적인 이용관리 실태 분석에 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리운영상에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둘레길에 대한 가치분석을 통한 중요한 자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자 하고, 앞으로의 관리운영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관리운영 방법을 갖다가 결정을 할 때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더불어 도시 외곽부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외사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외사산 중에서 특히 둘레길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치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럼 두 번째 산림복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예, 알겠습니다.

산림복지 증진 마련에 관한 기본구상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역시 내년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사업비 9,500만원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림복지에 대한 부분은, 수요에 비해서 서울시에는 산림복지 관련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산림복지시설이 특히 필요하다 싶고,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범죄, 성인병 증가 등 사회적인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환으

로써 산림복지시설의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서울시내에 산림 안에 있는 산림기반시설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에,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한다거나 지구 안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안에 대한 구상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산림복지프로그램이나 이용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앞으로 서울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팀장님 잠깐만 여기 앉아계시고요.

다음 분 먼저 발표하시고, 같이 저희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뒤에 의자가 있으시니까요.

앉으시죠.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13호 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지역산림계획, 산지관리지역계획,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연구용역 담당하는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요청드린 것은,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 지역산림계획, 산림관리법 제3조제6항 산지관리지역계획,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에 따라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건 관련해서 산림청에서는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10년 주기로 용역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 용역에 대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역산림계획은 산림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해온 지역산림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 시에 산림자원 조성육성, 일상 속 산림복지체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안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지관리지역계획은 산지관리지역계획의 평가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지의 보전 및 이용 등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림에 관한 기본계획은, 가로수, 녹지 등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평가해 보고, 가로수 등의 도시림이 갖는 특성에 맞춰 도시림 등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제도적 여건 변화에 맞춰 구체적이고 실행기반이 강화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앉아계시고요, 한 팀장님이 앞으로 좀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돌레길 먼저 하겠습니다.

돌레길에 대한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약 4,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학술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6,000만원이 계산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게,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제가 4,000만원으로 잡아온 게 있다면 자료를 잘못 드렸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추진하면서 거기 잡혀 있던 당초에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꼭 증액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필요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 용역기간이 원래 2월에서 6월 달까지로 잡았었는데 너무 짧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11월까지로 넓혀서 기간을 10개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더블 정도 예상되어야 되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6,000만원까지만 증액시키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인쇄가 4,000만원 되어 있으면 저희가 미스를 한 부분입니다.

위 원 장

6,000만원이라고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000 위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아마 제가 보기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어떤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한 후에 그다음에 체크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이용실태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중점을 뒀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사회, 경제, 역사문화, 보건 이런 여러 분야 쪽에 대한 어떤 가치들이 생성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중에 어떤 부분이 이 둘레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산정이 되고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 보건 쪽에 가치가 높다 하면 그쪽 부분에 중점을 뒀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사회적인 측면이라든가 각각의 그런 가치를 산정해서 필요한 액션들을 취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기준에 둘레길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현재까지는 둘레길에 대한 연구조사를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만들어만 냈는데, 그다음에 어떤 필요한 부분 보완공사라든가 필요하다 싶어서 조사가 러프하게 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판이라든가 안내체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민들의 이용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용 만족도 조사 매년 계속하고 있어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학술용역으로 가야 할까요?

그냥 일반 용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제가 보기에 학술용역으로 해야 할 부분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기술용역에 대한 필요성도 같이 검토해 봤는데요.

실제 기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섭외를 사전에 해봤습니다만, 이 가치를 갖다가 산정할 수 있는 기술자들은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산에 있어서의 어떤 숲길 이런 거에 대한 가치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분을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스킬이 있는 걸로, 툴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좀 더 좋은 둘레길로 만들어 보고자 학술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 원 장

이쪽에 대한 질문 없으시면, 다음 용역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복지에 대한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2014년에 유사하다면 유사한 용역이 실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조사비 활용에 대해서 그때 용역하고 지금 현재 제시하신 산림복지 증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서의 다른 점을 조사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조사비가 10% 책정이 됐는데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그 당시 2014년도에 서울연구원에서 한 부분은, 서울의 녹색자원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녹색복지 기준 및 지표수립에 대한 학술연구였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도 활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특히 저희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지혜택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2014년도에 마련된 기준과 지표 수립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이 용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연구 결과가 지금 산림복지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예, 산림복지지구라는 것이 기준으로다가 80ha 이상 정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 공유지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복지지구로 지정할 대상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가 서울시에 어느 정도나 될지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각 대상지별로 기존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시설들 간에 어떤 연계성이라든가 상호 조화성,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주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어린애, 청소년, 어른, 나중에 실버 때까지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

는 시스템적인 체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용역에서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000 위원

지구 지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산림청장이 합니다.

위 원 장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

이게 산림복지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또 시설을 갖다가 만드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11호, 12호 안전설명자A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시에서 지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복지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따지게 되면, 거기에는 산림복지단지라는 것이 휴양림이라든가 하는 어떤 스테이, 숙박개념을 갖다가 거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산림청하고도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보니까, 실제 약간의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을 해 가지고, 숙박에 대한 것들이 지방 쪽에서 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만약에 산에다 넣는다고 한다면, 저희도 물론 인정이 안 되겠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인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서울형 산림복지단지라든가, 서울형 산림복지지구라는 개념 하에, 저희들이 서울시로서만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산림복지지구, 단지를 계획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 원 장

질문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지역산림 조성관리계획, 그쪽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없으신 것 같은데,

000 위원

제가 한 가지, 여기 보면 지금 다른 용역하고 달리 이 경우는 책임연구원이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책임연구원 한 명에 보조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 3명씩이나 있는 이유는 뭐죠?

제13호 안전설명자A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관리법 제3조,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해서 저희 용역이 3건입니다.

3건을 주용역자를 정해서 가다 보니까, 산림 용역을 하는 주연구원은 3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끔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주를 두고 부를 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3건의 용역이 한 건으로,

제13호 안전설명자A

예, 한 건으로 묶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지역산림하고 산지관리지역하고 도시림 이 3개를 묶는다는 거죠?

제13호 안전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산림계획이 주가 되고, 산림관리지역계획은 부, 도시림에 관한 계획도 부가 돼서, 3건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위 원 장

그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제13호 안전설명자A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000 위원

그게 따로따로 발주를 안 하고 한꺼번에 이거를 묶어서 하는 거죠?

제13호 안전설명자A

그렇게 됐을 때는 같은 용역을, 기초조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세 군데

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도 더 들어가고 효율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 하나로 묶어서 기초조사를 이용하려고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팀장님들하고 발표자들은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질문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11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서울둘레길에 대해서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전문은 아닌데, 저는 4,000만원으로 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4,000만원 정도에서 사실 ‘이 가치분석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한다.’라는 건,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 시민들의 만족이, ‘단순한 만족도라고 했다면 이 만족도의 분석평가를 좀 다른 형태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적정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000 위원

저희가 봤을 때 이 내용상으로 보면, 현재 둘레 길의 이 내용 안에 보면 가치를 분석해서, 그걸 계량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활용도가 일단 낮은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현재 둘레길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현재 이용자 만족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

서 틀리거나 맞거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굳이 학술용역을 할 필요도 없고, 제가 볼 때 여기서 근거법령을 둔 게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산림의 사회적, 문화적이 중시됨에 따라서 산림자원을 다양화해서 경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경영 관리니까 이걸 계량화해서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이걸 포괄적으로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그런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지, 굳이 계량화해서 홍보하는 건 학술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도 이게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기 전이 아니라 이미 둘레길이다 완성이 됐고 3년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만족도 조사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맞지 사실 이걸 이렇게,

000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아까 물어봤더니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조사비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조사비가 굉장히 작고, 이 연구비가 전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것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연구에 집중하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죠.

000 위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둘레길 길이가 약 157km 정도 되는 건데, 여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태가 아무래도 어디가 불편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개선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000 위원

지금 이용 만족도랑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러면 이용 만족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잘 분류하면 만족도의 조사 내용들을 바꾸면 굉장히 많은 걸 끄집어 나갈 수 있고, 말씀하신 게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게, 굳이 가치분석까지도 조사원도 얼마 안 되는 형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거기서는 조금 고민이 되네요.

위 원 장

그런데 이 연구가 필요한가요?

000 위원

저는 지금 들어보면서, 조사도 쪽 하셨다니까 만족도 하셨다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000 위원

과업 내용 자체가.

위 원 장

이 연구가 시장님 홍보 말고는,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 분석이라는 게 무슨 톨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뭐하러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용 활성화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아서 잘 걷고 있는데, 그걸 또 굳이 더 걷자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분명히 상인들이 물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할 거니까, 특별히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심교수님 끄떡거리시면 안 되죠.

000 위원

아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걸 잘 몰랐다.

그런데 저는 만족도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건줄 알았어요.

그러면 조사가 필요하겠나라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하셨냐 했더니 하고 있다고 그러시길래, 굳이 하고 있다라면 여기서 이
결 왜.

000 위원

그런 만족도 조사도 하지만, 지금 시에서 시민평가단도 많고 감사과에
시민 ombudsman도 있거든요.

그분들 활용해서 하셔도 되거든요.

위 원 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굳이 뭐하러 하는 거죠?

000 위원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 원 장

제가 뭐 강요할 건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000 위원

예.

000 위원

거기다가 과업내용 이게 이용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해 가지고 그걸 홍
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길 이만큼 km당 얼마나 우리가 경제적 가
치가 나오는지 그런 걸 한다는 건지 내용도, 그리고 그게 홍보내용으로
그렇게 들을, 이게 둘레길이라는 건 사실은 돈 때문에 저기하는 건 아
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 부분들에서는 그런 것들로 가 있어서, 별로 타당하지가 않
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11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각자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도록 하시죠.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간 사

한 분.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2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그다음에 산림복지 증진방안에 대한 용역심의를 하겠습니다.
주심위원님.

000 위원

이건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일단 검토결과는 걱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망설임 걱정이라
는 판이 없어서 일단 걱정이라고 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유사한 용역이 14년에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자료 활용으로 되는 용역인 것 같은데, 원가계산서에 보
면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논의했던 75%에 해당하는 용역 인건비하고
요, 10% 정도 되는 조사비가 들어가서 지금 이 원가계산서를 보면 최
소한의 조사로 자료에 의한 보고서 양식인 것 같은데, 그다음 과제하고
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활용계획 범위에서는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걱정이긴 하나, 저의 의견은 망설임 걱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위 원 장

산림복지라는 게 사람 입장에서의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 입장에서의 복지가 아니고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힐링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
얘기하는 거죠?

000 위원

관점은 저희 관점입니다.

000 위원

이게 지금 아까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금 산림복지

지구를 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2015년도에 법을 만들어 갖고 산림복지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지정 요건은 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으면 우리는 이거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시계획을 받고, 현재 법적으로 그게 제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각각의 개발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개발할 것이 서울시 전역을 가지고 산림복지지구로 우리가 지정권자도 아닌데, 우리가 지정하는 영역은 별로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주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녹색복지기준 및 지표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그 기준에 맞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 이걸 굳이 학술용역 할 필요도 없고, 또 세 번째 지역산림, 산지관리, 도시림 계획 여기서도 어차피 여건 변화에 따라서,

위 원 장

같은 거 아니에요?

000 위원

밑에 건 법정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면도 있고, 기존 선행연구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증진방안을 마련한다 그래도 사실 국공유지가 다 같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방안을 해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 상위법에 다 걸리잖아요.

제12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간 사

아무도 없습니다.

제13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그러면 조성관리 계획 쪽으로 가겠습니다.
주심위원님.

000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는데요.
이건 아까 000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법정계획의 일부로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또 전 안건에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걱정 판단하였습니다.

위 원 장

이거는 사실 아까 산림복지하고 조성관리계획하고는 팀이 다른 팀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보고,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과장님 밑에 있는 팀들이니까, 같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000 위원

그런데 같은 과장이라도 그게 조금씩 나뉘잖아요.

000 위원

트렌드가 산림복지하면 활용 쪽을 담당하시고,

위 원 장

그러면 이건 보호 쪽인가요?

000 위원

물론 산림복지에서 활용 쪽에 들어가긴 하는데, 비중이 더 보호 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내부적으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따로 뭐 ‘이걸 같이 더 해라.’ 그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000 위원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 용역 금액 내에서 과업범위를 추가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맡기고, 우리는 심의만 하면 되겠네요.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간 사

여덟 분.

위 원 장

이 안건은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4호 안건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제14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앉으십시오.
팀장님 간단한 개요 부탁드립니다.

제14호 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연구과제는, 현재 서울 장애인복지관에서 2년간 시범 운영 중인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용자 종사자를 위한 운영매뉴얼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업은 자해라든지 타해와 같은 도전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그간 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던 정말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분들 개개인별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낮 시간 때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장애계의 관심이 매우 지대합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없어서, 어떤 성과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반드시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기간이 끝나고 본 사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운영매뉴얼을 개발해서 정말 이 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복지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이번 연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저희 연구 내용은, 사업평가와 운영매뉴얼 개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과에 대한 평가는, 네 가지 주체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용자 분들이 얼마나 도전적 행동이 빈도나 강도에 있어서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 가족 분들은 양육 스트레스나 돌봄 부담이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 세 번째는 복지관 종사자 분들이 얼마만큼 이분들을 대하는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훈련된 정도가 좋아졌는지, 그리고 동료 직원이나 상급자인 슈퍼바이저분들의 인식의 변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인 사업으로서의 확장성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게 복지관이나 가정이나 조금 더 구조화되고 안정적인 낮활동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운영매뉴얼까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번 연구내용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40명을 시설에 받아들이신 거죠?

제14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

이 40명을 받아들인 기준은 뭐니까?

제14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사실 복지관에서 단순히 이렇게 이용자를 뽑으면 복지관에서 이용자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한 기관은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에서 이분들을 평가하였고요. 이분들의 그간의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일단 확인을 했고, 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낸 다음에는 도전적 행동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이분들이 치료기관으로 가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복지관으로 와서 우리가 돌봄을 해줘야 될 대상인지, 그런 것들이 전문적인 사전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다 점수를 매겼고요.

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 40명을 저희가 선정하였습니다.

위 원 장

쉽게 얘기하면, 시설에 입소하기에 가장 적당한 분들을 입소를 시킨 거네요.

제14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설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라는 전문기관에서 결정을 하였고요.

위 원 장

아니요, 제가 여쭙보고 싶은 거는, 이 들어가신 분들이 발달장애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보니, 그런 데에 입소하기에 적당한 분들에 대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했을 경우에 달라질 수 있을 여지가 있다는 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샘플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제일 순한 분들을 입소시켜 놓고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해보면, 그게 진짜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제14호 안건설명자A

저희 이용자 같은 경우는, 정말 주간보호시설이나 발달장애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정말 이분들을 거부하신, 정말 최종증 중에 최종증을 저희가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시설 이용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먼저 봤고요. 그리고 도전적 행동이라고 해서 타인이랑 같이 시설에서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정말 자기를 공격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이런 강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위 원 장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요즘에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의 위치에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번 보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진짜로 반대를 하는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괜찮은 거 보고 조금 안심을 하셔서 이런 시설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고 반응을 하시는지 하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이분들에 대한 성과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 인식도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본 거였습니다.

제14호 안건설명자B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복지관은 낮 동안에 재가장애인인들, 집에서 이용하셔서 계시는 분들이 낮 동안에 복지관에 오셔서 복지 서비스를 주로 받는 곳인데, 사실 이분들은 경증, 걸어서 오실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분들은, 그동안 사실 소외되고 낙후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아니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낙인감이 큰 분들이 가정에서 더 이상 돌봄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지역사회에 같이 오셔서 지역에 계신 분들과 복지관에서 어떻게 낮 동안에 즐겁게, 이분들이 아마 평생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존재감 있는 개인으로 오셔서 낮 동안에 좀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지역사회에 이분들이 사실 무섭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분들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복지관에 와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지역에 와서 많이 좋아졌다는 인식의 변화도 저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을 안건 같아서, 되셨습니다.
밖에 나가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끼리 토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14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주심위원님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동정심에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시범사업이니까요.

위 원 장

이건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드네요.

제14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아홉 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5호 안건

서울거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15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팀장님 안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15호 안건설명자A

가족지원팀장 안경천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거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고 가족 개념 등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한부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금 마땅한 정책이 없는데요. 현재 고립된 양육환경과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그다음에 취약한 주거 안정 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한데,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류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조례를 제정한 이후, 한 번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그간 소외되었던 한부모가족 정책에 대해서 보다 탄실하게 계기를 만들고자 저희가 용역을 준비했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께서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없으세요?

000 위원

일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하지 않나요?

제15호 안건설명자A

저희 서울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국가에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은

2015년도에 했었는데 전국 단위로 했고, 서울시는 샘플이 한 200명 정도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담론적 수준에서 현황 파악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 건지, 뭐를 줘야 이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원 장

예,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기존의 여가부나 이런 데서 하는 거랑 차이점이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을 샘플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조사한다는 거예요?

제15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전수조사 하려면 1억5,000 가지고는 부족하고요.

저희가 샘플링을 하되, 각 지역별로 골고루 나누어서 샘플링을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정책 부서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부터 지금 계속,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먼저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통해서 제대로 된 한부모가족 정책을 펴고 싶거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것, 기존의 사회복지지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이나 아동정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가 아직, 이제 갖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전국 단위로 하는 여가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서울시 대도시 나름대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과 아동분야에 더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한부모가족이라고 했을 때, 지금 애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십니까?

제15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 서울시 가구의 한 1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그 10% 중에서도 한 4만 가구, 그러니까 서울시 한부모 가족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10%에 또 다시 10.5% 정도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위소득 2% 이하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렇게 갈 수가 있나요?

샘플링이 가능하나요?

주민등록을 보고,

제15호 안건설명자A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10.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제15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행정망을 통해서 한부모 가족을 저희가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샘플링을 이 10.5%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에, 다양한 계층을 샘플링한다는 얘기죠?

제15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건 전문연구기관하고 상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1억5,000이라는 돈을 산정했을 때, 굉장히 사실 학계에서는 적은 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 한번 해보자, 1억5,000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약 더 많은 분야를 한다면 내년에도 한 번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1억5,000 정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저희가 예산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000 위원 이게 서울시 전 지역을 하는데 1억5,000밖에 안 한다는 건 너무 적네요.

제15호 안건설명자A

저도 너무 작다고는 생각하는데요.

000 위원

그러니까 정책 도출까지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시길래 실질적 정책 도출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실 수가 있을까.

제15호 안건설명자A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많이 구하고 싶은데, 복지서비스를 할 때 실질적으로는 한부모시설 25개가 있습니다, 시설복지서비스를 하는 게 있고 재가서비스인데, 실제로 시설복지서비스는 저희가 잘하고 있지만, 재가에 있는 한부모들을 사실 저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욕구가 뭔지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가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얼마가 소요가 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욕심을 낼 수가 없어서, 저희는 작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기회를 주시면,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또 보완해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000 위원

이게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보면, 사람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제15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보조원은 한 명도 안 넣고 연구보조원 1명, 연구원 2명 책임연구원 1명 이렇게 4명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48%밖에 안 잡히고, 그다음에 경비에서 많이 잡혔어요.

조사, 정리원 경비해서 경비에서 6,700만원을 잡아놨어요.

제가 보기에 사람을 더, 이게 서울시 전체를 할 경우에 여러 명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해야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00 위원

아니면 저희 25개 자치구에 요즘에는 찾아가는 동 서비스 이런 것도 많잖아요.

자치구랑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자치구에 동을,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으시면 특별히 이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15호 안건설명자A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찾동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한부모나 취약계층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또 저희는 한부모지원센터가 있는데 한부모지원센터에서 그들이 생활코디네이터라서 그들의 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조모임을 통해서 눈덩이표집을 하면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 돈을 적게 책정한 것은, 저희가 사실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 예산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가구 조사를 노인과인가 어디서 해봤는데, 그때는 샘플링이 좀 작긴 했지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도 1인 가구 조사에 약간 비교해서 한 1억5,000이면 초창기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위원님들이 많이 넣어주시면 저희는 더 좋겠습니다.

000 위원

연구보조원을 한 명만 넣어가지고 서울시 전체를 조사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15호 안건설명자A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문 연구기관하고, 이게 만약에 채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튼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000 위원

실태조사야 전수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표본을 얼마나 정확하게 샘플링 하나에 따라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조사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 나왔던 대로 찾동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먼저 여가 부에서 하고 있는 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좀 다르다고 했는데, 사실 시하고 도 단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같은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충분히 시사점 같은 건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조사를 해서 정책을 수립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국비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제15호 안건설명자A

예,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라는 걸 서울시 순수 100% 전액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저희 가장 자랑할 만 한 게 생활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한부모가족 출신인데, 이분은 자녀를 키우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인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멘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새로 한부모로 진입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

들에게 정보도 제공해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부모들끼리 네트워킹을 잘 만들어서 그분들이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때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선도적으로 한부모나 미혼모, 특히 저희는 10대 미혼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선도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욕구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시민단체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하고 샘플링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한번 시도를 저희가 해보고 싶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팀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15호 안전 심의

위 원 장

000 위원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죠?

000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여가부에서 매년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따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럼 만일 한다 그러면 아까 찾동이나 이런 거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고, 어차피 그거에 대한, 그리고 내년도에도 여가부에서 내년도 용역을 시행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똑같은 동일한 실태조사를 전국에서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굳이 그렇게 시기적으로도 똑같은 시기에 중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서울시의 한부모가족의 특징이 한국의 한부모가족 특징과 차이가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만일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해줄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사회복지과가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는 것 말고는,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서 결혼시킬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교육은 다른 부처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000 위원

여기 서울시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대부분 다 기초수급자나 지원체계를 갖춘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인 거지, 사실 그 외에는,

위 원 장

경계에 있는 분들이요?

000 위원

예.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저는 그냥 선제적으로 한번 정도, 왜냐하면 여태까지 5년을 했어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한 번 정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위 원 장

아까 1억5,000이 자꾸 적다고 했는데,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000 위원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000 위원

연구보조원이 한 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한 명이 과연 할 수 있겠나.

위 원 장

보조원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전수조사는 안 할 거니까, 샘플링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우리 같으면 3,000만원이면 충분히 하는 건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000 위원께서도 별로 긍정적으로 말씀 안 하셨는데요.

000 위원

사실 조금 고민 중입니다.

아까 얘기는 다 했는데, 기존에 여가부에서 조사한 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과연 추출해 낼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거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정책 부분이 뭐냐라는 거를 했을 때, 대부분 국비 매칭으로 지원사업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되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진짜 필요한 정책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내버려 둘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좀 왔다 갔다 해요, 줄지 말지.

위 원 장

저는 한다면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심층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참 이 용역의 결과가 좋냐, 나쁘냐 하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복지 문제는 하면 할수록 좋긴 한데, 낭비적인 요소도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000 위원

조건부로 해서 그러면, 사실은 한부모 가정지원센터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실 저도 000 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선제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 정부에서 하는 것만 갈 것이냐.

그런데 만에 하나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 할지라도 복지 분야, 복지위원회에서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과업내용에도 보면 한부모가족 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환경 분석 및 예측도 있거든요, 향후 전망도 있고요.

조건부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제15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열분 중에 다섯 분이러서요.

위 원 장

안타깝게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16호 안건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제16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6호 안건설명자A

저는 복지정책팀장 변경옥입니다.

저희 연구 제목이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인데
요.

이 용역은 저희 법률과 조례상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저희 조
례상으로는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에 따라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저희가 서울시민 복지수준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해
오고 있었고, 이걸 진행이 2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
고 나서 또 조례가 올해 시행이 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 간 복지격차 파악을 위해서 조사가 응모가 된 사항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합리성의 보장이 될 것 같고, 이 과업내용으로는 서울시민 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는데, 표본대상이 한 4,000가구 이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조사내용이 생활실태 쪽으로는 주거라든가 건강, 경제 활동 부분, 복지 욕구로는 복지정책 방향이라든가 시민의 복지 선호도,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그다음에 복지정책 성과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차별 목표 도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격차 지표라든가 비형평 계수, 수요공급 지수 분석 이런 것들로 해서, 각 정책 목표 개발을 목적으로 본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혹시 아이탬 중에, 조사하는 아이탬 중에 가정 형태 같은 게 있습니까?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제16호 안건설명자A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태조사 부분에 생활실태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 원 장

생활실태에 한부모가족이나 아니냐가 들어갑니까?

제16호 안건설명자A

예,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그런 형태가 만일에 없다면 그 안에 그 데이터가 조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16호 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너무 명확하셔서 질문이 없네요.

000 위원

지금 2년마다 하는 거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팔로업이 되고 있나요?

제16호 안건설명자A

2015년에 실태조사한 거 말씀이신가요?

000 위원

예.

제16호 안건설명자A

2015년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번이 4기인데 그전 3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전 3기 한 4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의회에도 제출을 하고 중앙부처에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원 장

그게 무슨 변화가 온 게 있나요?

계획을 짜시는데, 그 조사한 거를 피드백해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구나.’ 해서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뀐 내용이 있으시나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자꾸 하시는 것보다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냥 조사만 하시면 의미가 없지요.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16호 안건설명자A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서울연구원에서 2015년에 했고, 좀 더 보완시켜서 새로운 걸로요.

위 원 장

그건 서울연구원이 할 게 아니라 팀장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000 위원

저도 복지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 내용 보니까 굉장히 그랜드한 연구 같아요.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이러니까, 마치 선거공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역이라는 게 권역, 생활권,

제16호 안건설명자A

여기서는 저희가 작년에 격차 해소 부분은, 자치구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들이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고 자치구별로 얼마나 격차가 있는지,

000 위원

자치구를 지역 단위로 보시는 거고요?

제16호 안건설명자A

다 조사했습니다.

000 위원

격차 해소라는 건 여기에 지표가 있나 보죠?

비형평성 계수, 수요공급 지수 이런 게 격차 지표가 됩니까?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가요?

제16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형평성 계수를 1부터 무한수로 하는데, 10이 넘으면 형평이 떨어진다고 저희가 작년에 결과 분석을 한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지표로, 수요지표라든가 공급지표, 성과지표를 토대로 해서 만들었고, 시설이 일반 영유아시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전체 분야별로 다 조사를 해서, 청소년 활동시설 면적당 청소년 수 이런 게 조금 비형평이 높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면적당 장애인 수 이런 게 비형평으로 나왔었습니다.

000 위원

2016년 연구 결과 이 격차지표에 인프라 공급 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제16호 안건설명자A

아까 말씀드린 유형별로,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봤을 때 어린이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 노인 같은 경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이용하는 시민시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팀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 퇴장)

제16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이게 2년마다 그냥 하는 건가요?

위 원 장

예, 하는 건가 봐요.
그런데 하기만 하고 결과는 별로 활용 안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요.

000 위원

이 연구용역이 실제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가,

위 원 장

그게 참 중요한데요.

000 위원

예, 연구용역만 계속 2년마다 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000 위원

이게 무슨 법적 사항은 아니죠?

000 위원

조례에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2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걸로,

위 원 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팀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고민을 하셔야 될 문
제인데.

000 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16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제일 필요한 건데, 아무튼 빨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여섯 분 걱정이십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먹거리 하겠습니다.

제17호 안건

서울시 먹거리보장 구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연구

제17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17호 안건설명자A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

팀장님, 이 안건은 한번 부적정으로 된 거죠, 그렇죠?

제17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그래서 그때 지적한 게 뭐였고, 그래서 다시 낸 이유가 뭐다 하는 말씀만을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제17호 안건설명자A

지적하신 사항은 과업내용이 좀 계약적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과업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비가 인건비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요, 저희가 조사비, 그러니까 이 용역의 특성상 조사비 쪽으로 인건비가 더 치중되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을 주셔서, 조사비로 용역비를 더 늘렸습니다.

또 계약방법도 수의계약보다는 제한경쟁이 좋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한경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용역명도 저희가 먹거리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먹거리 취약계층보단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낫지 않냐라고 제시를 주셔서요, 저희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연구로 제목도 변경하였습니다.

위 원 장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제17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000 가구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출했을 때 당시에는,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넣지 못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표본설계와 조사방법과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서, 조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하였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당초에도 용역기간이 10개월이었어요?

제17호 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그럼 용역기간이 10개월이고 사람은 똑같이 쓰는데 인건비 조정을 54%에서 45% 되면 다운되어야 되는데, 4,2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 조사비 증액이 4,2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두 배 증액되었네요.

제17호 안건설명자A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인건비를 다운을 시키고 조사비 증액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말씀,

000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용역기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은 똑같고 개월수 똑같은데, 인건비가 더 올라갔다는, 그러니까 경비에서 올라갔다는 건 안 맞다는 거죠.

제17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인건비를 15% 정도, 보통 50%로 학술용역 단가 계산에서 50%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한 15%로 좀 내려서 조사비, 실질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건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제17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이 안건도 지난번에 부적정으로 심의가 돼서, 다시 고쳐서 갖고 온 안

건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실 게 없으시죠?

000 위원

그때 나왔던 부분 보완을 다 해서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할 때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란거리가 됐었던 부분이 있고요.

위 원 장

저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안건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7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열분 다 걱정이십니다.

위 원 장

예,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에 식생활환경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제18호 안건

서울로 식생활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발전방안 연구

제18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이 안건도 지난번에 안 돼서 재심의하는 안건입니다.

그때 지적사항 좀 설명해 주시고요, 어떻게 고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8호 안건설명자A

그때 지난번 용역에서 용역의 성격을 정립하고 과업내용을 조정하고 용역비를 조정하고 과업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심의 요청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니터링 결과를 관계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서, 서울로의 식생 및 생태환경 개선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생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들도 추가하였고요.

모니터링 내용에서는, 바람에 대한 모니터링 내용을 좀 더 추가했습니다.

용역비는 당초 1억1,7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2,700만원을 감축하였고요.

제목도 식생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서울로 개선 발전방안 연구로 내용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 아는 거라 별로 말씀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설명자 퇴장)

제18호 안건 심의

위 원 장

주심교수님, 검토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예, 제가 주심을 봤는데요.

일단 제목이랑 이런 게 좀 바뀌긴 해도 내용은 식생구조나 여기에 관련된 생물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개장이 6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식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나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이 왜 학술용역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하고 다시 시비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저는 일단 부적정으로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위 원 장

혹시 000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00 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데, 하자 부분은 시설공사나 이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생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하자보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서울로를 개장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도출이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이거를 한 1년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식생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방안들을 찾아보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쨌든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고, 이게 최대한 시민들이 찾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한 번 정도는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을 꼭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 원 장

000 위원님은 특별하게, 임 팀장님은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000 위원

예, 없습니다.

위 원 장

000 위원께서 어떻습니까?

000 위원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 원 장

평가 쪽에서도 말씀 없으시고요?

000 위원

예.

000 위원

이게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식생 관련해서는 조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우리 주심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미 서울로를 개장하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연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미 서울로라는 공간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그들도 전혀 없고.

그런데 그것을 조경과에서 당연히 담당자들이 해야 될 것을 학술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문이에요.

000 위원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그게 어쨌든 지금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게 하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사전에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아쉬운 점대로 그냥 별개의 문제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조성을 할 때는 조경과에서 했는데, 일단 서울로 운영단 자체가 별도로 이 관리를 위해서 출범을 했고, 거기 녹지나 이런 관련된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서울로 운영단 자체가 푸른도시국 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국 밑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별도로 운영단을 안 했으면 관리하는 조경과나 이런 데서 했겠지만, 별도로 관리부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운영단에서 서울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000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이원화시키는 거잖아요.

새로운 조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서울로 운영단으로.

그런데 저희도 보면, 식생에 관련해서 자치구에서도 조경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서울시가 더 나아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굳이 운영단에서 할 게 아니라 운영단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경과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자문이나 어떤 결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로 운영단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이게 식생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서울로 전체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거면 모르는데, 식생환경에 대한 거라면 굳이 학술용역이 아니어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저는.

이게 학술용역이 꼭 필요한 건가요?

000 위원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방어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000 위원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실무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지금 보통 식물들이 땅 위에 있는데 이걸 고가 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나 그런 모니터링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부서 의견이거든요.

000 위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벽면 녹화 사업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거에 대해 자문을 얻었어요.

대부분 푸른국에 있거나 조경과에 있는 분들이 기술 공무원이지않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해박하시더라고요.

000 위원

사실 뭐 서울로야 고가에 해놔서 그렇지만, 일반 빌딩들에도 두탑에 요즘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걸 꼭 그렇게 식생까지,

000 위원

이게 식상한 식생환경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10월부터 시작되는 건데, 10월 달부터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동식물 개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지금 전체 환경은 시멘트라고 하지만 화분 상태 이거는 다 알려져 있는 식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또 모니터링 매뉴얼을 제작하고, 저는 이게 학술용역은 아닐 것 같아요.

일부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 대처한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그리고 만약에 모니터링한다 해도 1년 뒤거나 아니면 2년 뒤거나 충분히 데이터가 쌓일 만한 때부터 시작을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00 위원

서울로 운영단에서는 이런 모니터링을 하지 않나요?

000 위원

이 모니터링 자체는 여기에 붙어 갖고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체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로라는 게 이 식생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고요.

전체 운영에 대한 관리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얽혀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 자체가 도심의 고가라는 부분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문화나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되는 부분들, 지금 인력이 한 20명 정도 단장까지 해서 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식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20명이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이런 인력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안전총괄본부에서 이 조직이 있어 갖고 조성을 할 때는 만들어 냈고요.

지금은 푸른도시국 산하로 이 조직을 옮겨놓은 거거든요,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그런데 처음에 나름대로 이 환경 자체도 예상 못했던 건 아니고, 그 예상하는 환경 하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빗나가는 부분들이 식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걸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000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과업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계절 변화를 또

보겠다는 거예요.

식물들의 계절별 경관 변화를 보는데, 5개월이 지나는데 어떻게 사계절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위 원 장

연구기간은 11개월인데요.

10월부터 8월까지 꽤 있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나눠야 되는,

000 위원

넘어가는 거죠.

000 위원

이게 사실 오버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18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판단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서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다섯 분.

위 원 장

그럼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그렇게 해도 되죠?

000 위원

그러시죠.

제4호 안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제5호 안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제6호 안건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ETEC 일대 종합관리방안

제4, 5, 6호 안건 설명

위 원 장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 같은 과이시기도 하고요.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어느 팀장님이, 예.

그다음에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 팀장님이 시고, MICE산업은, 예.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능한 빨리 해주십시오.

제4호, 6호 안건설명자A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5년마다 용도지역의 운영기준과 변경 원칙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은 2년간 장기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년도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작년에 학술용역심의 결과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런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가 뭍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2차년도 예상분은 별도 심의를 하라는 조건이 나와서 금회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건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5호 안건설명자A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은, 도시여건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법에 의한 도시계획 체계는 십수년간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특별법이라든지 정비 관

런 경우에도 굉장히 특별한 규정들이 뉴스테이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내부 행정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 특히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 공간 안에서의 계획과 사업에 대한 정합성이나 계획의 효율적 추진, 사업의 연계성 이런 부분도 확보가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에서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이런 신규 기초 R&D 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 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도시공간계획, 국제법에 의한 계획 체계, 도시관리 체계하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정비사업이 돌아가는 체계를 상호 비교 분석을 해서, 그간의 상호 정합성을 맞추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출을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거버넌스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에서 주민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또 도시재생에서도 별도로 사업지마다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통합 연계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MICE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4호, 6호 안전설명자A

마지막 과업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세택과 주변 부지에 대한 향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세택 부지는 아시다시피 현재 가설건축물로 지금까지 사용이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연장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당장의 정비가 시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현재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들도 통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현재 시 내부적으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그 세택 부지 일대에 대한 계획을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방향을 설정해서, 현재 1차년도 과업이 이 용역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로 1차년도 과업은 이미 시작한 상황이 되겠는데, 다만 1차년도 과업에 대한 예산은, 기초실의 포괄 예산으로 현재 확보를 해서 이미 착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2차년도분에 관한 예산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별도 예산으로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현재 당장의 개발이 필요한 세텍 부지와 바로 인접한 부지의 개발 계획 그리고 내년까지, 지금 당장에는 개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개발 논의가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SK 코원 부지 이런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질문,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에 대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여건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죠.

4차 산업혁명, 도시재생 뉴딜, GTX 연결,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필요한 용역인데, 연구내용이 저희한테 있는 거 보면, 통합적 계획 사업 운영체계를 재정립하겠다.

통합된 도시관리 모델을 제시하겠다.

일체적 효율적 연계 모델을 검토하겠다.

조금 이렇게 그랜드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통합적이라는 말은 목표가 뭘지, 혹은 현재 시스템이 분절적이라는 얘기인데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표현들이 모호한 것 같아서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제5호 안건설명자A

실제 사례를 보면 국제법상에 도시관리계획을 10년, 20년을 목표로 두고 어떤 지역 일대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결국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그것과 관련성 없이 그런 공간들 안에서 개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을 같이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단 자체를 모르거나 그냥 사업으로 끝이 나는 형태가 돼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5년을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 목표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두 체계가 하나는 중장기 관리, 하나는 5년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이런 형태로 별개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뭔가 큰 차원의 연계성을 만들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정책 제안인가요?

제5호 안건설명자A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시 내부적으로 조정하거나 뭔가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만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재생특별법상에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정부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000 위원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정합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역들이 기본계획 모니터링, 도시 재생 모니터링, 재생 전략계획 같은 것들이 어떻게 차별화되는 거죠?

제5호 안건설명자A

모니터링을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하위에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지, 서울 전역에 생활권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각 재생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별도의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체계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역할이 정확하게 나누어져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정리를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000 위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오면 개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연구 결과 활용하는 걸 어떤 걸 갖고 해야 합니까?

참고자료로 하는 겁니까?

제5호 안건설명자A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때 지금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이 2014년도 5월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도시재생 특별법이 막 들어오던 시점이었고요.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는 도시재생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수준의 텍스트 형태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하면 그 파트도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국토부에도 이런 부분에 도시정책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쪽은 여력이 없다는, 예산적으로도 여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시 차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용역에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부분들이 사실 분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들어온 용역하고도.

제5호 안건설명자A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사실은 2030 서울플랜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30 서울플랜의 모니터링은, 도시 변화를 진단하고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와 그 목표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고, 그것들을 측정하고 왜 지표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향상이 됐는지 떨어졌는지 분석하고 정책의 어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이 모니터링 용역을 할 때는 새로운 그런 변화를 단순히 분석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추가적인 의제들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 과정에서 서울시 안에 여러 가지 새롭게 발생하는, 물론 도시재생도 포함이 됩니다.

정책이슈들을 필터링해서 향후 도시기본계획 할 때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필터링하는 내용을 올해, 내년도 이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심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적인 도시관리체계 간의 관계와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 원 장

6번 MICE로 넘어가죠.

MICE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역 같습니다.

세택 일대, MICE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서울시 인구는 감소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성장산업의 역할이 더 고도화되는 거죠.

중요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입지 특성, 교통환경 측면, 현안 분

석, 관련계획 상위계획 검토, 그다음 뒤에 가면 지구계획에 관한 거고, MICE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MICE가 뭔지, 국가에서 MICE 차지하는 역할이 뭔지, 서울시에서 MICE 역할이 뭔지, MICE산업이 가져오는 고용효과, 교통의 진출입, 교통량 발생, MICE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사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나
요?

제4호, 6호 안전설명자A

사실 사전에 연구가 있어서는 아니고 지금 이 과업지시서상에서는 살짝 문구상에서는 누락돼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 MICE산업 생태계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검토사항으로 다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과업을 이미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MICE 전문가 분들을 모셔놓은 전문가 자문단을 지금 이미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지금 실제 MICE산업을 담당하는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참석하도록 해서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그 MICE산업 생태계에 따른 적정 수요라든지 규모를 결정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명자 퇴장)

제4호, 5호, 6호 안전 심의 및 결론

위 원 장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주심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000 위원

예, 여기에 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이 없으실 만한 안건일 것 같아서, 바로 심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열 분 다 적정이십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입니다.

역시 000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예, 이거는 모니터링에 대해서 아까 조금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재생사업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본계획 관리계획체계 사이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과거에 했던 도시 기본계획 모니터링하고 틀리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 원 장

필요는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000 위원

예,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000 위원

이거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거는, 지금 뭐 사실은 과거 서울시에서 하던 도시재생하고는 좀 틀리죠.

우리 동네 살리기라든가 굉장히 마이크로한 스케일의 재생이 벌어지고 있고, 과거에 했던 전략계획이라든가 재생 모니터링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해가 됩니다.

000 위원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용역 사업인가요?
'도시계획 체계를 재정립한다.'라고 하는 게,

000 위원

그래서 계획 체계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건데, 재생법 개정에 반영시키겠다는 거죠, 활용 목표에 보면.

000 위원

아까 발표자께서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그거죠.
국토부에서 할 일인데 국토부가 안 해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한다.

000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굳이 선제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위 원 장

서울시가 미리 선제적으로 하면 도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모양이죠?

계획을 짜는데 굉장히 좋나요?

000 위원

사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공약 자체를 서울시가 제안한 거였는데, 지금은 배제가 되어 있죠, 부동산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일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연구는 새로운 연구라고 보여 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이라는 부분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별도로 가다가 현재 부서도 다른데, 이거를 굳이 서울시에서 현재 해야 되느냐,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러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 개정은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매몰 비용이 발생할 위험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필요하긴 한데, 주체하고 그런 매몰비용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기에 꼭 이걸 해

야 되느냐는 좀 고민이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사실 서울시에서 뉴딜정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또 아무리 정책을 내놨다고 해도 결국은 국토부하고의 협의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체계라든지 용도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고민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000 위원

지금의 도시재생법은 국토부가 하고 있는 클린재생, 경제기반 재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공약으로 나온 건 틀리거든요.

지금 국토부가 이번에 우리 동네 살리기 하고 있는 5가지하고는 또 틀립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도시재생 뉴딜을 실현하자면, 법령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지금 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1차관하고 서울시 부시장이 T/F를 이루어서 그런 걸 협의해 나갈 텐데, 가자면 들고 나갈 서울시의 대안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마 시급하게 필요한 거 아닌가.

000 위원

그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 부분은 도시재생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재생 뉴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문제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현재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어차피 도시재생 범위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위개념으로 생활권 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옆에 또 도시재생이라는 전략계획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지금 이 연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 원 장

의미는 있어 보이네요.

000 위원

예, 의미는 있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할 거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 실현 가능한 부분이냐.

000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이게 도시계획국에서 할 거냐, 재생본부에서 할 거냐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거를 재생본부에서 활용하면 안 되나요?

000 위원

여기서는 현재 활용하는 부분은, 도시기본계획 안에 그걸 넣겠다는 얘
기죠.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위 원 장

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여섯 분.

위 원 장

이 안건은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MICE산업입니다.

또 주심위원님.

000 위원

이거는 뭐 MICE산업에 대한 언급이 안 돼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니
그렇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실 것 같죠?

그럼 이 안건, 사실 저는 MICE가 뭔지 세택이 뭔지 헷갈려서, MICE가

뭔니까?

이게 의료 뭐 그런 거죠?

000 위원

그러니까 MICE산업이라는 게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로 해서, 국제회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위 원 장

세택은 어디예요?

000 위원

대치동 학여울역에 크게 있는 거요.

000 위원

지금 현재 가설건물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 MICE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000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00 위원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소프트웨어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MICE산업을 육성을 계속해서 하는 게 사실은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해요.

위 원 장

뭔지 알겠네요.

결정하십시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 수)

간 사

열 분 다 걱정이십니다.

위 원 장

예,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님, 오늘 나온 것들 정리를 해주십시오.

간 사

심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8건인데요.

적정이 13건, 13건 중에는 수정 의결된 사항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적정은 5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발표순서가 아니고, 나와 있는 심의안건 번호 순서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명 생략하고 안건번호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은 적정입니다.

열 분 적정입니다.

2번 안건도 열 분 적정인데, 여기 수정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번 안건도 적정입니다.

4번 안건도 열 분 다 적정하셔서 적정이고요.

5번 안건도 여섯 분 적정으로 적정이십니다.

6번 안건도 열분 적정으로 적정이고요.

7번 안건도 적정입니다.

8번 안건은 일곱 분이 부적정을 하셔서 부적정이고요.

9번 안건은 아홉 분 적정 의견을 주셔서 적정으로 됐습니다.

10번 안건은 여섯 분이 적정으로 하셔서 적정 처리됐고요.

11번, 12번은 부적정입니다.

13번은 적정인데 여덟 분이 적정 의견을 주셨습니다.

14번 아홉 분이 적정 의견을 주셔서 적정으로 의결됐습니다.

15번은 부적정입니다.

16번은 여섯 분이 적정 의견 주셔서 적정 의결됐습니다.

17번은 열 분 적정 의견 주셔서 적정으로 됐고요.

18번은 다섯 분이 부적정 하셔서 부적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오늘 참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안건 심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7년 9월 3차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2017. 9. 21.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작성자 000 위원 : 김정호 ☎2133-6720 시정연구팀장 : 박재민 ☎6740 담당 : 설정환 ☎6747

'17년도 9월 3차

학술용역심의회 회의록

〈회의 개요〉

- ◆ 일 시 : 2017. 9. 21(목) 14:00~18:00
- ◆ 장 소 : 공용회의실(신청사 8층)
- ◆ 참 석 : 13명 외부위원(9), 내부위원(4)
- ◆ 심의안건 : 18건
- ◆ 심의결과 : 적정 12건, 부적정 6건

2017년도 9월 3차 정기학술용역심의회

개 회 2017년9월21일(목) 14시

장 소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간 사

오늘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000 위원 시정연구팀장 박재민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신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위 원 장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서울시의회 000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서울시의회 000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대학교 000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박수!)

간 사

00연구소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반갑습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000 위원입니다.

(일동 박수!)

간 사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0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000 위원

안녕하세요.

(일동 박수!)

간 사

000 위원님은 회의일정으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정족수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13분의 위원 중에 현재 과반수가 넘는 12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000 교수님, 000 교수님, 000 교수님은 심의안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회 심의안건은 18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신규 16건과 금년도 추진예정인 학술용역 재심의안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총 18건 되겠습니다.

금회 정기학술용역심의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주심위원님과 내부위원의 안건별 사전검토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회 개최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심의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제상입니다.

오늘 안건 수가 많아서요,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심의에 대해서 적정여부는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것만 명심해 주시고요.

발표자가 발표를 하신 후에 통상은 주심교수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다 보면 가부간에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가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꼭 주심위원님 아니신 분들이 주로 질문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

2018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제1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경제담당관실에 정책팀장 노수임입니다.

위 원 장

앞으셔서요, 안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1호 안전설명

제1호안전설명자

예, 안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학술용역사업은요,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연구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으로 잡혀있고요.

사업비는 약 9,000만 원 정도로 산출을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이며, 이거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연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하게 경위는 제도상으로는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과 올해 데이터베이스로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담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 약간 신뢰성에 대한 담보가 없어서, 이 담보 있는 자료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각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범위는 서울시 소재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지원기관에 대해서도 대상은 잡고 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법에 따라서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배경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전화조사 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료가 협동조합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협동조합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정책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고 있고요.

특히 사업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인증이나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정확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방금 말씀드린 협동조합이나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소셜벤처가 서울시에 500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00개라는 숫자도 약간 추정치이고, 이 소셜벤처에 대한 5개년 계획에 지원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고용인원이나 규모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에 이 조사를 계획해서 자료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경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호 안건심의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실태조사의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제1호안건설명자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하고 소셜벤처,

위 원 장

아니요, 지표, 보고자 하는 게 뭐니까?

제1호안건설명자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매출, 고용규모, 그다음에 협동조합의 같은 경우는 '50%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정책보고서들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에 대한 판단도 이번에 실태조사를 해서, 가동률이 낮은 원인과 그리고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까지를 이번 용역에 담고자 합니다.

위 원 장

전수조사하시는 거예요?

제1호안건설명자

예.

목표는 협동조합하고 소셜벤처에 맞춰서 전수조사를 할 거고요.

이미 조사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샘플조사로 해서 지원 수당에 대한 것만 담을 예정입니다.

000 위원

기업수는 총 몇 개 예상하세요?

제1호안건설명자

저희 기업이 서울시 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3,601개이고요.

그리고 협동조합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700개 정도 됩니다.

000 위원

사업비 대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요.

두 번째는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신다면, 그룹핑을 해가지고 인텍
고서베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다
아니까요.

매출이나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서베이에서 나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봤을 때는요.

어떤 경우는 부풀리는 수도 있고, 그래서 학술용역 명하고 하시는 바하
고 약간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인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DB구축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노력대비 데이터의 정확성, 적
합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약간 연구가,

제1호안건설명자

부연설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과제명은 조금 더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변경하도록 저희가 노력하
겠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에 비해서 실태조사 규모가 많고 부실화될 우려에 대

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21개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치구 기반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갖고 있는 자료와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일단은 수집을 하고요.

생태계사업단이나 생태계센터들의 도움을 받아서 협동조합과, 그러니까 3,601개 중에서 자료가 부실한 협동조합과 소셜벤처 위 주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서, 부실하다거나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 인증이나 예비형 인증 가지고 서울시에서 DB가 있을 텐데, 사실은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소셜벤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은 거의 사적인 영역이고, 정부의 지원도 안 받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매출이나 이런 데이터를 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협동조합은 아마 정부에서 지원이나 예비인증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상위기관에서 한다고 할 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소셜벤처는 약간 얘기가 틀려서 그쪽에는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네요.

제1호안건설명자

그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재정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증도 있고 예비도 있고 해서 재정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실태조사할 때는 이 용역에 집중하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일반협동조합이라고 2,000여개가 일반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종합적인 컨설팅이나 아니면 사업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이 맞는 것인지, 협동조합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가동률이 부실하게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소셜벤처에 대한 우려도 나왔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는 소셜벤처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을 정도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소셜벤처를 활성화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선은 소셜벤처가 많으니까 그런 실태를 조사하고, 이것도 사회적경제기업군으로 재분류를 해서, 정부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업군 분류를 하고, 이 소셜벤처를 활성화해서 청년일 자리를 해소하는, 조금은 해소시키는데, 어떤 지원들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자료로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혹시 저희들이 여쭙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1호안건설명자

예.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이 안건에 대해서 주심위원님.

000 위원

예.

000 위원, 000 위원 다 부적정을 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보고서만 봤을 때 어떤 것을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신 것 보면 결국 DB구축인 것 같아요.
DB구축인 것 같고, 사실 제가 사업적기업 설립에 관여한 적이 있어서
2012년부터 이쪽 업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줄여서 일반협동조합이면 일반협동
조합, 소셜벤처에 대해서 상황과악한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학술용역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 가
능할 것 같은데, 지금 식으로 전수조사하고 사회적기업, 경제 모든 거
를 커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부실화될 가능성이 너무 명확합니
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저도 연구기간 대비 대상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연구가 진행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000 위원

전수조사, 표본조사가 뒤섞여있고, 전수조사를 보니까 전화로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주심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전화로 과연 그런 매출액
같은 것 순순히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 원 장

그런데 이런 종류의 실태조사는 필요하다고 선생님들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 없나요?

000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소셜벤처라는 게 사회적으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데 명확한 개념이 정의가 힘들어요.

000 위원

민간기업들인데요, 공적인 영역을 추구한다고는 해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인증 받으면 지원하는 것들
이 있어서 사회적기업 가는 친구들이 있고요.

조금 더 마켓... 마켓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나라 현실이기는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인증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협동조합 관련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
이고요.

특히 협동조합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를
많이 업계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줄여서 제대로 파는 거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습
니다만, 이거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4,000개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000 위원

DB구축의 개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학술용역보다는 차라리 자체과에서
일반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제1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런 게 저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다들 000 위원님도 그렇고 000 위원님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적정여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위 원 장

본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000 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완의견에 뭐를 써야 돼요?

아니면 적정, 부적정만 표시하면,

위 원 장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써주시면 되고요, 안 쓰셔도 돼요.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제2호 안건

서울 미래 MICE 산업 발전계획 수립(2019~2022) 학술연구용역

위 원 장

앉으십시오.

제2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관광정책과 MICE산업팀 하명희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2호 안건설명

제2호안건설명자

저의 과제는 서울 미래 MICE산업 발전계획수립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MICE는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미팅,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총칭하는 용어로, 서울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집중육성 중인 분야입니다.

본 연구는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금액은 약 1억5,000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 MICE육성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이래,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전개한 결과, 세계상위 국제도시로 2018년까지의 시정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등 세계적 MICE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금한류와 같은 외부환경에 따른 시장다변화방안, 업계와의 동반성장, 서울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등 질적 내실화 추진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계획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 크게는 현재 서울의 성장속도에 비하여 MICE 인프라가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인데요.

향후 잠실과 세텍 일대에 현재 코엑스 네 배 정도 규모의 인프라 시설이 확충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대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의 미래 MICE산업 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정부 또한 관광MICE를 주요국정과제로 발표하고, 내년도 기본계획수립을 계획하고 있어서, 정부와 서울시 간 MICE산업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모색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내용은 서울시의 현재 산업정책을 진단하고, 국내의 산업동향 및 세계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혁신적인 신규과제 발굴 및 대형, 글로벌MICE 유치전략 수립, 이에 따른 MICE 비례 설정, 기본방향,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실천전략, 투자계획 그리고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이런 연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연구는 2018년 하반기에 마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민선 7기 서울의 다음 MICE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호 안건심의

위원장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주심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000 위원

하시죠.

000 위원

이거는 필요한 과제라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다만, 과제의 범위, 목적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 과제를 통해서 정말 민선 7선 산업육성정책의 기틀이 설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내용을 핵심내용이 3번, 4번, 5번이거든요, 목표예요. 그렇죠?

제2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연구에서 가장 중요역점이 3, 4, 5번일 텐데, 각 큰 주요내용과업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10개월 동안 연구를 하신다고 하는데 1번, 2번 같은 과업의 경우에는 이미 1차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세계컨벤션, 무슨 협회 이런 데에 보면 자료집이 계속 나와요, 통계자료는요.

어느 도시 도시에서 어떤 분야, 어떤 섹터가 어떻게 됐고 이런 식의, 또 금액이나 이런 것도, 유치금액이요.

이런 자료를 사용하시면 1, 2번 과제는 비교적 쉽게 처리를 하실 것 같고요.

3, 4, 5가 핵심과제목표인데 이것들이 너무나 산만해요.

그냥 다 하시려고 하는데, 이중에서 정말 민선 7기 MICE산업이 서울이 엄청나게 커요, 규모가요.

아시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큰 컨벤션센터를 새로 지으시려고 한다면 아주 분명한 표적시장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대상으로부터 주로 유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용태세를 시설 면이나 서비스 면에서, 또 인력개발 면에서 다 갖추어야 하는데, 건물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특히나 더 구체적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포커스를 조금 더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백화점을 쪽 늘어놓고 끝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쓸 만한 정책방향이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 위원을 했었는데,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나 봐요.

4년간 심의했던 유사한 과제들에 비해서 용역비들이 한 2~3,000만 원 정도 건당 올라있는 상태예요.

저희가 굉장히 여러 건을 처리했었거든요, 4년간이요.

용역비를 자세히 뜯어보시면 좋겠어요.

기간도 그렇고, 실제로는 이거는 1차 자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0개월까지 길게 늘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누가 과제를 수행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상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저도 상업용 부동산개발 쪽 리서치도 했고, 2015년도에 사실 센토사... CEO도 다 만났어요.

어차피 다 리치회사잖아요, 부동산 회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어차피 MICE라는 게 굉장히 프로젝트 베이스이고 사이트 스펙시픽(site-specific) 해요. 그렇죠?

이 경우에서도 사실 이 정도 액수가 나오면 사이트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탁하고 잠실은 완전히 다른 거고, 그다음에 MICE가 말은 MICE지만, 솔직히 가서 CEO들 말해 보면 다 카지노가 핵심사업이어서 카지노나 약간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도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잠실 쪽일 텐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오히려 사이트를 정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어요, 제가 제 제언이고요.

나중에 과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고, 이런 내용의 리서치는 국토부에서도 많이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토계 학회에서도요.

그래서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2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제2호안건설명자

예.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이게 사이트가 정하지 않으면 19년서부터 22년도까지의 발전계획이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이트가 결정되고 짓고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텐데, 시간이 19년부터 22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짠다는 게, 나는 조금 너무 바쁜 발전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요?

000 위원

그런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건데요.

위 원 장

19년서부터 22년까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건물 장소 구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000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공장소일 거고요.

그러면 서울 안에서 세택 자리하고 종합경기장 두 부지 가지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위 원 장

있는 자리에서요?

000 위원

예, 그래서 사이트 스펙시픽은 가고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용도가 호텔이든 컨벤션 같은 경우에,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호텔을 과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호텔이 제대로 될 것인지,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리

스키한 비즈니스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별개로 리서치에 대한 의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리서치한다는 것은 저는...생각을 해요.

000 위원

목표를 분명히 축소해서 목표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이트가 결정이 되거나 몇 개 부지를 서로 비교하고 평가를 하려면 타당성검토를 별도로 또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시장이나 전반적인 전략수립에 관한 과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위 원 장

000 위원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관께서 안 오셨으니까 간사님께서 대신,

간 사

예.

저희 부서의 의견은 일단 사항이 많이 바뀌었고, 전에는 보시면 코엑스하고 AT센터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잠실하고 한전 부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위 원 장

별 문제 없네요.

000 위원

1차적으로는 1차년도 마스터플랜 1차 계획 만들어놓은 것의 1차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또 2차 계획이 어떻게 갈지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한 분야이고, 그다음에 동남권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면 2021년 정도 되면 완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000 위원

예산을 합리적인 예산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위 원 장

아까 000 교수님이,

000 위원

너무 많이 예산을, 물가가 2~3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네요, 여기 서울시에는요.

000 위원

저도 예산은 좀,

000 위원

기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000 위원

기간도 줄이고 약간 보완검토로 해서,

위 원 장

보완검토하고 스코프를 줄이고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000 위원

예, 그렇죠.

위 원 장

그러면 혹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예산을 줄이고 포커스를 명확히 한 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심위원님이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완의견에요.

000 위원

예.

제2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 한분 걱정이십니다.

000 위원

용역비도 내리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위 원 장

그러니까요, 예산도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하고 관광사업과, 관광정책과 네 개를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심위원님이 다르지만 000 교수님이 하는,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는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하고 지금 세 번째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더 빨리 진행도 되고,

간 사

관광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에요.

위 원 장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3번, 11번, 12번, 13번, 그러니까 000 교수님 쪽에서 하시는 겁니다.

제3호 안건

서울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제11호 안건

해외 서울관광사무소 운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제12호 안건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2018~2022)

제13호 안건

서울 프리미엄 관광 육성 학술용역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3호안건설명자A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관광사업과 안내서비스팀장 행정5급 김국진입니다.

위 원 장

관광사업과이시고요.

또요?

제3호안전설명자B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광사업과의 관광안내서비스팀의 변상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위 원 장

예.

잠깐만요.

어차피 사업과하고 정책과하고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앉으셔서, 발표하실 팀장님이 앞에 앉으시고요, 도와주실 주무관님은 뒤에 앉으시고 그래서 두 분, 두 분씩 하는 거니까 네 분이 하셔야죠.

세 번째 안전 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하고, 그다음에 해외서울,

간 사

11번 안전입니다.

위 원 장

해외 서울관광사무소운영 기본구상하고 서울 프리미엄관광육성 학술용역 그렇게 되는 거죠?

서울시관계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일단 한 분이 올라오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서울시관계자

올라오셨습니다.

위 원 장

김국진 팀장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3호안전설명자A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서울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1,700만입니다.

그 중에서 8~90%가 서울을 방문했다고 추정이 되고요.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관광도시로서 서울이 이제는 서울관광종합센터 컨트롤타워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 센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종합전시관은 물론이고 외국인전용 콜센터, 그다음에 교육센터, 그다음에 관광업계 무료구인구직센터 등 전체적인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역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을 잡았고요.

금액은 1억입니다.

용역내용은 일단 서울관광종합컨트롤센터로서의 서울관광종합센터의 설립 타당성, 그다음에 후보지 현황조사 및 최적부지 선정, 다음으로 외래관광객 증가전망 등을 고려한 최적 규모 도출, 마지막으로 종합관광정보센터설립 운영 기본구상 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경익 팀장님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니까, 조경익 팀장님보다 조성호 팀장님이 먼저 하시죠.

조성호 팀장님이 이게 열두 번째입니다.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2호 안건설명

제12호안건설명자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에 대해서 용역수립하는 것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6기의 관광정책은 2013년도에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관광발전종합계획이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로 목표를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이면, 정부도 신정부가 바뀌어있는 상태이고 정책이 체계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주요도시들은 보면, 관광트렌드의 변화라든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
 기 위해서 중장기발전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추어서, 또 아시아권 관광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또 융
 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이런 급변하는 관광환경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분석이라든지, 미래예측을 통
 해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서, 신정부 출범 정부정책하고 부
 합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정책과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
 니다.
 연구내용으로는 국내외 관광환경과 더불어서, 서울관광정책현황을 진단
 을 해보고 이를 토대로 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포지셔닝 전략을 도
 출하고, 전략별 정책과제와 추진계획 등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서울관광재단을 출범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
 출범이 되게 되면 이런 서울시라든지 재단, 민간관광협회, 유관단체 등
 이런 다양한 서울관광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역할설정 이
 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업과
 연계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을 포함을 해서, 2018년2월부터 7월까지 해서 6
 개월간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이 계획을 마련해서 민선 7
 기의 관광정책의 기본 계획을 마련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조 팀장님께서 해외서울관광사무소 운영 기본구상계획 먼
 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11호, 13호 안건설명

제11,13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관광사업과 관광마케팅팀장 조경익입니다.
 해외 서울관광사무소 운영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7개월 정

도 기간을 잡고 있고요.

약 9,8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흔히 보통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에 무슨 기구를 만드는데는 아니냐.’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상안은 일하면서 보다 보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마케팅회사를 에이전시로 계약해가지고 마케팅사무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 사무소 설치해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동남아에 그쪽에 현지 마케팅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마케팅전략을 계획과 실행하면 훨씬 더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번 이 용역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열세 번째.

제11,13호안건설명자

서울 프리미엄관광 육성 학술용역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도 전문가 아니시더라도 관광의 패턴이 예전에는 단체관광 했다가 그다음에 개별관광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관광계에서 ‘프리미엄관광이다, 럭셔리관광’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돈을 많이 쓰는 관광객을 잡자.’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과연 서울시가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최근에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유독 중국에서 많이 오고요.

이 사람들이 오면 평균 한 2,0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 한 100만 원 쓰는데요.

꽤 많이 쓰죠.

그다음에 주로 방문목적이 사업 및 전문 활동, 여가, 위락, 휴가, 쇼핑 순이고요.

이분들도 재방문률이 보통 평균 38%인데 이분들은 46%입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평균이 33%인데 이분들은 67%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돈을 쓰는 해외관광객을 서울이 유치한다고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오면서 소위 말하면 투어리스트케이션 해가지고 시민의 불편도 없이 더욱더 서울 경제에 도움이 되고, 더 나은 고부가가치의 서울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프리미엄관광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가 관광기간 더 가지면 좋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호, 11호, 12호, 13호 안전심의

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발표하신 서울관광종합정보센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 먼저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이 과제는 사전검토를 하고 왔는데요.

관광안내소를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시유지에서요?

제3호안전설명자A

일단 시유지가 됐건 사유지가 됐건 장소가 좋은 데를 선정해서, 1층이면 1층 아니면 4층이면 4층 전체 건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한 개 층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000 위원

한 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개 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3호안전설명자A

아니요, 큰 거 한 개요.

000 위원

관광안내기능의 총괄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제3호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서울관광안내가
요.

서울마케팅 주식회사에서도 센터를 운영하잖아요, 명동에서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정보센터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그런 산발적인 기능들을 전부 다 총괄하시겠다는 거예요, 건물
을 하나 지어서요?

제3호안건설명자A

각 지역 지역마다 관광센터는 각자 고유지역정보를 활용한, 관광정보를
활용한 안내를 하게 되고요.

허브를 그 전체적인 거를 컨트롤하게 되는 겁니다.

000 위원

컨트롤하겠다고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래서 총괄기관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도 다르고요.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부여가 될 수 있나요?

조례나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게 있나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산은 당연히 관광사업과에서 잡아서 기본적으로 다 총괄을 하고 통
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관마다 필요한 예산들은 이 허브에서 총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000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 대구시, 부산시 이런 데 관광안내센터 운영을 시에서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3년, 5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도시들은 아주 골치 아파요.

거기에 결탁하는 세력도 있고 서로 싸움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설립타당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능들이 너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거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잖아요.

누가 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같이 넣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계획을 아예 잘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제3호안건설명자A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아시겠지만 관광정보센터인 에스토에서 민간위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소 같은 경우는 관광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을 해야 되고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재단이 출범해서 거기의 고유업무가 됐건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이끌고 가는 방안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럼 서울마케팅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거는 계속 하던 대로 하고요?

중복되는 역할은 없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지금 현재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에서 공익성이 조금 더 강화된 재단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재단이 되면 고유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분담안을 마련해서 어떤 업무는 시에서 하고, 어떤 업무는 재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의 가림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0 위원

그 교통정리가 잘 되지 않으면 예산낭비도 많을 것이고 역할도 갈등이 생길 거예요.

중복되는 일이 있어서 나중에 서로 갈등이 생길 거거든요.

‘우리 일이다. 너희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제12호안건설명자

현재 외부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해서 준비위원회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장소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됐나요, 대상지가요?

제3호안건설명자A

아시겠지만 서울관광 중심이라면 명동, 홍대, 동대문, 그다음에 서울역 전체적으로 ‘이 지역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겠습니까?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용역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최적지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역할은 서울시에서 하고, 어떤 역할은 앞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될 재단이나 그런 데서 하게 될지에 대한, 업무분장역할까지도 여기에서 선을 긋게 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 과제 내용 중에서 다루어질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000 위원

질문이 있는데요.

기능의 통합 같은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반드시 건물을 보유해야 되는 건가요?

제3호안건설명자A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필요하다면, 사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독 건물 다섯 개 층 정도 되는 건물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타워 허브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 건물로 쓰고 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하는.

000 위원

그러니까 임대는 고려 안 하시는 건가요?

제3호안건설명자A

그것도 고려합니다.

이 용역에서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1층에다가 큰 평수로 해서 그 역할들을 거기에 넣고, 재단에서는 2층, 3층 이렇게 위층에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부동산 쪽인데 항상 후보지 검토한 다음에 예산 부족해서 결국 못 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명동, 홍대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거기로 한다고 하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적입지선정 BC분석까지 들어가는 것은, 제가 거의 보유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읽혀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제3호안건설명자A

건물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역할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되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허브역할이 없었나요?

제3호안건설명자A

사실상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기는 했지만, 아시겠지만 관광체육국 역할이 간부가 바뀌거나 내지는 어떤 형태의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씩 지속적으로 뭔가 기준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단이 출범을 하고 또 내지는 허브가 생기면, 그 역할만 갖고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서울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어쨌든 마케팅 주식회사가 재단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먼저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선행돼야 될지, 아니면 마케팅재단이 다 세워진 이후에 가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업무분장 자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텐데, 재단화도 어렵잖아요.

마케팅 주식회사 가는 것도 힘들게 힘들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고민이 돼요.

제3호안건설명자A

만약에 이 용역이 통과가 된다면, 이 필요성만 인정이 된다면 처음부터 재단에 주지 않고 그러면 서울시가 일정기간 동안 관여해서 관리를 하다가, 재단 쪽에서 '어느 정도 성숙이 됐다, 그때 넘겨도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렇게도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 원 장

자꾸 헛갈리는 게 센터라는 의미가 조직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건물,

제3호안건설명자A

역할입니다.

위 원 장

역할입니까?

제3호안건설명자A

예, 역할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조직은 이미 있는 건가요?

제3호안건설명자A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라는 공간이 생겨서,

위 원 장

공간이 중요한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그렇죠.

위 원 장

아니면 조직이 중요한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공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간이 생기면,

위 원 장

지금은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죠?

제3호안건설명자A

문제가 많다가보다요, 조그마하게 약간씩 특화해서 움직이고 있던 그런 형태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관광도시,

위 원 장

한 군데로 모으자 하는 거죠?

제3호안건설명자A

예, 맞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겁니다.

위 원 장

그럼 그게 서울시 산하조직, 아까 말씀, 재단의 하부조직이 되는 겁니까?

마케팅재단이 마케팅을 해갖고, 그거에 대한 임플리멘테이션을 이 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3호안건설명자A

관광재단이 된다면 재단의 고유업무가 되겠죠, 관광재단이니깐요.

그러니까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관광이라는 게 실제로 보고 즐기고 이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고 관광재단에서 정책적인 기획을 하게 되면, 그 기능들을 하나의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통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000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쭙보고 싶은 게요, 여기 타당성조사를 하시면서 BC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BC자료를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여기야 수익하는 사업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베네핏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BC분석하겠다고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요.

000 위원

그러니까 코스트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베네핏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이 BC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직접 운영이 적정한지, 아니면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이런 사항들,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며, 그다음에 그런 형태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 타당성 계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적, 정치적 타당성 또는 사회적 타당성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

000 위원

공간의 기능이 해외관광객들한테, 오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안내센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을 총괄해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해외관광객 오신 분들이 오프라인상으로 와가지고 정보를 얻어가는 비율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정보제공하는 것하고 봤을 때, 센터의 비중이 어떤 게 더 주안점이 되는 거예요?

제3호안건설명자A

일단 여기가 센터가 생기면 실제로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직접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관광을 관련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은 ‘관광객들이 주냐, 아니면 다른 것들이 주냐.’ 질문하신 사항 맞으시죠?

000 위원

센터의 정확한 가장 큰 비중 있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제3호안건설명자A

일단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울에 관한 관광뿐만 아니라 전국 관광, 그다음에 세계적인 관광까지 다 뭔가를 볼 수 있고 가상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 오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주안점을 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신 분들이 서울시에 와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돌아가서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이미지제고 차원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결국은 해외관광객분들이 센터에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제3호안건설명자A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정보센터를 운영해 보면, 실제로 외국인관광객들이 센터 방문을 많이 하십니다.

000 위원

계속 물어보신 게 ‘외국인관광들에 정보 제공하는 센터이냐, 컨트롤타워냐.’ 역할이 완전히 위계가 다른 것인데, 그 두 개를 같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여쭙보신 것 같거든요.

제3호안건설명자A

예,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000 위원

그 비중이, 너무 다른 거여서, 보통 한 센터에서 하기에요.

제3호안건설명자A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센터 규모도 필요한 것이고요, 인력구성도 필요한 거고요.

큰 조직이 될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역할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배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용역을 통해서 배분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총괄적인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어디 모여서 하려니까 건물도 필요하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담당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관광정보센터인지, 그런데 요즘 관광정보 건물 찾아가서 안 얻어요.

다 조사해갖고 와요, 앱을 통해서나 이렇게요.

제3호안건설명자A

단순히 관광정보가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 가면 가상체험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체험관광이나,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온라인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쪽에 와서 뭔가를 시연해 볼 수도 있고요.

000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두 개 글로벌센터하고 무슨 센터 있는 것하고 그게 얼마큼 활용이 되고 있나요, 활용도가요?

제3호안건설명자A

기본적으로,

000 위원

제가 다음 주에 거기를 학생들을 데리고 가는데, 체험장을요.

실제적으로 거기를 가동을 잘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내용이 적정하고

아주 매력적인지, 실제로 이용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살핀 다음에 이렇게 과제를 제안하시면 어떨까요?

거기 이미 있는데, 장소들이요.

제12호안건설명자

관광정책팀장인데요.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이 외래관광객이 방문하는 규모 면에서 보면 세계 10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대도시를 가보면, 어느 도시건 간에 그 도시를 정말 대표하는 관광안내소가 아주 번듯하게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단순히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방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다못해 직접 여행사들이 와서 거기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공연티켓을 예매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 세계 10위권의 관광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 땅을 얻기가 힘들다 보니까, 명동에 관광정보센터가 가장 큰 게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하나은행에서 저희한테 협찬해 줘가지고, 한시적으로 5년간인가 임대를 무료로,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어떤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민간에서 관광안내소 안에 같이 들어와서, 관련업체들이 들어와서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예약도 하고 상품도 판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들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채원상의 문제도 나중에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어디가 정말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져왔었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게 되면 기존에 서울에 있는 조그마한 관광안내소들, 사람 한두 사람, 안내원만 들어가가지고 안내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네트워킹 시켜줄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 안건은 여기에서 일단 끊고요.
조 팀장이시죠?

제12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중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한 질의 있으신, 그러니까 열두 번째 안건입니다.
관광 중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000 위원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중기발전과제 계획수립은, 아마 당연과제로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경쟁으로 외부에다가 선생님께서 다 주는 게 합당한가요?
이거는 사실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12호안건설명자

당연히 이거는 시에서 수립하게 될 텐데요.
이게 시에서 하다 보면 결국은 시 공무원들 중심으로만 하게 되면 전문성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관광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하지도 못 했던, 거의 75% 이상이 개별관광객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ICT기술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자체가 변화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트렌드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위 원 장

기존에는 어디에서, 주로 대학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연구원 측에다가 이거를 했었습니까?

제12호안건설명자

서울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주로 했었습니다.

위 원 장

주로 많이 하셨습니까?

제12호안건설명자

그리고 외부에 아예 공개경쟁으로 해서 전문기관,

위 원 장

그러면 그전에는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유사연구로 다른 대도시의 몇 가지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던데, 그쪽이랑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외국,

000 위원

익산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쪽에 보니까 유사한 과제가 있었던 것으로 있던데, 어떻게 차별화가 되죠?

제12호안건설명자

각 도시마다 관광진흥계획을 당연히 만들겠죠.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외국인관광객이 80% 정도가 서울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민들,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민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이런 관광정책을 잘해서 환경이 잘 만들어지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서울이 제주보다도 관광객이 더 많이 오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제12호안건설명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비율은, 거기도 한 2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전체 관광객에요?

제12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제12호안건설명자

통계적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외국인관광객 80%가 서울을 찾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예.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보통 학술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이 특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수단적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형적으로 알기 힘든 것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는 학술용역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발전계획입니다.

‘핵심과업내용이 비전, 전략, 정책과제, 추진계획 이런 핵심이 되는 것들을 과연 학술용역으로 맡길 만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부서 고유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보통 예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학술용역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를 사전절차이행여부를 제시를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학술용역심의를 올린 건데요.

000 위원

위원님 말씀은 이게 학술용역 성격으로 맞느냐 말씀하신 거죠.

이게 만약에 학술용역 통과되면 예산 반영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그 비전이나 정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외부의 전문가의견을 듣는 것은 제한적인 부분이고,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정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학술용역을 맡겨서 외부의견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000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비전이나 전략, 전술적인 차원은 그 부분만 떼어서 서울연구원을 주시든 대학에 일반경쟁으로 주시든 해도, 이거는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학술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위 원 장

일반용역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요?

학술용역이,

000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이거를 다 외부에 그냥 주실 거냐고요.

여기도 보니까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몇 년도에 비해서는 서울연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는 과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정책 방향이나 목표, 비전 다 세우시고 해당하는 전략적 과제 도출 같은 것만 서울연구원에 주셔서, 부분적으로 학술용역을 시키는 게 더 타당성하지 않을까요.

제12호안건설명자

관광업계라든지 계속 전문가들이 한국관광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질적으로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 계속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과제들이 달라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분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연속선상에서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새로운 민선 7기의 관광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00 위원

오늘 과제가 관광사업이 이렇게 다섯 개나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서로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정책과제에 발전계획은 대충의 큰 틀은 나와 있잖아요.

ICT를 더 많이 활용해야 되고 4차 산업에 부흥해야 되고, 또 서울시민들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고 고급화 돼야 되고, 시장이요.

시장다각화, 중국시장 때문에 철퇴 막고 있으니까 다각화,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큰 나라들.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뭘 굳이 또 누구에게 물어도 똑같은 소리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의 기본정책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내부적으로 하시고, 구체적인 방향이나 사업내용은 서울연구원이나 일관성 있게, 정책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기본적으로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게 아마 보는 사람들 시각일 겁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자꾸 인사이드동으로 바뀌니까, 원래 이것만 하시던 교수들이 와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학술용역을 하자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담당자가 제일 전문가이니까 담당자가 주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일 것이니까, 이것은 견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 해봤자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팀장님, 그거는 일단 여기에서 접고요.

다른 조 팀장한테 가서, 해외사무소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제11,13호안건설명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위 원 장

했나요?

000 위원

질문 차례인데요.

위 원 장

질문이요.

제가 헛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해외사무소에 대해서요.

열한 번째 과제입니다.

000 위원

저는 관광체육국에서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조경익 팀장님 과제 두 개 주셨는데요.

제11,13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천만시민을 생각했을 때 먼저 과제를 진행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

제11,13호안건설명자

해외관광사무소 하고 싶습니다.

000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 원 장

어느 것 하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어요?

제11,13호안건설명자

서울 해외관광사무소 먼저 하고 싶습니다.

위 원 장

예.

000 위원

간결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관광체육국에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것을
담아내겠다는 의지이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11,13호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하십시오.

000 위원

해외에 있는 업체라든지 해외관광객들, 서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에 대해서 서울관광사무소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을 유치
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제11,13호안건설명자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매년 국내 종합광고대행사를 뽑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계획을 짜고 실현은 주로 해외에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관광이 솔직히 전문이 떨어지는 국내업체가 계획을 수립·실행하다 보니까, 실행성이나 효과가 쉽게 이야기해서 중국에 있는 기업체가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마케팅을 국내기업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거기 현지 마케팅회사 있잖아요.

정말 잘 아는, 그 회사를 에이전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한테 이 정도 관광객을 보낼 수 있는 플랜을 짜봐라.’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켜가지고 성과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주면서, 비용도 줄이면서 훨씬 더 많이 데리고 오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제11,13호안전설명자

예.

000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위 원 장

그냥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제11,13호안전설명자

아니,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하는 게, 과연 이게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효과를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굴러갈지 그것을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000 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없어요?

제11,13호안전설명자

지자체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KTO라고 해서 한국관광공사가 해외지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파견 형태로 가는 게 있고, 코트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국가기관이 지자체에 크게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써주거든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어차피 KTO도 국내 공무원들이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현지에 기관을 한번,

000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주하고 경기 그런 쪽에서 해외사무소가 있다는 것으로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 형식으로 서울시에서는 해외관광사무소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제11,13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 개의 사업이 와가지고 조금은 답답한 마음, 제언을 드리고자,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다들 조직이나 센터를 이용해서 직접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플랜들이에요.

‘이것이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어떤 자문을 하고 왔는데, 어떤 곳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을 떠나서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를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관광이라는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일단 만들어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어프로치이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것, ‘과연 관광객들이 우리한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세밀한 과제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해봤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자, 이 안건도 넘어가고요.

오늘 안건이 많아서, 프리미엄이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해 주시죠.

없으시다고 봐도 되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들하고 발표자들은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제12호안건설명자

위원님들, 잠깐 시간만 주시면 중기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말씀하시는 스타일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 판단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12호안건설명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손 놓고 있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자기 하는 일에만 몰두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발전적인 계획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이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서요.

(발표자 퇴장.)

세 번째 센터 먼저 하죠.

주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고요.

위 원 장

그러시군요.

000 위원

그래서 해외관광유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 그동안에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미약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오픈해서 같이 하겠다는 의도는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12번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안에 있는 3번 센터설립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는 것 맞죠?

위 원 장

아니요.

위원님, 3번 먼저,

000 위원

그래서 3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2번에 대해서, 12번이 서야 그 안에서 3번이 유의하다고 보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생각합니다.

위 원 장

그런데 저는 저 팀장님이 지금도 건물을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지, 조직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역할 문제, 조직 문제가 더 결정이 돼야지 무슨 센터를 건물을 사거나 말거나 하는데, 몇 평짜리를 먼저 사고 그 안에다가 조직을 만들면 그건 또 문제 아닌가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

000 위원

장소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장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재단이 주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던지는 게 아니고, 재단이 만들어져서 재단에서 어떤 역할

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위 원 장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죠.

000 위원

마케팅 주식회사를 재단화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선제적으로 된 다음에 거기에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데, 너무 미리 선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제가 봤을 때 재단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같아요.

위 원 장

이게 재단설립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000 위원

예, 당위성 확보를 위한,

간 사

재단은 설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0 위원

결정됐죠, 재단하는 것으로요?

000 위원

재단 아직 결정,

000 위원

결정 안 되어 있어요?

000 위원

예, 결정 중인데요.

간 사

아직 안 됐습니다.

재단 설립되면 고유업무가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런 분야에서의 타당성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입니다.
이거에 덧붙여지는 게 항상 경제적 효용이거든요.
이거는 경제적 효용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계단하기가 힘들어요.
지역축제들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지역경제 과급효과 이런 식인데,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000 위원

재난이 나중에 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을요.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마케팅재단이 세워진 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위 원 장

재단의 할 일이죠, 이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재단이 빨리 세워지도록 하는 작업으로서 이거를 하려는 모양
이죠.

000 위원

결정하시죠.

제3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000 위원

마음을 바꿨습니다.

간 사

아무도 없습니다.

위 원 장

그럼 이 안건 부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안건입니다.

해외사무소, 이 안건에 대해서 주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000 교수님 것입니다.

해외사무소요.

000 위원

해외사무소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사람을 직접 공무원이나 민간인 파견하지 않고, 그쪽에 마케터들을 계약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적고,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지화도 되고요.

이거는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000 위원

저는 질문이 하나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무소들이 있지 않나요?

그거랑 중복되지 않나요?

000 위원

아니, 도시는 도시대로 또 하거든요, 큰 도시는요.

그런데 서울이 생각보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오고요.

아까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100명 중에 80명이 서울을 주로 왔다가요.

제주도 많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서울에 비해서는 반도 안 되는데, 서울이 조금 더 수용력을 더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위 원 장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해서 더 좋은 사무소나 좋은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냥 하면 되는 것,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000 위원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지 않나요?

타당성과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승인 안 해주지 않나요, 이런 사업들이요?

위 원 장

그런 것 검토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000 위원

그것 때문에 하는 수도 있을 건데요.

000 위원

그런 거라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거의 1억인데요.

000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줄여가지고요.

000 위원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네 소관부서의 일인데, 차라리 이 돈을 들인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나 관광청 같은 데서도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 않나요?

위 원 장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000 위원

예.

000 위원

관광공사는 주요국가에 대해서 자기 자체 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데, 그거를 서울만 하는 게 아니니까 서울 자체적인 도시 CVB가 필요하다는 거죠, 해외사무소로서요.

000 위원

기존까지는 외국에서 관광마케팅을 할 때 국내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국내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짜가지고, 팀 짜가지고 나가는데 막상 현지에 나가니까 현지하고 갭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현지에 그런 유수의 관광투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가겠다는 건데,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어느 나라에 어떤 데를 넣어야 적절한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걱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이것도 첫 번째 타당성 조사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하겠다고 의지 가지면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돈을 차라리 해외 잠재적 관광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결정요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인포메이션 관광정보의 접촉포인트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런 게 학술적으로 알아볼 일이지, 이거는 정책적 판단이죠.

000 위원

그런데 타당성 조사 안 하면 예산배당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타당성 조사부터 시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위 원 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안 들어도 돼요.

보니까 관광사업들이, 관광과제들이 한 30% 올라져 있어요, 2~3년 전에 비해서요.

위 원 장

그러면 만일에 심의를 한다고 한다면 액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심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000 위원

거의 대부분의 과제들이 2~3,000만 원 이상은 깎아야 될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485쪽에 이분들이 출장을 가게 되어 있나 보네요.

위 원 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000 위원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외주요관광의 출장 두 명이 가게 되어 있는 계획인데, 타당한지는 변별하셔서 예산을 점검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원 장

그런데 해놓고서, 000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 없이 ‘나중에 한번 고민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산에 대해서 아예 꺾어버리고 시작하면, 그게 조직진단서 접근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000 위원

‘서울관광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관광사무소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밝혀낸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외국 나갈 때 관광사무소 가가지고 그거 보고서 갑니까?

000 위원

프로모션을 하라는 거죠, 상시적으로요.

현지 밀착형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이거 하고 판매라는 것보다는요.

000 위원

그러면 해외도시가 서울에서 프로모션하는 에이전트가 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에이전트 찾아가서,

위 원 장

그럴 수는 있겠죠.

어디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000 위원

사무실의 역할은 B TO C가 아니라 B TO B죠.

현지인들에 대한, MICE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니까 CVB 기능을 해외에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11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결정하기로 하죠.

다만, 예산은 000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써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여섯 분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몇 분이시죠?

간 사

일곱 분 이상이,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000 위원

손 드셨어요?

위 원 장

예.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서울관광 중기발전계획입니다.

주심위원님, 000 교수님이 또 주심위원님이십니다.

000 위원

이거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통째로 다 외부에다가 일반경쟁으로 맡길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거는 하고, 하던 과제거든요. 일관성이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 원 장

이것 그런데 과거에도 이 부서에서 했던 과제입니까?

000 위원

장기발전계획수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끝나면 새로 수립하고 또 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면과제인데, 이거를 1억5,000이나 해갖고 외부 일반경쟁으로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과제인지, 과제의 성격상이요.

000 위원

당면과제인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학술용역으로 맞냐는 거예요.

000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고요.

000 위원

일반용역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000 위원

그런데 ‘시장상황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 못 한다. 그러니까 보완책으로 못 하는 부분만 전문가에게 일부만 썬다. 3~4,000 용역비를 쓰든지 서울연구원에다 주든지.’

이때까지 서울연구원이 했다고 그러니까요.

위 원 장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자문교수단이나 경험 많으신 분들 꾸려가지고 자문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000 위원

그래도 되고요.

000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연구기간이 6개월에 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아까 4차 산업 이야기하셨는데, 땅 덩어리는 작은 서울시에 그런 시연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재단 관련한 설립도 있고 하니,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직접적으로, ‘서울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라는 의도인 것 같거든요, 저는요.

시 직원들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픈해서 모아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유의하지 않을까,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위 원 장

이런 거 짜는 것을 공무원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죠.

보통 이런 게 용역으로 나오면 문제인데요.

000 위원

예산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위 원 장

예산도, 그렇죠?

000 위원

예.

제12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아무튼 이거는 각자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안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아홉 분.

위 원 장

그럼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리미엄관광 육성입니다.

또 000 교수님, 주심위원님이십니다.

이것도 학술용역이에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외부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프리미엄관광에 대한 상품에 대한 고민인데, 이거를 과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000 위원

그럼 부적정, 패스요.

000 위원

이런 유사용역이 예전에 있었나요, 프리미엄관광에 대한 것이요?

000 위원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위 원 장

요즘에 그런 거는 못 봤고요.

그런데 이런 게 TV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하고 해गत고 하는 그런 거는 나왔는데, 이게 학술용역일지는 저는 진짜로, 그거는 마케팅 차원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요.

000 위원

12번과 13번이 과가 다르기는 한데, 13번이 12번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요, 전체 발전 계획 수립할 때요.

그래서 이거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13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러면 염두에 두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한 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건은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실래요, 조금 더 하셨다가 하실래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제4호 안건

서울특별시 도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구 서울특별시 도로정
비기본계획)

위 원 장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계획 연구용역이죠?

제4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 민자사업팀장 정회원이라고 합니다.

위 원 장

예.

팀장님, 짚막하게, 계속과제죠?

제4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말씀하십시오.

제4호 안건설명

제4호안건설명자

저희 과에서 이번에 학술용역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받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학술용역심의를 받아서 차수별 계약을 하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거에 따라서 올해 초에 계약을 해서 1차년도 것이 진행 중이고요.

이번 심의를 받는 것은 내년도 용역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차례 자문회의를 거쳐서 중간보고까지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5년마다 서울시 도시건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는 강남순환도로 같은 것도 개통을 했었고요.

지금은 서부간선도로, 재물포터널 이런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강남지역에 양재R&D센터라든지 강북지역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창동상계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지역에 다양한 도로를 건설계획을 할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여건을 반영했을 때, 서울시 도로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 8월에 학술용역심의를 받아서 차수별 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2차년도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제4호 안건심의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용역은 계속 하는 것이니까, 혹시 이 용역 수행하는데 새로운 환경의 변화나 해야 될 것 같은 것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제4호안건설명자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계약했던 바대로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발표자 퇴장.)

제4호 안건 결론

위 원 장

이 용역은 계속 과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끼리 토론 안 하고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 한분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도시철도입니다.

제5호 안건

도시철도 기술자료집 개정 학술용역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5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박종필입니다.

위 원 장

주무관님, 이거 계속과제죠?

제5호안건설명자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5호 안건설명

도시철도기술자료집 개정 학술용역은 2016년10월에 학술용역심의를 장

기계속사업으로 받아서 2017년 2억, 2018년 1억 총 3억으로 시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8월28일 한국도시철도학회와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서 2018년 예산이 1억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용역도 계속과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무관님,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 퇴장.)

이 안전도 곧바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000 위원

그런데 000 위원이 기록한 사항처럼, 늦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

위 원 장

잠깐만요.

000 위원

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 원 장

용역착수가 늦어진 거군요.

000 위원

일단 관련해서 중간보고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위 원 장

다시 오셔서 중간보고서가 있냐고 여쭙보세요.

000 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 요새 이런 거를 책자로 만드나요?

위 원 장

그러시는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000 위원

세상이 바뀌어도 그렇게 하더라도요.

000 위원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규정집 다 없애고 웹에서 보게 바뀌었거든요.

출판하는데 낭비가 아닌가, 보는 것도 불편하거요.

찾기 같은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PDF를 하면 찾기도 진짜 편하고 좋습니다.

위 원 장

사실 제일 편하죠.

000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출판해서 책으로 만들면 그게 효용성이 있을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여기 보니까 실무자교육교재로도 활용하나 봐요.

위 원 장

PDF로 하면 결국에도 쓸 수가 있는데요.

간 사

위원님, 중간보고서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받아갖고 드리겠습니다.

000 위원

발표하신 분도 그냥 가셨어요, 결과도 안 보고요?

서울시관계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가셨나 봐요.

000 위원

보완사항을 거기에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관계자

다시 전화해서 부를까요?

000 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제5호 안전결론

위 원 장

아니에요.

용역추진에 문제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써주십시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 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전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 하겠습니다.

제6호 안전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설정연구

제6호안전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6호 안전설명

제6호안전설명자

기획과 기획행정팀장 송수성입니다.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과 격차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기초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내 특색 있는 발전과 함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를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바람직한 수립방향 및 계획모델 을 정립하고자 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과업내용은 지역균형발전의 개념정립, 지역균형발전 지표설정 및 격차 실태의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향 및 전략과제 제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체계설정 등이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제6호 안건심의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게 처음 하는 연구인가요?

이런 연구 많지 않나요?

제6호안건설명자

기존에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연구원에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한 15년 이상도 지났고, 또 전의 용역은 아무래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강남과 북 지역 간의 차이를 시설건축이라든가 토지개발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하드웨어 측면이 아닌 소프트웨어 측면의 삶의 질적 측면에서의 격차가 많이 대두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그런 쪽의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요, 저희는 그쪽에 치중해서 이번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000 위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경제, 복지, 인프라, 도시계획까지 총괄해가지고 같이 포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구체성 있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거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이 조사에서 복지, 인프라 그런 거 가지고, 조사된 거 가지고 과연 계획성 있게 뭐가 나올 수 있는지요.

제6호안건설명자

말씀하신 대로 각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해서 개별정책적으로도 이미 이런 격차에 관해서는 조사가 되어 있고, 또 개별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화 된 것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복지면 복지, 경제면 경제 정책을 하나 개발할 때 격차에 대한 문제에서도 출발점을 시작하는 것은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전반의 복지 향상시키는 거나 아니면 서울시 전반의 경제적 문제가 있던 것을 경제발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출발점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내의 전반적인 효과를, 아무래도 효과성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집행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저희도 분석하고 아니면 개별 사례도 분석하면서, 출발선 자체를 현재의 정책 내에서 격차해소 쪽에 출발점을 포커스를 맞추면 다른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00 위원

격차가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는 정책방향이라든지 이거를 설정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성이 없을 것 같아요.

격차라는 게 나왔지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복지면 복지, 인프라면 인프라,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각각에서 봐줘야 되는 거지, 전체적인 것 조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막연한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결국에는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고 전시적인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구체적인 해결책이 있는 것인지, 조사가 됐다고 그러면 그런 실태분석이 되고, 됐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해결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제6호안건설명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로 해서 구체성 있는 정책이 실현되기는 아마도 현실상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조례가 제정·공포됐었고, 이런 계획수립의 큰 틀 안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개별정책이 나아가야 할 가이드라인 정도를 이런 계획을 통해서 제시해 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면 경제, 복지면 복지 이런 정책을 수립하실 때 개별부서 입장에서도 하나의 방향성 혹은 가이드라인이 돼서, 그런 격차 해소를 할 수 있는 개별정책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저희 계획 자체로서 개별정책 하나하나가 구체성을 띄기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연구도 하고 이러는 분야인데,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게 서울시의 지역이나 공간 간에 격차가 생기는 원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여기 연구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제6호안건설명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반영해서, 연구용역 실시되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유인물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1차, 2차 각종 자료하고 최종보고, 조사보고서 쪽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 최종보고서 전에 1, 2차 중간보고자료들, 착수보고자료가 굳이 유인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제6호안건설명자

유인물 양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000 위원

착수보고자료, 1차 중간보고자료, 2차 중간보고자료 이렇게 해서 최종보고, 조사보고 있잖아요.

그 과정의 자료들은 요즘에는 파일로도 다 나와서 볼 수 있을 텐데, 꼭 이게 유인물로 이렇게 해서 다 나와야 되는지요.

제6호안건설명자

꼭 이렇게 유인물로 나올, 꼭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인물로 나와서 하면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라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말씀하신 것 반영해서, 굳이 꼭 이렇게 유인물 안 하고 말씀대로 파일 형태로 하면 더 공유 같은 것은 쉽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영해서, 실제 용역 수행할 때도 이런 금액은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제6호안건설명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이 안건에 대한 주심위원님의 말씀, 검토의견 듣겠습니다.

000 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갈등이 나타날 정도까지 문제가 됐다고 봐요.

한 7~8년 전에 지금 여당 대표하시는 000 의원님이 노원구 쪽이 지역 구이신데, 그분이 하는 워크숍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동부권, 강남권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 시일 내에 해소가 되기 어려워요.

잘 아시다시피 인프라든지 중요한 공공기관들이 입지결정을 할 때 대부분 강남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연구를 해도 해결 안 됩니

다.

교육도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 시민들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안에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사업비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000 위원

저는 빅데이터하고 교육의 공간격차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연구는 분야 같은 것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방식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격차를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단순히...아니고 시계열적인 격차를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격차가 확장되면서 공공화 되는 게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는 만약에 DB구축까지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완사항에서 명확한 고어세팅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야를 해가지고 이거에 복지가 어떻게 어젠다세팅을 할지, 그다음에 그러면서 DB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프로젝트성, 똑같은 얘기만 하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위 원 장

그거는 중요한 지적해 주신 것 같네요.

000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인물비가 4,400이나 잡혀있거든요.

그거는 꼭 필요한 인쇄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000 위원

통상적으로 유인물비가 5% 내지 10%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5%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할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 원 장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000 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빅데이터 쓰는 문제가 지적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시계열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나오셨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하는 말씀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주시고 간사님은 그것을 기록을 해주십시오.

간 사

예.

000 위원

만약에 빅데이터를 쓴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어요.

위 원 장

그거는 그렇게 되네요.

000 위원

생각보다 비싸요.

000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구축비, 데이터 구입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어떤 분야가 세팅이 되면 그 분야를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군이 있고, 그 데이터군에서 구매할지 말지, DB를 설립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위 원 장

빅데이터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000 위원

예, 그래야지 이게 격차가 있을 때, 그다음에 ‘격차가 줄었네, 늘었네.’

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000 위원

그런데 비용을 들여서 그런 분석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컴, 인구밀집도, 녹지비율 그런 거거든요.

아까 말하셨듯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문화나 여가비용, 문화 이런 거는 선형적으로 먼저 정해 놓고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00 위원

지역별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러면 복지관이면 뭐뭐, 소규모센터는 뭐 하면 그 데이터는 다 구축되어 있거든요.

기능을 수립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느 정도 다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6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간사님이 정리해 주시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두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제7호 안건

한강 상수원 및 지천 퇴적물 관리방안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7호 안건설명

제7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정책과 수질수생태팀장 윤창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심의를 받을 제목은 한강상수원 및 지천퇴적물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사업비 추정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요. 환경부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개요를 보시면 서울시 한강 본류 및 지천에 대해서 한강퇴적물 분포 현황과 퇴적물 오염도 평가, 그다음에 한강 퇴적물 영향분석을 통해서 중장기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연구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며 하천의 퇴적물은 저서생물 성장을 저해하고 조류발생, 그다음에 유기물 및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해서 하천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하천, 한강에 있는 지천이 있는데요.

특히 안양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공업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양천 하류에는 더 많은 오염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까지 한강에 대한 전반적인 퇴적물에 대한 오염도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관리방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오염실태와 오염유발원인을 진단하고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7호 안건심의

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용역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사실은 한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서울을 벗어난 한강으로 들어오는

지류 이런 쪽 포함을 하시나요?

아니면 서울시 경계부터만 하시나요?

제7호안건설명자

서울시만 하는데요.

지천 합류부, 특히 탄천이라든가 안양천, 중랑천 그쪽 합류부가 더 많이 퇴적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000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쪽에서 오는 쪽에 이런 부분들 바뀌 달라든지 이렇게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요?

제7호안건설명자

만약에 준설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 있는데요.

준설은 해당 자치구별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 경기도 지역에서는, 아마 그쪽에서 오염도조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범위가 확대가 된다면요.

000 위원

알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신 것 같네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밖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제7호안건설명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예.

제7호안건설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한강수질관리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원 장

그럼 환경부에서 주는 돈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제7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그런데 그걸 우리가 굳이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주는 돈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제7호안건설명자

그런데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 연구 주제는 사실은 제 연구 분야가 아닌데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려보고, 나름대로 하기 전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강오염과 관련해서는 수질오염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강 유입하는 하천이라든지 둔치라든지 이런 데에 토양오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 시장님 시장 오시면서 도시농업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도시지역에 토양이 오염됐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나.’ 이런 개인적인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혀 토양이 오염실태나 관리는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걱정으로 했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000 위원

그런데 한강이라는 게 길게 쭉 되는데, 서울시 딱 정해가지고 거기만

뭔가 대안을 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000 위원

그렇게 안 되겠죠.
왜냐하면 상류에서 공장에서 흘러 내려오면요.
문제가 발견이 되면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000 위원

발견이 돼서 ‘경기도의 모 지역에는 하지마.’ 이런 것을 서울에서 얘기를 했을 때,

000 위원

해야죠.

000 위원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요.

위 원 장

퇴적물 가지고 증거는 들이밀 수는 있겠죠.

000 위원

상류 자치구에다가 공단 같은 것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위 원 장

000 위원께서는 논의필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더 잘하라는 의미로 하신 건가요?

000 위원

용역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고요.
용역 전체에 대한 기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디테일하게 측정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 원 장

000 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인가요?

000 위원

예, 필요성은 인정은 되는데, 시료채취방법이라든지 회수라든지 그거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제8호 안전결론

위 원 장

방법론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두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제8호 안건

서울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제8호 안건설명

제8호안건설명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장 최관규라고합니다.
경제정책과는 R&D를 통한 신기술 창출, 그리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과 사업화가 유망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특구법 제4조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용역자료 등 자료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대전, 광주, 전북 등 총 다섯 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간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법령상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기업 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여건을 갖춰져야 되고 외국연구기관과 기업의 유치조건 등이 조성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양재지역 같은 경우에 280여개 대중소기업과 연구소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코트라 등 공공기관도 거기에 있고 인근에 서울대와 중앙대, 순실대 등도 같이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에 있는 홍릉지역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의학원이라든지 14개 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고려대, 경희대 등 학교도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마곡 같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124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연구특구로서의 최적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추가로 연구개발확대가 가능한 지역들을 검토를 병행해서 신성장 분야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과업내용으로는 서울의 여건분석이라든지 대상구역 설정, 연구개발 특구육성방안 등에 관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소요기간은 약 10개월로 용역비는 2억 원입니다.

유사한 용역인 동해안연구특구용역이 9개월 1억5,000만 원임을 고려하면 '다소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국내외 기업체라든지 연구기관들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분석과 전략수립을 위해서 비용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 특구지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인 과 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는데요.

다음 달쯤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연구특구개정요건들을 조금 더 완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수도권 지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의견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적인 미래먹거리인 R&D 분야에 대해서 연구개발특구지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8호 안건심의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000 위원

사실 서울 내에는 이미 특구지역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만일 새로 개발이 돼도 서울 근교에 경기도 판교나 송도지구나 일산 이런 쪽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경제우월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쉬울까요?

제8호안건설명자

경기도랑 어떤,

000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이런 특구들이 생기고 있는데, 서울에서 이미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데를 개발해서 또 한들, 그쪽과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제8호안건설명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각각의 특구가 특성이 다 있는데, 이거는 R&D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망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역별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과기정통부 쪽에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균형발전 측면에서요.

그런데 ‘최근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쪽도 일부분 적극적인 고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기존 특구와는 특성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000 위원

질문이요.

이게 인센티브가 있나요?

특구가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제8호안건설명자

기본적으로 세제재정지원, 방금 말씀드렸던 특구에 한 100에서 200억 정도의 지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세제지원이라든지 규제화나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특례를 적용한다거나, 그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R&D 용도로 한다면,

000 위원

제가 선생님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게, 이게 사실 R&D센터가 기본적으로 오피스건물 세우는 오피스센터잖아요.

그런데 강남권 오피스 공실률이 20%이고 강북도 20%가 넘어요.

사실은 이런 오피스가 과하다는 얘기이고, 이런 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줬을 때 그쪽에 땅값만 올릴 가능성이 심각하게 있어요.

이게 말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어떤 앵커가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재 같은 경우 땅 옛날부터 나오면 개발이 안 되잖아요.

제8호안건설명자

기존에 있는 자생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000 위원

이게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오피스센터라는 게 교통접근성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데, 여기 나와 있는 땅들은 그냥 나온 땅이잖아요.

홍릉 같은 경우 카이스트, KDI 나갔다 이렇게 해서 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마곡도 그렇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디스트릭트 존에 낳다고 했을 때 과연 될까.

예를 들어서 판교에다가 해봤어요.

그다음에 나타났던 일들은 강남하고 구로, 가산에 있던 자그마한 오피스회사들이 다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약간 정체기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오피스 디스트릭트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8호안건설명자

우선 땅값 문제 말씀 주셨는데, 용적률 부분은 사실은 무조건 용적률 완화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R&D 용도로 확대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연히 R&D 용적률 부분들은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도시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틀들을 정확하게 다 명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양재도 그렇고 홍릉도 그렇고 마곡도 그렇고 땅값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통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관련 해가지고 나중에 오피스가 만들어지거나 하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재배치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정부랑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R&D특구가 만들어지면 세계적인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이런 부분들 유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도 사전작업들을 바이오연구소라든지 미국에 있는 유수의 연구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홍릉 쪽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비전이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피스가 만약에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미래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되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양재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아닙니다.

그냥 테크씨티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뿐이고요.

아직까지 연구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도시계획과라든지 거기에서 전부 다 이런 것 컨트롤해가지고 다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도시계획 파트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제8호안건설명자

거기에 도시계획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기가 다 유통업무설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업무설비지구를 R&D에 맞게 시설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반영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부 쪽에서 연구개발특구라는 뜻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조화가 돼서, 그러니까 R&D특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쪽에서 같이 요건에 맞게 같이 진행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도시계획국 쪽에서 이거를 특구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00 위원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을 하게끔 하려면, 이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8호안건설명자

예, 맞습니다.

법 4조4항에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00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계획인가요?

법정계획 이거 수립 안 하면 지정신청해도 받아주지 않나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 안 됩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000 위원

양재, 홍릉, 마곡 세 군데를 하셨는데요.

이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뽑아낼 것인지요.

제8호안건설명자

기본적으로 R&D 쪽은 사실은 양재 쪽을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

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해서 홍릉 쪽,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곡, 그리고 그 외에 R&D가 혹시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같이 검토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000 위원

한 번에 몇 군데씩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우리가 다섯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수도권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8호안건설명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구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가 같이 엮어가지고 하나의 대구연구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특구 요건상 예컨대 몇 개의 기업, 그다음에 인근에 대학이 있어야 되고 인근에 산업단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요건들 다 요건으로 가지고 있는데, 시행령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마곡이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가지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시행령 규정은 완화할 계획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하면서 조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밖에서 혹시 모르니까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제8호안건설명자

예, 알겠습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제가 검토한 결과는 걱정이라고 했어요.

이유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제고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이 방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특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판교 담당하시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박사님 모셔서 여기에서 특강을 했었거든요.

여기 앉아계시던 서울시 공무원분들께서 한숨을 많이 쉬셨어요.

경기도가 저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판교밸리라고 하는 데 거기에 강남의 중요한 업체들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서울이 알짜기업들을 뺏기고 있어요.

경기도하고 경쟁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행히 중앙정부에서도 서울시에 이런 특구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제가 시립대학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민이라고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잖아요, 지자체 간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바로 그런 내용이다.

아마 어느 공간이, 어느 지역이 가장 적합한지, 아까 000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시장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R&D는 혜택이 많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연구원들이...환경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흥릉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적률을 높여주지 말고, 오히려 그런,

위 원 장

빈 데 많아요.

많이 빠져나가서요.

000 위원

예, 그러니까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하고, 그리고 서울에 인재가 제일 많죠.

가장 걱정하는 그런 연구주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위 원 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000 위원님은 부정적인 거죠.

000 위원

처음에 접근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쭙본 게 기존에 홍릉이라든지 마곡이라든지 아니면 양재이라든지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법정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지정이 된다고 하면 국비도 투입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요.

위 원 장

약간의 오해는 풀으셨다는 말씀이시죠?

000 위원

예.

제8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것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한분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안건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집합건물 먼저 하겠습니다.

제10호 안건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운영체계 개선방안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센터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0호 안건설명

제10호안건설명자A

주택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일단 연구배경은, 서울시에 집합건축물이 12만9,000동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되는 게 1만6,000동, 나머지 11만 3,000동은 법적관리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4년 전부터 집합건물에 대한 그런 공공성 차원에서 집합건물 관리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보니까, 행정지원서비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합건물의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에 1, 2인가구가 늘어나는데 1, 2인가구가 53%인데, 그 53%를 수용하는 건물 중에 오피스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최근에 인허가하는 실적을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요.

05년에 15만 동, 10년에 23만 동, 15년 32만 동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 2인 가구, 청년세대들이 집중해서 거주를 하는데, 여기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샘플로 10개 단지 플러스 10개 해서 한 20개 단지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조사를 25개 자치구 확대해서 조사사업을 후에, 이것을 토론회를 거쳐서 입법제안을 강력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법무부에서 이 법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인데 법무부 소관 법인데, 이것을 국토부에서 관리 부분은 떼어서 새롭게 법을, 법무부를 개정할 안 해주니까 국토부 법으로 해서 관리법만 만드는 방법,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만드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계속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게 ‘그럼 서울시의 상황, 실태 이런 것을 자세히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성과를 일단 그쪽에 제시하고, 내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입법제안

내용까지 합쳐서 구체적으로 제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참고로 분쟁조정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민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하루에 전화를 평균 열통씩 정도 받고 있고요.

직원 한두 명은 아예 민원처리 하느라고 업무를 못 볼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문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일주일에 두세 건, 분쟁조정이 올해만 현재 27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민원은 총 합치면 100건 정도 공문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게 법무부에서 소관하다 보니까 행정청의 조직이나 인력 이런 게 배분되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렵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목적의 연구입니다.

제10호 안건심의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이 과제가 예산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과 의견들도 보면 그런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다른 과의 검토의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원래 1억5,000으로 냈다가 조정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적혀있는데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작년에 1억5,000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5,000만 받아서 올해 5,000을 가지고 아까 20개 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억을 내년 25개 자치구의 전체적인 조사를 하려고 다시 올린 것입니다.

000 위원

올해 조사를 하고 있고,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조사를 올해하고, 조사가 그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아니요, 올해는 샘플조사를, 아까 10개, 10개 해서 20개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까 보시면 11만6,000동인데, 집합건물이 오피스에도 있지만 150세 미만의 주택, 소위 말하는 연립다세대, 2호 이상부터 149까지는 다 집합건축물에 의해서 비율이 됩니다.

나머지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해서 유형별로 심층적으로 관리비 비리나 관리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유형별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시가 이미 표준관리비라고 배포를 해서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관리비라는 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채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입법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000 위원

제가 여쭙본 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년도도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000 위원

그런데 용역비에는 조사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이 말씀하시는 거랑 432 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가진 것에 조사비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조사비가요?

000 위원

예.

제10호안건설명자A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00 위원

그리고 이게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집합건물이라고 하니까, 주택
과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상가는 제외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제10호안건설명자A

고민 중입니다.

상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고요.

상가는 저쪽...하는 다른 법이 있거든요.

상가는 별도로 해서 하고, 그거까지는 포함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
니다.

000 위원

한 가지 여쭙보고 싶은 게 오피스텔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오피스텔이 주타겟이고요.

그다음이 149,

000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를 해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임대를 안
해주고 에어비앤비에 내놔가지고 굉장히 고소득을 올려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회사의 경영원칙하고 어긋납니다.

어떤 면에서 시에서, 위원님들 가셨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의견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임대주택을 계속 짓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1인, 2인 가구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임대 안 내주고 에
어비앤비에 내놔요.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어요.

공급은 늘어나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에어비앤비에 자기 집을 빌려줄
때 반드시 집주인이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는 두 달 이상 임대를 못 해줍니다.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요.

한 달로 조례로 그렇게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서울시에서 8만호를 공급했다고 그래도 이게 다른 용도

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가지고 정책이나 이것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위 원 장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문제도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관리실태조사 부분이 아마 그런 것도 포함될 겁니다.

위 원 장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저희가 조사하는 방법도 이미 올해 테스트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등기부 열람 같은 것을 해가지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 거주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이미 분석해서 법무부한테 제안했는데, 거주비율이 5%에서 10%를 넘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자가 거주하는 비율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은 사람은 다른 데 살고 있고, 다 임차인이 살다 보니까 더더욱, 공동주택은 반은 살거든요.

평균적으로 반은 세입자, 반은 집주인이다 보니까, 동대표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자기들 권익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데, 오피스텔은 제삼자인 저희가 나서지 않으면, 아까 말했던 청년들 그냥 관리비 고지 나오면 볼 줄도 모르잖아요.

‘비싸네.’ 그러면서 내고 있고, 뜯어보면 공용관리비라든가 안 내야 될 것을 갖다가 오피스텔 자기 주거비용에 얹혀놓기도 하고, 밑에 상가 부분에 전기료를 이쪽에 잘못 부과한다든가 이런 실태들이 심각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나면 매뉴얼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각 구청에다가 집합건물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부분은 행정적 지도를 해라.’

그리고 법 뒷부분에 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작동을 시켜볼까 합니다.

000 위원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그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하야트호텔 앞에 본사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주인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할 그런

게 없어요.

위 원 장

관심이 없죠.

000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제도 도입해야 돼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위 원 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000 위원

현재 5,000만 원 예산 작년엔 심의한 것, 그거 가지고 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해보니까 지금 현재 10개 단지 플러스 10개인데, 서울시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문해 주는 단지 10개, 그리고 주택관리협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쪽 협회에서 준 단지가 있어요.

20개를 놓고 거기는 관리인, 입주민, 그다음에 관리주체, 그다음부터 주요 이슈를 도출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형별로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나누어서 주요이슈를 올해 도출하고, 그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한 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중반에 공청회를 크게 하려고 해요.

시의회든 아니면 국회든 통해서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입법보완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그 용도로 이게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000 위원

그러니까 현재 5,000만 원 가지고 있는 용역은 언제부터 언제 끝나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올해 12월에 끝납니다.

000 위원

언제 시작했는데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지난달부터요.

000 위원

8월 달부터 12월 달이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한 3개월 정도요.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센터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000 위원

관련 돼서, 집합건물 관련 돼서는 여러 가지 관리비나 규약 같은 것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용역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게 공청회하고 법령개선을 건의를 하겠다고 활용목적인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겠다는 목적 자체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10호안건설명자A

일단 실태파악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아까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유형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도출되고요.

그 도출된 것을 가지고 ‘이렇더라.’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관리인제도를 바꾼다든가, 표준규약을 아예 국토부에서 제안한 게 집합건물 분양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아예 규약을 넣어야 된다.’ 이런 강행규정을 넣어서 이게 행정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

000 위원

그러니까 실태 파악하는 것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거고요.

실태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면,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법령제도개선밖에 없는 것이지요.

제2호안건설명자

아니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한 여덟 개, 이미 하고 있는, 이것 연

구 예산 말고 집합건물 지원 사업비가 한 1억8,0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민원이 발생한 단지에 자문단을 파견해서, 변호사하고 관리사 세 명씩 쌍으로 파견해서 30개 단지 자문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아카데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규약, 해설집 등등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고요.

000 위원

용역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요.

여기 계획 보면 그렇게 써놓으셔가지고 제가 여쭙본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요.

제10호안건설명자A

활용은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위 원 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표자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10호안건설명자A

예.

제10호안건설명자B

집합건물담당인데요.

보완적인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위 원 장

잠깐 하십시오.

제10호안건설명자B

저희가 하는 학술용역은 새로운 집합건물 유형들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춤형 지원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다세대나 빌라나 오피스텔 그다음에 주상복합, 15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각각 개개별로 맞춤형 지원방안관리제도를

내년 학술용역을 해서 발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제10호안전건설명자B

수고하십시오.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오피스텔이 워낙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돼서, 단편적인 연구들은 있는데 종합적인 연구가 없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비가 이상한 거예요.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조사비는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내용하고 그런 것들의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요성 자체는요.

위 원 장

000 위원께서 빨간 글씨로 쓰셨는데요.

000 위원

첫 번째로는 어차피 집합건물관리실태 제도개선인데, 작년에 어쨌든 1억5,000만 원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일단용역을 해라.’

그런데 아직 5,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2차 용역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일단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하는 내용은,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아까 법령개정 건의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법령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000 의원 외 14명이 발의되어 있어서, 이거는 관리비공개라든가 집행시에 입찰방법응모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법안

이 계류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부랑 여기랑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내년도에 이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작년 12월9일 날 법무부에 또 1차 우리의 의견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용역을 한다는 게, 아까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용역이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주택건축국 내에서는 주택정책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센터에도 연구위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선행연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샘플링한 것을 가지고 도출해낼 수 있는데, 그 도출해 낸 게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도 되는데,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20개가 모자라니까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 부적정,

위 원 장

금년에 나오는 것 아닌가요, 그 5,000만 원이요?

000 위원

금년에 5,000만 원 가지고 12월 달에 나오는데, 그 연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데 또다시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00 위원

이거는 내년도 사업안인가요?

000 위원

내년도 사업이 1억입니다.

현재 5,000만 원, 작년 학술에서 통과된 것 1억5,000인데 ‘그중에서 5,000만 원만 용역비로 해라.’라고 삭감이 돼서 그 5,000만 원 가지고 올해 9월 달부터 12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올해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내년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2월 달에 법령개정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거를 가지고 내년도에 1년 연구해갖고, 법령개정이 작년 2월 달에 됐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또 법령개정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첫째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특별하게 결론도 안 나와 있는데 또 다시 한다는 거랑 두 번째 현재 법령개정이 다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내년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올해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년에 확대한다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부적정이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위 원 장

저는 무슨 생각을 하나면 일관성이 중요하니까, ‘금년에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1년 쉬었다가 그다음에 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계속 연결시켜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 그나마 이번에 하는 게 한 20개 정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집합건물의 카테고리를 만든다면 20개가 훨씬 더 많이 넘지 않을까요?

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몰라서, 더 경우의 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000 위원

저도 의견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정을 잘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한 면도 있고 말씀해 주신 것도,

000 위원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아까 마지막 부분에 이거를 해서 법안할 때 제안서 비슷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또 계류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처음 봤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못 봤는데, 그러면 ‘괜히 중복으로 예산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제삼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10호 안전결론

위 원 장

참 어렵네요.

그러면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할까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여섯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몇 분 중에 여섯 분이죠?

간 사

정족수 확인해 보면 열세분 위원 중에 현재 세분 가시고 열분이십니다.
열분이니까,

위 원 장

열분의 과반수죠?

간 사

예, 과반수이기 때문에 성원은 됐고요.

그중에서 또 과반수이기 때문에 여섯분 이상이면 됩니다.

이거는 여섯분이 걱정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위 원 장

죄송합니다.

이 안건은 걱정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000 위원

보완의견에 예산이나 용역운용에 관한 것을 보완사항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위 원 장

그거는 해주십시오.

000 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위 원 장

예.

000 위원

이거 적을 때 결정은 그렇게 돼도 제 의견을 적으면 되는 거죠?

위 원 장

그럼요.

000 위원

여태까지는 제가 했던 대로 됐는데 이번에 다르게 됐기 때문이에요.

000 위원

적어주시면 저희가 걱정으로 통보를, 보완으로 하라고 같이 통보를 하
거든요.

위 원 장

아마 더 중요할 것입니다.

찬반보다는 보완의견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열네 번째 동주민센터 하겠습니다.

제14호 안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성과관리 학술용역 추진계획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4호 안건설명

제14호안건설명자

안녕하세요. 동혁신팀장 김현미입니다.

저희 과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사업 성과관리 학술용역입니다.
과업의 배경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명확한 진단을 통해서 쟁점을 도출하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합니다.

저희 사업을 복지과 건강 그리고 마을, 여성가족, 그리고 행정이 융합
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기 때문에, 각 사업이 융합되어서 지역의
변화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장기성과평가체계가 필요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찾동사업의 성과측정과 분석, 그리고 찾동사업으로 인한 지역사
회변화 양상도출과 학술적 분석, 그리고 사업인지도와 만족도조사를 통
한 성과의 진단과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과업을 시행하게 되
었습니다.

과업수행기간은 2018년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

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14호 안건심의

위 원 장

다 되셨나요?

제14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2차 사업을 하셨고, 3차를 하는 이유가 사업참여 구·동이 증가함으로써 다시 조금 더 해 봐야 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사대상의 범위확대 이외에 전과 다른 차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2차와요?

제14호안건설명자

저희가 3단계 사업을 할 때는, 1단계하고 2단계에 시행했던 자치구가 모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구와 기존에 했던 구들의 비교분석이 가능하고요.

저희 사업모형을 약간의 융통성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적용하는 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분석 같은 게 필요하고요.

저희 사업은 또 사람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의 사람의 변화, 참여의 변화, 주민자치 사업이 연차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서울연구원으로 지정하셨는데요.

그분들이 1단계와 2단계에서도 참여를 하셨었습니까?

제14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일관성은 확보를 하실 수 있으시겠네요.

제14호안건설명자

예, 그거를 위해서 서울연구원에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같은 기관에서 또 맡겠다고 하니깐 말씀드리는 건데, 2차와 3차에서 큰 변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용역의 방향성이나 접근법이요.

그리고 연구기간이 거의 동일하고, 그런데 연구용역비는 9,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연구를 연장하는 건데 같은 비용이 드는 게 걱정할까요?

제14호안건설명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사업이, 이 과업이 진행하기 전에 순서적으로 보면 지표개발에 대한 연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 사업이 지표개발을 먼저 하지 못하고 성과관리를 먼저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면서 지표를 새롭게 계속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변화가 안 됐다기보다는 계속지표를 보완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역이 처음에는 건강하고 마을 그리고 행정만 결합을 해서 갔는데, 2차 년도에 여성이 결합하고 3차 년도에 아동이 결합하고 이러면서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초설계에서 반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가면서 필요에 의해서 계속 사업이 확장되는 것인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연구와는 범위에 있어서, 대상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000 위원

제출하신 연구과업 내용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런데 계획서만으로는 시민, 공무원의 체감도 인지도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초기 기초적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혁신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 정보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복지와 그리고 마을공동체설립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결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고 사회실험적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차, 2차를 지나서 3차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1차, 2차 수준의 조사목표, 체감도, 인지도 이런 거는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요, 이미 이 사업과 관련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상의 문제들, 현장가들이 이런 서베이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성과도 있지만, 현장에서만 느껴지는 문제점 이런 거는 단순한 1, 2차 정도의 그런 기초 서베이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접근법, 예를 들면 관계자 심층인터뷰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지, 그런 학습과정 같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4호안건설명자

예,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문가회의를 3단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시차가 있어서 여기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정성적 지표라든가 질적 연구에 대한 고민들을 내년에 반영을 하고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은 못 했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내년에 꼭 반영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14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밖에서 잠깐만 대기해 주십시오.

혹시 저희가 질의할 수 있거든요.

제14호안전설명자

예.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교수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말씀드렸듯이 복지서비스전달체계 혁신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실험적이라서 이제 초기단계이고, 또 해가면서 계속 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리고 조직의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3단계 정도에서 조금 더 세밀한 연구방법을, 연구설계를 해야지 소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보완이 된다고 한다면,

위 원 장

그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해 주실 수 있으시죠?

000 위원

예, 여기에 이미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000 위원께서 조건부라고 하셨는데요.

000 위원

인건비가 과도한 부분을 조정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제14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분 다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열다섯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15호 안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현장지휘 시뮬레이션 훈련의 효과성 검증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제15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
곤입니다.

위 원 장

앉으십시오.

제15호 안건설명

제15호안건설명자

유인물을 보시면, 아마 생소하실 것 같아서,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는 사실상 세월호 사고 이후에 초기재난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적으로 지휘관을 훈련해
야 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응재난을 항시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재난현장,
흔히들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하고 있
는 센터인데요.

시작 된지는 한 2년 정도 경과되어서, 나름대로 실제 훈련을 한 지휘팀
장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
이 있으나, 실제 이 훈련이 현장에 얼마나 효과성이 있고 또 대응재난
이 발생했을 때 지휘팀장이 이 훈련을 받기 전과 후가 어느 정도 효과

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저희들이 하고자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23개의 소방서에서 공히 다 대규모 훈련을 매일 같이 실시하고 있고, 이 사례를 외국의 대만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우수사례로 생각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훈련커리큘럼은 무조건적으로 소방서와 자치구만의 훈련이 아니라, 최초 신고하는 시민들의 행동패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VR을 이용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이 신고하고 초동대응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지휘팀장, 그리고 각 내부에 들어가 있는 소대장과의 무전, 그리고 판단 그것을 중요시하는 응급구조 지휘대훈련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해서 소방서 전체가 가동되는 통제단 훈련까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번 파트가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훈련에 대한 분석이고, 두 번째 파트가 소방의 지휘대하고 서장이 중심인 통제단 훈련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1, 2번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각 1개월마다 진행되는 이 훈련을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3번 단위 및 전체훈련 종합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 지휘관 분석관리는, 현재 24개 소방서에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72명의 지휘팀장이 있는데, 이분들의 능력이 각자 어떻게 특화가 되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사항이나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관 분석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섯 번째가 이런 시뮬레이션훈련이 실제 서울에서 발생하는 대응 1단계 이상의 비상상황, 대응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이 훈련을 받았던 지휘관들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증할 목표로 5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번이 이런 1, 2, 3, 4, 5번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 가지 평가의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평가지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느 정도 개발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이렇게 학술용역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5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

000 위원

두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VR 시뮬레이터가 아까 2년 정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학술용역을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현재 시뮬레이터의 콘텐츠의 문제가 있어서 바꾸거나 업그레이드해야 되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15호안전설명자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에다가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적인 개념이고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서울시청의 가상환경을 만들고, 경복궁의 가상환경을 만들고, 도림천이나 지하철역 이런 것들 광범위하게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그래픽전문가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뮬레이터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중간 중간마다 이벤트적인 사항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000 위원

두 번째는, 용역을 맡은 팀이 VR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나요?

제15호안전설명자

VR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VR 시뮬레이터 주도적으로 훈련하는 교관하고 조교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1, 2, 3번으로 각 훈련마

다 와서 분석을 해달라는 이유도 판단할 때 있어서 같이 공히 되기 때
문에 별도로 분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정도,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보조요원이 상
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이 용역을 서울시립대에 수의계약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15호안전설명자

예, 맞습니다.

위 원 장

서울시립대학에 이런 화제에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방재나 그쪽이 있습니까?

제15호안전설명자

예,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가 있고요.

사실상 서울시 도시방재연구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서울소방
재난본부에서 소방관에 대한 직무분석을 그동안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
왔었고, 또 사실상 이 훈련 시뮬레이터를 도입하는 단계에서 외국의 사
례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지 많았지만, 중간 중간
마다 이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장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지금도 계속 조언을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분들께서는 나름대로 지휘능력하고 그다
음에 그것에 대해서 불을 어떻게 끄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그 전문적인, 개별적인, 전술적인 것을 현장에
하나로 통합하고 일원화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는 편입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000 위원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효과성검증이 필요하나요?

법적으로 필요합니까?

제15호안전건설명자

법적으로 사실상 그 정도 단계까지 재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많은 훈련을 했고, 소방훈련뿐만이 아니라 해양경찰이 모든 재난에 대비훈련을 하게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35조에 적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이 정말로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훈련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면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 대응 1단계에 대한 비상 상황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시청에 불을 지르고 진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기에는 교통이나 예산이나 현실적으로 여건이 없어서, 가상의 시청을 만들어놓으면 언제든지 전기만 들어오면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어서 VR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훈련을 했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괜찮다. 그리고 현실감 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 했더니 얼마나 현장에서 대응 1 단계가 발생하는 비상상황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이것을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000 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데 효과가 있을 텐데 이거를 꼭 검증을, 법적으로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면 왜 검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15호안전건설명자

양적이고 질적인 효과성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훈련이 끝나면 대부분 다 그러합니다.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보니까 소방관분들이 ‘나는 현장에서 최고인데 이런 굳이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데 와가지고 이 이거를 시키느냐.’고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의 부족한 점을 알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저희들은 반드시 시행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양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이야기가 나왔으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돌발적인 상황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간단한 질문, VR 시뮬레이터를 만들 때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제15호안전설명자

실질적으로 훈련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약 3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3억이라는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해 각각의 재난상황을 하는 가상현실은 한 개당 약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재난유형이 총 55개의 유형이 있고, 55개의 유형 중에서 시민초동조치하고 재난의 대응이 중요한 유형은 29개 유형이 있고, 이 29개 유형을 어느 정도 만들면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은 어느 정도 다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한 열 가지 정도가 가상현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000 위원

감사합니다.

000 위원

연구인원 19명 정도 되는데요.

제15호안전설명자

예, 총 연구인원은 19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단계별 여섯 가지의 유형별로 19명이지, 실질적으로 1년간에 투입되는 인원은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은 최소 인원은 3명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분산이 된다면 즉, 1번 유형은 두 명, 2번 유형은 한 명 이렇게 해서 합산시키면 그 정도 됩니다마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한두 명이 지속적으로 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거는 학술용역을 쥐가지고 평가를 외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못 해요?

제15호안전설명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으로는 아전인수격의 어떤 설문조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가 이번에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실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15호안전설명자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제가 사실은 평가하면서 논의필요라고 했던 이유는, 처음에 질문했던 그 두 가지가 확실치가 않아서 그래서 논의필요라고 했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적정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VR 시뮬레이터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보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도 굉장히 겸손하게 내셨고 그래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5호 안전결론

위 원 장

예.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실 것 같아요.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열분 다 걱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제16호 안건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앞으십시오.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16호 안건설명

제16호안건설명자

과학기술팀장 나일청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법정용어이고, 사실상은 드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전반에 대한 시장은 연 평균 1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4년 기준으로 53억 불인데 23년에는 125억 불 정도로 커질 것이고, 특히 드론은 군수용과 상업용, 레저용 이런 것들로 나뉠 수 있는데, 특히 상업용은 10%보다 더 세 배 정도 큰 35%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현재는 0.6억 달러 수준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23년에는 한 9억 달러 정도로 상승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산업적 상용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관심이 최근 드론레이싱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에도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올해 6월 달에 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는 드론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정 사항으로 정해져있어서, 전반적인 산업동향이나 정책동향, 그리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산업육성 기본방향,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저변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6호 안건심의

위 원 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드론에 관련된 것을 서울시에서 하지 않고, 예전에 미래창조과학부나 또는 지금 이름 바뀐 과학 이런 데서 내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 용역을 내야 되나요?

제16호안건설명자

일단 정부에서 당연히 전략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드론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이동체 발전계획이라는 것을 작년에 발표한 게 있고요.

거기는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자동차나 그다음에 해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을 육성할 때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원천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소한 그런, 특히 중소기업 육성 관련된 전문적인, 거기에 포커스된 산업육성정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위 원 장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사실은 연구개발내용 중에 핵심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서울시 내에서 어디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또 영역별로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16호안건설명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드론산업육성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000 위원

맞습니다.

제16호안건설명자

왜냐하면 사대문 안은 비행금지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지역이 관제권역이라고 해서 제한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도 광나루 쪽에, 저쪽 강동구 끝에 간신히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 마련해 봤는데, 그래서 수방사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서울에서 드론 실제로 할 수 있는 비행권역을 확보할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그래서 건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그거를 보통은 비행장치 등록만 하고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날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록하지 않은 비행기를 날렸든지, 아니면 야간 시간대에 승인받지 않고 날린다든지, 그런 상황을 하다가 사고가 났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분쟁을 조정해 주고 그런 안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각 지자체까지 뿌리가 내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중앙에서 무엇을 하고 지방에서는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서 역할분담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000 위원

연구개발 이렇게 많으신데요.

위에 것 다 빼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비행구역검토라든지, 안전운영을 위한 대책마련 이렇게만 축약해서 제안서를 내실 의향은 없으세요?

제16호안건설명자

메인은 산업육성이라서요.

서울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선도전략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준비 중에 있고 그중에 세부적인 게 드론인데,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균형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이 굉장히 많은 정부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서울이 먹고 살거리를, 특히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먹거리를 찾으려면 산업육성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정부랑 일정 부분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양재, 마곡, G밸리 이런 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산학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드론에 대해서 연구해서 서울시의 사업체를 만들어내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감사합니다.

위 원 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000 위원

드론산업 산업생태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혹은 기술개발이라든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R&D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산업에 포커스를 맞추면 규제합리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실험을 위해서 한번 띄우려면 국방부, 수방사, 안전처, 관할지자체 네다섯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런 규제 문제, 산업환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16호안건설명자

정부부처 단위에서 보면 말씀하신 부분이 과학기술과 산업기술로 양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과학기술과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주로 하는 산업기술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되는데, 제가 과학기술팀장이기는 합시다마는, 막상 실무 단위에서 뛰어보면 과학기술하고 산업기술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원천기술 없이 상용화는 안 되고 상용화 없는 원천기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과학기술팀장이기는 합시다마는, 산업기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D 같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산학연 네트워크 필요하고요.

그리고 규제 같은 부분은 4차 산업혁명 하려면 기본적으로 규제가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규제프리존을 정부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지역의 몇 가지씩, 한두 개씩 툭툭 던져주는 기분이어서, 그거 말고 실제 실증할 수 있는 규제개선책에 대해서 정부하고는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빡했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말씀 다시 하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호안건설명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예.

사실 무인 관련된 기술은 저희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가지고, 지난 정부에 미래창조부에서도 많이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가성비가 중국을 못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특히 같은 데 다 걸리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도요타가 80% 이상을 특허를 다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 봐야 그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드론도 사실은 그런 상황에 있고, 팔리는 것의 거의 6~70%가 중국제가 쓰이고 있고, 그래서 핵심기술개발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사람들이 사서 사용을 하니까, 서울시내에 비행구역 검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서울시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드렸는데, 또 그거는 거부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예산낭비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위원장

그런데 이 산업을 서울시가 하는 게 맞나요?

000 위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16호 안건결론

위원장

아무리 생각해도 산자부나 그런 데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노는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는데, 산업육성이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결정하시죠.

각자 생각하시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사

한분도 안 계십니다.

부적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세 개 남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가네요, 오늘은요.

제17호 안건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 고용모델 개선 실행방안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구면이시죠?

제17호안건설명자

예.

위 원 장

지난번하고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작해 주십시오.

제17호 안건설명

제17호안건설명자

tbs 교통방송 미디어정책실 연구위원 김연수입니다.

tbs 교통방송 프리랜서 고용모델개선 실행방안 연구 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저희가 심의에 제출한 안건이었으나, 아시다시피 부적정으로 발표된 바 있고요.

그때 당시 보완사항으로 제기된 것이 연구에 앞서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한 내부적 절차와 향후 재정소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마련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tbs 프리랜서 노동현황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서, 이 결과를 정리하여 재심의 받을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이에 7월25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9월22일 완료되는 tbs 프리랜서 노동현황실태조사 주요결과를 미리 말씀드리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개월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요.

내부 프리랜서 기초현황자료 및 행정조사표 분석하고,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면접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한 계약 및 존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조직 내 차별 등 현재 애로사항들을 바탕으로 고용구조개선의 필요성 등이 객관적인 틀 안에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tbs 교통방송은 여러 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규직 범주에 포함되는 인력은 일반 행정직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전체 6%에 불과하고요.

방송 실무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 인력이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프리랜서도 그중 하나이며, 임기제공무원과 파견용역직원도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방송 실무를 맡은 조직구성원 비율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51명의 임기제공무원과 179명의 프리랜서, 87명의 파견용역직원들로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임기제공무원보다도 프리랜서와 파견용역직원 합한 수가 두 배 가량 더 많은 상황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유사업무, 예를 들면 카메라감독이라는 직종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프리랜서로도, 또는 파견용역으로도 고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유사업무에서 혼재된 고용 형태로 존재하는 직종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고용불안정, 저임금의 복지, 사회보험 미적용 등이 부수적인 문제들로 함께 지적이 되었고요.

이 같은 실태에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구조전환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정리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 새로운 고용 형태로의 변환, 프리랜서 유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근로자성, 상시지속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직종별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체 tbs 프리랜서 179명 중 상시지속적이고 또 비교대상에 정규직이 존재하는 업무, 제가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에 자세한 사항은 뒤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나운서, PD, 카메라 등 29명은 정규직 풀타임으로의 전환논의가 필요하며, 상시지속적 방송지원업무인 MD, 전화, SNS 등 제작보조업무를 맡은 7명 역시 정규직 풀타임으로의 전환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지속성은 있으나, 현재 존속성이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고용 형태의 모색이 필요한 직종은 리포터, 객원기자, 초고 및 서브작가, 편집 등으로 97명 내외입니다.

계약직 기간제 및 계약직 시간제 등 현재 프리랜서보다 고용안정성 및 기타 다른 측면에서의 보호를 강화한 고용 형태 변화가 요구되는 직종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직종으로는 VJ, 메인작가, 분장, 음악 등이 있으며 인원은 33명 내외입니다.

프리랜서를 유지하되, 프리랜서로서의 권리나 보편적 인권보장 등에 대해 더 발전된 방식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요결과는 내부적 요인만을 중점적으로 파악한 것이고, 지난 7월 기준으로 인원을 재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연구용역에서 보다 다양한 변화를 두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유관부서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정교한 인원과 직종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외부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인 tbs 프리랜서들과의 면담, 설문 등을 통해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며, 이것이 바로 저희들은 기초적 내부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사는 tbs 교통방송, 그중에서도 프리랜서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도출한 결론으로 정책적 합의라든가 서울시의 내외적 상황, 재정적·행정적 요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정소요증가분에 대한 분석은 학술용역을 통해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은 사전 제출한 대로 총 2개월간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구체화하고 고용모델개선안을 마련하되, 미전환 대상자 인력운영방안도 함께 포함시켜 연구함으로써, 비정규직 인사제도 및 처우개선 세부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전환 대상 직군 관련 직무체계설계라든지 평가체계, 임금테이블, 교육 시스템 등 또한 주된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tbs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모델개선안을 위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에 추진할 tbs 재단법인화 타당성검토 연구의 조직 및 인력운영방안에서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 주관부서로서 차질 없이 진행하여, tbs 교통방송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고용체계 및 노동환경, 인사시스템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호 안건심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들 자유롭게 내주시죠.

하십시오.

000 위원

설명을 하시는데, 거의 다가 답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부분은 몇 명이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게 전부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검토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직접 하시면 안 되나요?

제17호안건설명자

저희가 직접이요?

000 위원

예.

제17호안건설명자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고민은 해박야 될 요지가 있는데, 실태조사는 아주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이고, 다른 외부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 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내부적인 부분에 관한 실태조사이고요.

이거를 정책적인 방향을 잡는 건데, 첫 번째로는 전문성의 측면에서 tbs 내부에서 노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회학적 베이스를 기본으 로 하는 충분히 전문성을 검증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게 첫 번째 문제 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객관성이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외적인 신뢰도,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해관계자의 하나 가 될 수 있는 tbs 교통방송 직원이 연구를 진행한다는 게 향후 정책 으로서 이것이 활용될 때 충분히 탄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000 위원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게 인사조직 분야 전문지식을 요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필요 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외부연구기관보다는 공무원직접수행 학 술용역 같은 것 어떨까.’ 하는 대안을 조심스럽게 내보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내부의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내부 자들이 아는, 결국은 내부에 있는 노무 관련 분들, 인사 관련 분들이 주도적 참여가 되지 않으면 힘든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가 와서 얘기하기가, 알아내기가 참 힘든, 결국 내부자들이 안을 내지 않으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이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제대로 용역하실 분들이, 연구하실 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객관성을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정규직 전환 문제는 객관성을 잘 믿지 않아요.

결국 노사 간의 합의가, 협의가 중요한 분야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정말 누가 해도 과학성, 객관성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부소통과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접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17호안건설명자

적극 협조를 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연구진들에게요?

000 위원

그래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 원 장

쿠션이 필요할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것은 아닐 거고, 그거를 포장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인데, 통상은 이런 거는 학술용역으로 하지는 않고요, 컨설팅회사에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교수들이 달려들면 조금은 객관성은,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쪽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구성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누구를 정규직을 만들고 누구는 빼고가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000 위원

그런데 용역을 2개월로 하셨는데 2개월에 가능하나요, 이게요?

제17호안건설명자

‘너무 짧은 것은 아닌가.’ 라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000 위원

저는 너무 짧아서,

위 원 장

제 경험은 충분합니다.

000 위원

그렇습니까?

위 원 장

저한테 말한다면, 이미 내용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논리가 중요하지, 무엇을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000 위원

저희 영역에서 2개월짜리 연구가 없어가지고요.

제17호안건설명자

사실 앞에 실태조사결과를 말씀드렸던 실태조사가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들어가는 작업을 미리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원 장

미리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17호안건설명자

개별심층면접이라든지 온라인 서베이를 다 돌렸다면 하는 그런 과정이 2개월 앞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으로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2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주 생각하는, 아주 표면적인 2개월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게 가이드라인이 벌써 연 근무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정규직 전환으로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제17호안건설명자

파견용역직에 한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000 위원

만약에 정규직 전환이 목표라고 한다면, 9개월이 안 된 사람을 9개월을

만드는 식이 되지 않을까요?

제17호안건설명자

저도 물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과건용역과 프리랜서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요.

과건용역의 경우에는 87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2년 계약 단위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시책방향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따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물론 그 진행과정도 tbs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재정적인 소요분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따로 진행될 부분이고, 학술연구용역과 실태조사의 메인이 되었던 것은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따로 9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연구진이 판단했었던 근로자성이나 상시지속성 외에 자유의지라는 측면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측면 중에 자유의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종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나는 프리랜서로 남아있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한 부분을 학술용역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룰 예정이고, 9개월이라는 부분은 아직, 9개월 기간 초점을 맞춰서 정책적 방향에 좌우되지, 저희의 터치를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00 위원

저는 그런 기준에 의하면 결국 답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의지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객관성으로 뭐가 어떻게 연구가 될까하는 생각에,

제17호안건설명자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미리 준비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직종별로 조금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면 추후 연구진들이 이 부분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이분들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라는 기관이 컨설팅기관인가요?

아니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들이 낀 조직인가요?

제17호안건설명자

기본적으로 박사급 연구원들과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작은 부티크연구소 같은 느낌의 연구소입니다.

위 원 장

주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나요?

제17호안건설명자

예, 컨설팅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000 위원

이 문제는 정부의 정책도 관련이 있고요, 시도 마찬가지로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송국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도 공영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도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위 원 장

고려된 게 아닐까요?

‘거기도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니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000 위원

프리랜서 말씀하셨는데 방송국에 가서 보면 원해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가정주부 분들.

제가 여쭙보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해서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17호안건설명자

프리랜서라는 그런 고용 형태가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또 그래서 프리랜서는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직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tbs뿐만 아니라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는 다른 타 방송사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꾸려나가자는 측면에서 시장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결과 국내 방송사도 평균 프리랜서 비율이 43.3% 정도 됩니다.
tbs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 거고요.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실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제17호안건설명자

감사합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000 위원

말씀드렸듯이 인사조직 분야 전문지식이 요해지는 분야라서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정부의 의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필요하기는 하는데 과제수행 방식에 있어서 직접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충분한,

위 원 장

나중에 혼나면 큰 일 나니까 그렇게 못 하죠.

000 위원

그러니까요.

위 원 장

밖에다 말기는 수밖에 없어요.

000 위원

이게 재심인데 처음에 하셨던 분이 위원장님,

위 원 장

저는 그때 있었어요.

000 위원

또 다른 분 계세요?

000 위원

저도 심의할 때 있었어요.

000 위원

그러면 그때 지적된 사항들이 다 보완이 됐나요?

위 원 장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을 가지고 왔고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해졌고요.
그전에는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갈팡지팡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리가 돼서 오신 것 같습니다.

000 위원

알겠습니다.

제17호 안전결론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일곱분 걱정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이 안전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다음 안전도 지난번에 재심의하는 안전입니다.

제18호 안전

서울특별시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 연구

위 원 장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직접 오셨는데 이게 한 번 했던 안전이죠?

제18호안전설명자

예.

위 원 장

과장님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18호 안전설명

제18호안전설명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본 사안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 한 번 심의를 받았

던 사안입니다.

당시에 재심의결정을 받게 된 배경은 지적들 해주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에는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고 그리고 기존 자료의 활용, 관계부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기존 조직의 정원은 기존업무에 따라 정해지는 반면에, 이러한 새로운 업무영역에 대한 탐사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연구는 필드스터디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현실적으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덧붙여서 전에 심의 시에는 정책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조례제정이라는 부분을 타이틀에 올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 부분이 유일한 과업인 것처럼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금회에는 연구내용을 서울지역 노동시장 및 가정생활현황분석, 그리고 서울시 일가정 양립지원 실태조사, 그리고 서울시 일가정 양립 관련 고용노동복지정책을 타 시도라든가 해외사례와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토대로 시에서 직접 추진할 부분과 정부와 정책협의를 통해서 법제화해 나갈 부분을 구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내용을 더 상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금회 심의가 원활히 통과돼서 과업 수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18호 안건심의

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 의견,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000 위원

사업계획서에 ‘유사사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저는 비슷한 연구사례를 참 많이 봤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기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18호안건설명자

그 부분은 비슷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저희들도 이런 연구과제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동 현장의 얘기들을 해봤다던가 아니면 총량적인 통계를 뽑았던 연구논문들은 봤습니다.

심지어 타 시도를 정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만 한정해서 연구했던 부분도 봤고요.

서울시의 특성이라든가 그리고 구체적인 서울시에서 사업장 현장별로 다니면서 구체적인 대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진 자료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바로 또 서울시에 있는 기존의 정책을 전제로 그거를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찾기는 어렵지 않았나,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위 원 장

과장님, 서울시에 여성가족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18호안건설명자

예,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럼 거기에서 하는 일과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과는 굉장히 중복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18호안건설명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여성의 업무로서 일가정의 양립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는 남녀의 문제를 떠난 부분으로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한정지어서 문화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근로조건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러나 기존에 이미 여성가족정책관 부서 간에는 협의가 됐

습니다.

이번 연구를 그런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보되, 집행단계에서는 조금 더 긴밀하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제목이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혁신과제잖아요.

제18호안건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가 적정한 주체인가. 어떤 역할을 서울시가 할 수 있을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측면이 의문이 나고, 그다음에 연구기간이, 과업기간이 4개월인데 일반적인 연구기간에 비해서 짧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신 이유 듣고 싶습니다.

제18호안건설명자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기간이 짧은 것은 저희들은 진즉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기에 시작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첫째요.

두 번째, 그래서 4개월이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노동정책의 영역에서 아무리 커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ILO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부에 더 많은 영역을 맡기고 있는 게 노동분야의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도 서울시는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고, 그러한 성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아니면 이동노동자보호라든가, 이런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서 시험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현재 서울시가 당장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오고 있는 과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 원 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8호안건설명자

고맙습니다.

(발표자 퇴장.)

위 원 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유사연구사례가 없다고 하셔서 어떤 차별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지 재차 여쭙봤지만, 특별히 기존연구를 떠나서 다시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또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울시가 별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장시간 노동관행, 이거 갑자기 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연 근무제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 늘리는 것 이런 것인데 그래서 조금,

위 원 장

그러네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000 위원

이것도 재심인데, 이때도 위원장님하고 000 교수님께서도 심사하셨어

요, 지난번에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예.

000 위원

그런데 개선된 게 있나요?

그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 원 장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000 위원

그렇습니까?

위 원 장

특별한 것은 없으시고, 차이가 있다면 과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신 것, 그다음에 누구나 생각하는 ‘여성재단이 이미 있어서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냐.’ 해서 제가 질문 드렸더니 방향을 양쪽이 나누어서 여기는 근로조건 쪽으로 하고 저쪽은 문화 쪽으로 하시는 그 정도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000 위원

애매한 게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말을 넣어놓으니까, 그게 자꾸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원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했을 때 그렇게 가능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영역이 있는 센터들도 있고 재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최종적인 목표이지만, ‘그거를 위해서 노동시장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앞에다가 일가정 양육지원이라는 명칭을 넣어놔 버리니까, 이게 뒤에 실질적으로 노동시장 혁신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자꾸 중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위 원 장

그런데 노동시장 혁신이라고 해도 그거는 또 서울시의 고유업무도 아

니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000 위원

서울시에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보시겠다는 측면에서의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워낙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이고요, 일가정 양립이라는 게요.

제18호 안건결론

위 원 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정하도록 하죠.
이 안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네 분 걱정이신데, 부적정입니다.

위 원 장

이 안건 부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여기에는 아홉 번째 안건으로 되어 있는 안건인데요.

제9호 안건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확충기반마련연구

위 원 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9호 안건설명

제9호안건설명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입니다.
과제명은 도시공간정책 차원의 부담가능 임대주택 확충기반마련 연구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하는, 저렴주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도시계획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간의 정책들은 공약으로 목표가 제시되고, 시가지 외곽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서 물량중심으로 공급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서울 같은 경우는 외곽에 GB를 풀 만한 곳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형태로 해서, 기성 시가지에서 저렴임대주택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형태로 정책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조에 맞추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간의 논의에서 저렴임대주택이라는 것이 별도의 주택정책으로만 관리되고 공급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도로, 공원 또는 학교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기반시설로서 이 위상이나 성격을 다시 재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기성 시가지의 개발이나 정비 시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집중공급이 아닌, 서울 전역에 골고루 균형을 따져서 공급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시민공감대 형성이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하반기부터 주택국에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거종합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은, 서울 전체 앞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물량을 산정하고, 그거를 각 공간별로 꾸리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 주택 차원의 연구에서는 공간에서 그거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를 못합니다.

연구하시는 분하고도 상의를 해봤는요.

결국에 전체 도시공간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과업을 통해서 물량을 산정하고, 실제 공간에서 이거를 어떤 제도를 어떤 실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하나의 실현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원칙을 수립하고, 제도화 방안을 만들어서 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랄지 지침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특히 국제법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임대주택이 기반시설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 추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호 안전심의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000 위원

주무과가 있기는 한데, 애가 여러 개 과에 걸치는 일이잖아요.

제9호안전설명자

임대주택이요?

000 위원

예. 임대주택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요.

제9호안전설명자

예, 그렇습니다.

000 위원

이 한 과제가 너무 여러 과에 걸치는 일인 것이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점과, 그거 하나와 회의비가 1,000만 원 이상으로 계상되었는데 ‘과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9호안전설명자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계획이 여러 개 걸치는 것을 원래 다루는 것이라서 성격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부서하고 협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서울연구원 같이 하고자 하는 이유도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주택국에서 발주한 주거종합계획을 막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연구하시는 박사님까지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회의비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나 사회적 논의를 이 과업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통상적인 것보다는 많이 잡힌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원 장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000 위원

궁극적으로 연구의 목표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가요?

제9호안건설명자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재건축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얻어가
지고 용적률 주면서 증가되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공이
확보하고 토지는 기부채납 받고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사고, 뭔가 약
간 이런 형태로 재건축할 때는 민간 선택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들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공이 요구해서 확보
가 되는 기초적 기반시설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각 사업마다 이런 것들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
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공적인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는 기
준으로 줄 것인지, 그 안에서 외국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공공에서 저
렴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사실 민간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에서는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
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결론을 내서 실제 제도화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000 위원

민선 5기, 6기 임대주택 8만호 추가 2만호 해서 물량을 확충 측면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럼 차기에 민선 7기 이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주거종합계획
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임대주택정책이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정책 방향이 안정해진 상태에서, 미리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어떻게 처
리할 것인지를 선행적으로 연구할,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지요.

제9호안건설명자

선행이 아니고요.

주거종합계획은 7월에 착수를 했고요.

새롭게 주거정비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연구가 착
수가 됐습니다.

그 연구 착수와 병행해서 공간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같이 검

토해서, 결국 합쳐진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있는 거고요.
안 그래도 임대주택 8만호 그런 공약이 나오니까 국토부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GB를 풀어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형태로 사이트나 이런 협의들도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렇게는 어려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는 제도 같은 것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제도도 굉장히 특수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3년 한시제도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간의 그런 제도의 일반 도시계획제도로서의 편입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 차원에서는 같이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000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건설형 같은 경우 확보하는 것은, 공간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실상 거의 어렵다는 게 주택국의 입장인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려는 건가요, 공간들요?

건설형을 더 늘리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9호안건설명자

자꾸 예시적인, 그러니까 공간을 어딘가를 매입해서 확보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민간이 재생을 하든 정비를 하든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잖습니까. 물론 공공의 땅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럼 임대주택이라는 것을 사회기반시설화하는 형태로 정립을 해서, 의무적으로 감내하는 범위 안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보금자리라든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단편적으로 했던 것을 도시계획적으로 풀어가지고 많이 공급하려는 그런 측면인지요.

제9호안건설명자

양적으로 많이 공급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앞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

적으로,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량이 정치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인식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시는 기성 시가지 안에서 저렴 임대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서울시의 정책방향으로 정립한다는 이런 공론화가 한 축이 있는 것이고,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구현하느냐는, 여기 적혀있듯이 기존의 제도들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하나로서 성격을 규정해서 일관되게 각 개발사업이라든지 하는 데서 확보할 수 있고, 공공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연계를, 민간이 확보하고 저렴주택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 원 장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000 위원

선행연구에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최적관리방안 연구를 2015년에 하셨더라고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000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서울연구원하고 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9호안건설명자

서울연구원 안에도 주택 파트와 도시공간 파트가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사실 그 안에서 각자, 일단은 주거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서울연구원에서 출발이 됐고, 그리고 서울시의 그간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책들이죠.

도시계획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2030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곳이 서울연구원인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가야 되는 과업이 이미 서울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서울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정합성을 맞추면서 효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000 위원

그런데 사실은 유사한 분야를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보고서가 혹시 많이 중복되지 않을까?

제9호안건설명자

말씀하신,

000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하지 마시고, 다른 관련 팀한테 용역을 받아서 해서 비교를 해본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제9호안건설명자

그런 부분도 가능한 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울연구원과 해서 이 과업을 해야만 성과가 나온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된 과업을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이미 보시다시피 금액이 1억5,000 정도밖에 상계가 안 되어 있는데, 과정을 거치면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외부에다가 학술용역으로 진행했을 때는, 경쟁으로요. 퀄리티를 보장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 원 장

그럴 수도 있겠네요.

000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00 위원

마이너한 겁니다.

어폴더블 하우스(affordable housing)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담가능 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가요?

왜냐하면 설명하시면 저렴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저렴’ 그 말이 오히려 더 쉽게 다가오지, 정책PR 측면에서 부담가능 임대주택이 와 닿지가 않아서요.

000 위원

둘 다 쓰는 용어.

000 위원

저도 처음에 이해를 못 했어요.

000 위원

‘부담 가능한’도 쓰고 ‘저렴’, 꼭 저렴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둘 다 쓰는 용어예요.

위 원 장

공짜가 아니라는 의미죠.

000 위원

‘비싼 거는 아니다.’ 이런 저기인데,

제9호안건설명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어떤 것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렴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 비하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000 위원

그렇죠.

000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000 위원

요새는 ‘부담가능한’으로 더 많이 씁니다.

위 원 장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한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을 전공한 사람인데,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000 위원

요새 외국에는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000 위원

아니요, 기반시설이 아니고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서 ‘공공제냐, 민간제냐.’ 그 영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것을 기반시설로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임대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외곽에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임대주택 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 외곽으로 내쫓아가지고, 직장도 도심에 있는데 굉장히 살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스카비나 모델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도심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순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심한 장애인들이 1순위이고요.

대학생이 한 5~6순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스웨덴인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6순위까지 되어 있어요.

서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지을 땅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반드시 반발하죠.

‘내 재산을 왜 너희들이 가져가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복합화하시면 어때요?

제9호안건설명자

예, 그런 것들도 이미,

000 위원

고층으로 해서, 거기는 왜냐하면 땅값이 안 들고 그다음에 구청이나 동

사무소 새로 지으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다가 높이 지으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하고 입지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한테도요.

위 원 장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표자 퇴장.)

주심위원님, 검토의견 주십시오.

000 위원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부담 가능한 주택을 더 이상 늘리기 매우, 기존 방식으로 늘리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 국가들에서는 도시계획적인 방식으로 공동임대주택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개발할 때 몇%는 도시계획시설로하는 딱 하는 그런 것들을 외국에서 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을 새롭게 도입하시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연구의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이 아니면 서울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걱정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은 또 워낙 관련 과도 너무 많고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주거정책 전문가 필요해서 서울연구원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 원 장

전문가가 많은 데서요?

000 위원

여러 가지 협업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서요.

위 원 장

예,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의견,

000 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가능한 임대주택 개념이

라든가 인정 범위, 민간하고 공공의 역할, 검토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주택국 소관의 업무거든요.

주택국 소관의 업무를 가지고, 택국은 제외하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도시계획국의 역할은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경제나 산업, 주택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각 분야 별에서 설정했으면 설정한 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특정 분야를 갖다가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산업이나 주택, 교통기반시설까지 다 용역을 해야 되는 결론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실행화가 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적 접근은 필요하겠지만, 이게 주거정책의, 주택정책의 종합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제적 도시계획적 접근해서 용적률을 올린다고 했어도, 실제적으로 주택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실현불가능하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연구결과는 매몰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방식이, 임대주택 개념이나 인정 범위를 정하는 방식은 관계없는데, 이거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이 연구는 한정되고 활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오시기 전에 그래서 여쭙봤거든요.

다른 과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시고 하시겠다고요.

000 위원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주택국이 어쨌든 간에 소관이거든요.

그러면 주택국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정책 펼 때 부담임대주택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물어볼 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지, 오히려 도시계획에서 결정해 놓고 ‘이렇게 따라와라.’ 이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주택 말고도 교통기반시설이나 이것도 다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000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주택국에서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용적률 다 만들어가지고 도시계획적으로 옮겼는데, 결국에는 주택정책도 전부 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나중에 다 주택 관련해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만들어서 올렸는데, 도시계획에서 ‘이거 안 된다. 다시 해라.’ 그러면 오히려 임대주택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지체가 되고, 상당히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가장 강력한 이게 수단이고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빨리 해결할 수 있고 전체적인...

위 원 장

두 팀장님 뜻은 다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데, 판단의 문제일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000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를 한다고 이게 협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도시계획적으로 ‘그럼 우리가 용적률 이렇게 넓히겠다.’ 이런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부담가능한 주택의 주택법이라든가 주거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이런 법령도 제도적으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하나의 특정 분야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여건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럼, 주택국에서 기존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현재 매년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다가 이거를 담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매년 3차 걸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서 여건변화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하나의 특정 규제에 대해서, 소규제

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용역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000 위원

간단한 질문, 이게 단독과제인가요, 아니면 계속과제인가요?
단독과제죠? 처음으로 되는 거죠?

위 원 장

단독과제입니다.

000 위원

이런 게 이렇게 시도한 게 없었던 거죠.
임대주택을 이런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게 실행된 바 없어요.

000 위원

도시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준, 상한이라든지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몇%까지 어디에서 몇% 그렇게까지 결정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대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위 원 장

연구 범위의 문제겠네요, 결국은요.

000 위원

그런데 그게 토지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미래모델개발하고 향후 정책로드맵구상 연구 이런 연구용역도 있고 기업형,

000 위원

그런데 ‘그거를 도시계획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있지는 않았어요, 다른 데서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유사연구는 애는 거의 없는 거거든요, 사전 선행연구라는 거는요.

000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꼭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

000 위원

외국은 그렇게 일부 국가들이 하더라고요.
스페인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우리나라처럼, 서울처럼 기성 시가지에

공급하기 굉장히 힘든 데에서, 예를 들면 강남 같은 데 일부 지자체에서 반발하잖아요.

‘공공임대주택 안 짓겠다.’

그런데 일률적인 규제가 있는 거예요.

‘몇% 이상 지어야 한다.’

000 위원

현재도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 도시계획적 접근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거를 주택국에서,

000 위원

그런데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제도화, 법제화 이런 것들을 염두에 하고 연구를 해보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가 워낙 힘들고, 특히 서울 같은 데요.

다른 접근, 패러다임 변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위 원 장

이거는 평가팀장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겠어요?

000 위원

양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위 원 장

다 맞는 것 같아요?

000 위원

예.

위 원 장

이거는 각자 생각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000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매몰비용입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만큼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 부분 때문에, 어쨌든 ‘연구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활용가치가 있느냐,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국에서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

000 위원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같이 용역을 수행하는 게,

위 원 장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000 위원

그러니까 주무과가 있어야죠.

위 원 장

말은 협업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000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000 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 문제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택국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000 위원

주택국에서 하면 도시계획국이 말을 안 듣잖아요.

000 위원

아니죠, 거기에서 기본기준을 세워줘야죠.

임대주택의 정의가 뭔가, 얼마나 늘릴 것인가.

000 위원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죠.

000 위원

아니요.

000 위원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죠.

‘부담가능한 주택이 얼마나.’ 이런 것들에 기준이 필요하지는 않죠.

000 위원

부담가능한 주택 말고요.

주거복지 수급대책,

제9호 안건결론

위 원 장

위원님, 끝내죠.

이거는 밤새도록 말씀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러면 이 안건 걱정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주십시오.

간 사

다섯 분 걱정이고,

000 위원

여섯 분인 것 같은데요.

간 사

여섯 분입니다.

걱정입니다.

위 원 장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안건은 걱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간 사

심의의결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건을 심의하셨는데요.

걱정이 12건, 부적정이 여섯 건입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안건은 부적정입니다.

2번 안건 걱정입니다.

3번 안건은 부적정입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안건은 다 걱정입니다.

11번 안건을 부적정입니다.

12번 안건은 걱정입니다.

13번 안건은 부적정입니다.

14번, 15번 안건은 걱정입니다.

16번 안건은 부적정입니다.

17번 안건은 걱정입니다.

18번 안건은 부적정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 원 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안건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을 두 군데 하셔야 됩니다.

잊어먹지 마시고 꼭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